# 대한민국정부

# 관보

http://gwanbo.korea.go.kr

제16779호 2008. 6. 26. (목)


##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27호(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 3

○법무부령제640호(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 41

○농림수산식품부령제14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9


##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03호(종교지도자 양성대학 법인 지정)…… 99

○법무부고시제2008-330호·제2008-331호(귀화허가) …… 100

○노동부고시제2008-28호(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일부 개정) … 106

○국세청고시제2008-24호(면세유류구입권 등 각종서식 중 개정)…… 122

○경찰청고시제2008-2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 123

○병무청고시제2008-2호('08년 지정업체 선정 및 '09년 인원배정 기준 정정) … 1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0호(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 1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9호·제2008-100호(도로구역결정〈변경〉) …… 1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1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 21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30호(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 2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호·제2008-6호(하천수사용 허가) …… 212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9호(항로표지 현상변경) …… 2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01호(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 213


##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5호(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14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9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5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0호(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6


(이면 계속)

| 회람 | | | | | | | | |
|---|---|---|---|---|---|---|---|---|


발행 행정안전부 (편집 ☎2100-3310, 2100-3312 / 보급 ☎727-0642~46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110-760)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8g/㎡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2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5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18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8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8
○여성부공고제2008-10호(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1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30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20
○문화재청공고제2008-127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 221
○해양경찰청공고제2008-41호(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2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1호(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22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8호(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 223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3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 22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1호(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224

## 【지 방 자 치 단 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98호(실시계획 변경승인) …… 225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8-4호(학교용지조성시설사업 준공)…… 226
○경상북도영덕교육청공고제2008-12호(공유재산 매각계획 공고)…… 227

##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 228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 …… 229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 …… 230

#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27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물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2조 관련)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 | 8405 | 10 | 수소발생장치 | 전기분해 방식으로 9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 8405 | 10 | 질소발생기 | 99.95퍼센트의 고순도 질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 | 8407 | 10 | 무인기용 엔진(Engine) | 최대 출력이 30마력 이상인 무인 항공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
| 4 | 8413 | 19,20,81 | 유압공급장치 | 피로시험기에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최대 200바(bar) 이상의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 | 8413<br>8414 | 19,50<br>10 | 펌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터보몰레큘러 펌프(Turbomolecular Pump)<br>2. $10^{-2}$토르(torr) 이상의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br>3. 250바 이상으로 압축이 가능한 것<br>4.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 이상인 것<br>5. 고부식성 액상물질을 이송하기 위하여 내부가 테플론(Teflon)으로 구성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6 | 8414<br>8479<br>8543 | 10<br>10<br>70 | 경화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외선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br>2. 표면실장 후에 열·적외선 또는 질소를 이용하여 경화시키는 것 |
| 7 | 8417<br>8421 | 80<br>39 | 증발기 또는 건조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고 가열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2도 이하인 것<br>2. 세척된 반도체용 웨이퍼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오염물질, 케미컬 또는 초순수(超純水)를 원심력 방식으로 건조할 수 있는 것<br>3. 열풍건조 방식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2도 이하인 것 |
| 8 | 8419<br>8421<br>8479<br>9027 | 40<br>21,39<br>89<br>50 | 추출장치 또는 여과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아르곤가스 또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용탕(溶湯)의 수소가스를 제거하는 것<br>2. 크실렌(Xylene)을 이용하여 러버(Rubber)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것<br>3. 역삼투막 여과필터 방식으로 증류수를 추출하는 것<br>4. 광학 필름(시트)용 고분자 용액에 존재하는 이물질 또는 미용해된 겔(Gel)을 걸러주는 것 |
| 9 | 8419 | 40,89 | 증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원유를 증류하여 상압 잔사유, 배큐엄가스오일(Vacuum Gas Oil), 감압 잔사유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압 증류탑을 단독으로 운전하거나 감압 증류탑을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br>2. 증류기의 내부에 1개 이상의 분리판(Plate)이 설치되어 있어 2개 성분 이상의 혼합산을 분리하거나 산(Acid)을 정제할 수 있는 것 |
| 10 | 8419 | 50 | 고압열 교환기 (High Pressure Heat Exchanger) | 최고 운전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고, 최대 운전압력이 290바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1 | 8419 | 89 | 항온항습기 |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이거나 습도 정도가 ±1.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 | 8419 | 89 | 냉동장치 또는 냉각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냉각용량(Cooling Capacity)이 500와트(W) 이상인 것<br>2. 섭씨 영하 50도 이하까지 냉각 또는 냉동이 가능한 것 |
| 13 | 8419 | 89 | 고온고압시험기(Pressure Cooker Tester)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하고, 최대 2바 이상으로 가압이 가능한 것<br>2. 온도 및 압력의 조정이 가능하며 듀얼 체임버 형(Dual Chamber Type)인 것 |
| 14 | 8419 | 89 | 농축기 |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 8419 | 89 | 용매 정제장치 | 동시에 5종류 이상의 용매 정제가 가능하고, 각 용매 내의 산소 및 수소의 함량을 1피피엠(ppm) 이하까지 정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 | 8419 | 89 | 다채널 자동 세포배양기 | 서로 다른 배양조건에서 동시에 최대 8개 이상의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 | 8419 | 89 | 염기서열(鹽基序列) 탐지기 또는 분석기 | 형광성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분자의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8 | 8419 | 89 | 조섬유 분석기 | 최대 12개의 시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9 | 8419<br>8479 | 89<br>89 | 합성기 | 촉매물질 제조용으로서 분배(Dispensing)장치 또는 반응기(Reac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20 | 8419<br>8479 | 89<br>89 | 반응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금속재질의 것으로서 최대 반응압력이 900피에스아이지(psig) 이상인 것 또는 최고 반응온도가 섭씨 250도 이상인 것<br>2. 유리재질의 것으로서 최대 반응압력이 50피에스아이지 이상이고, 최고 반응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인 것<br>3.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한 히팅(Heating) 방식의 반응기로서 최대 반응압력이 1천740피에스아이지 이상이며, 최고 반응온도가 섭씨 360도 이상인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1 | 8419<br>8479 | 89<br>89 | 시료 열분해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열분해 온도가 최고 섭씨 1,000도 이상인 것<br>2. 1도 단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것 |
| 22 | 8419<br>8479<br>9024<br>9031 | 89<br>89<br>10,80<br>80 | 충격 시험기 또는 낙하 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br>2. 인쇄회로기판·반도체소자 또는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br>3. 낙하 방식으로서 8백 중력가속도(g) 이상으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것<br>4. 최대 낙하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것<br>5. 플라스틱 재료의 충격강도 측정용으로서 섭씨 영하 40도까지 수랭식(水冷式)으로 냉각할 수 있는 것 |
| 23 | 8419<br>8479<br>9031 | 89<br>89<br>80 | 초가속 측정기 |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분당 45도 이상의 온도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 | 8419<br>8479<br>9031<br>9406 | 89<br>89<br>80<br>00 | 환경체임버 또는 이엠시체임버(EMC chamber) | 온도·습도·시간·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유브이램프(Ultraviolet Lamp) 또는 크세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br>2. 시료의 작동 여부 또는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br>3.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1퍼센트 이하인 것<br>4. 전자파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및 전자파내성(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을 측정할 수 있는 것<br>5. 섭씨 영하 65도부터 섭씨 150도까지의 범위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5 | 8419<br>9025 | 89<br>11,19,<br>80 | 온도 측정기 또는 타점(打點) 온도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디지털 방식으로 이슬점(露點, Dewpoint)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허용오차 범위가 ±3퍼센트 이하인 것<br>2. 다중채널 측정장비로서 채널 수가 5개 이상인 것<br>3.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5도 이하인 것<br>4.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기록이 가능한 것 |
| 26 | 8419<br>9027 | 89<br>10,80 | 가스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재현성(Repeatability) 또는 직진성(Linearity)이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br>2. 제로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스팬드리프트(Span Drift)가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br>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황산화물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br>4. 희석터널(Dilution Tunnel) 또는 정량채집기(Constant Volume Sampler) 장치와 연결·구성되어 있는 것<br>5.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삼산화황, 플라즈마(Plasma) 또는 암모니아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br>6.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중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br>7. 주물모래(Resin Coated Sand)의 경화시 발생하는 가스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섭씨 1천200도 이상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것 |
| 27 | 8419<br>9030<br>9031 | 89<br>33<br>80 | 부식성 시험기 또는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정도가 ±1도 이하이거나 최대 측정 주파수 범위가 10마이크로헤르츠 이상인 것<br>2. 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조·습도·염수·온도·이산화탄소 농도·광조사(光照射) 또는 결로(結露) 조건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br>3. 강판, 동판 등 2종류 이상의 금속판에 대한 부식시험이 가능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8 | 8419<br>9031 | 89<br>80 | 증발가스 측정기 | 압력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정지상태에서 증발가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9 | 8421<br>8456<br>8479<br>8486 | 29<br>90<br>81,89<br>20,40 | 세척기 또는 세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웨이퍼, 시편, 마스크, 반도체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플라즈마, 자외선, 순수(純水)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br>2.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연속적으로 세정할 수 있는 것<br>3. 스프레이 또는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또는 그 밖의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는 것 |
| 30 | 8421<br>8479 | 29<br>89 | 확산 투석장치(Diffusion Dialyzer) 또는 투석막(Membrane) | 산(Acid)을 정제하는 것으로서 막의 면적(㎡)당 최대 투입유량이 시간당 200밀리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1 | 8422 | 30 | 연료공급장치 |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최대 저장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충전압력이 5천피에스아이(psi)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2 | 8424<br>8456<br>8479<br>8486 | 20,89<br>10<br>89<br>20,30,40 | 도포기(Coater 또는 Coating Machi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Ceramic Condenser), 평판디스플레이용 페트필름(PET Film,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또는 글라스 위에 도포할 수 있는 것<br>2. 디스펜서(Dispenser) 방식, 전자빔 방식 또는 회전 방식인 것<br>3.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용 전극 활물질을 코팅할 수 있는 것<br>4.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이내인 것<br>5. 엠이엠에스(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소자 제작 시 표면의 단자가 큰 구조물에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분사할 수 있는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33 | 8429 | 40 | 롤(Roll) | 광학용 필름(시트)을 이송하는 것으로서 최대 길이가 7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4 | 8441<br>8451<br>8456<br>8461<br>8462<br>8464<br>8479<br>8486 | 80<br>50<br>10<br>50<br>31,39<br>10,90<br>89<br>40 | 절단기 또는 클리빙기(Cleaving Machi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초음파, 수압,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플라즈마 또는 회전날 이용 방식인 것<br>2. 절단의 허용오차 범위가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br>3. 웨이퍼, 시편, 세라믹,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평판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 2차전지용 전해질 필름, 완성반도체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br>4. 자동절단 및 수동절단이 가능하며, 휠(Wheel)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천 420회(rpm) 이상인 것 |
| 35 | 8443<br>8486 | 19,39<br>20 | 스크린 프린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초당 0.2미터 이상인 것<br>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것 |
| 36 | 8443<br>8486 | 19,39<br>30 | 인쇄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스퀴지(Squeegee) 방식인 것<br>2.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에 배향막을 인쇄 하거나 도포하는 것 |
| 37 | 8454 | 30 | 캐스팅 장비(Casting Equipment) | 회전 드럼(Drum)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금속판(스틸벨트) 위에 광학 필름(시트)용 고분자 용액을 시트 형태로 압출하고 고체화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8 | 8456 | 10 | 조직 절편기(Laser Ablation System) | 표본을 6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얇게 자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9 | 8456<br>8479 | 10<br>89 | 펀칭기 |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름이 8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0 | 8456<br>9013<br>9031 | 10<br>20<br>49 | 레이저발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아르곤(Argon) 레이저 방식으로서 최대 출력이 1천 밀리와트 이상인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2. 질소 또는 자외선(UV, Ultraviolet) 레이저 방식으로서 최대 출력이 2밀리와트 이상인 것<br>3. 반도체에 전기를 가하여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2와트 이상인 것<br>4. 입사된 레이저를 시시디(CCD, Charged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촬영하여 파면(Wavefront)을 측정할 수 있는 것<br>5. 다이오드펌프(Diode Pump) 레이저 방식으로 빔의 안정성이 5퍼센트 이하인 것<br>6. 레이저의 출력강도가 300밀리주울(mJ) 이상인 것 |
| 41 | 8456<br>8479<br>8486<br>9012 | 10,90<br>89<br>20,40<br>10 | 집속(集束) 이온빔장치(Focused Ion Beam System) |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2 | 8456 | 30 | 방전 가공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Rmax)가 1.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br>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최대 초당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43 | 8456 | 90 | 회로 형성기 |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레이저 또는 전자광선을 이용하여 웨이퍼, 평판디스플레이기판, 광소자, 광학렌즈, 인쇄회로기판 또는 마스크에 회로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4 | 8456<br>8459 | 90<br>51,59,<br>61 | 밀링기(Milling Machi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br>2.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 회 이상인 것 |
| 45 | 8457 | 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br>2. 스핀들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 8천 회 이상인 것 |
| 46 | 8458<br>8460<br>8479 | 91<br>21<br>89 | 비구면(非球面) 가공기 | 금속 또는 렌즈를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것으로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0나노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47 | 8460<br>8461<br>8465 | 21,29<br>20,40<br>93 | 연삭기 |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지름이 최대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연삭이 가능한 것<br>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 회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속도 (Peripheral Speed)가 초당 40미터 이상인 것<br>3. 보조축을 포함하여 6축 이상 제어할 수 있는 것 |
| 48 | 8460<br>8464<br>8465<br>8479<br>8486 | 21,90<br>20,90<br>93<br>89<br>20,40 | 연마기 또는 광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롤(Ceramic Roll), 이온빔 또는 연마 미디어(연마천 · 연마액 또는 분말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br>2.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레진(Resin),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또는 스퀴지 연마용인 것<br>3.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0.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49 | 8460<br>8461 | 31,39<br>20,40 | 기어 셰이퍼 머신(Gear Shaper Machine) |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0 | 8461 | 20,40 | 기어 셰이빙 머신(Gear Shaving Machine) | 최대 가공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1 | 8461 | 90 | 금형 가공기(Grooving Machine) | 도광판(Light Guide Panel) 금형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2 | 8462 | 21,29 | 헤밍기(Hemming Machi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대 헤밍속도가 분당 2미터 이상인 것<br>2. 최대 헤밍 가압력이 150톤 이상인 것 |
| 53 | 8462<br><br>8477<br>8479 | 21,91,<br>99<br>59<br>89 | 성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br>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유리성형이 가능하거나 또는 최대 성형압력이 30톤 이상인 것<br>3. 분말을 충전한 후 압력을 가하여 이중 정제(錠劑)를 시간당 1만정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54 | 8463 | 90 | 소결기 | 레이저 방식으로 소결(燒結) 가공이 가능하고, 적층(積層) 정도가 8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5 | 8477<br><br><br>8479 | 10,20,<br>59<br><br>89 | 압출기, 사출기 또는 압출사출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압출성형 또는 사출성형이 가능한 것<br>2. 광디스크 연구용으로서 사출압축성형이 가능한 것 |
| 56 | 8477<br>8479 | 51,80<br>82,89 | 분쇄기, 혼합기, 분쇄혼합기, 교반기, 분산기,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미세분쇄용으로서 입자를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쇄할 수 있는 것<br>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Slurry)를 혼합 및 분배할 수 있는 것<br>3. 2차전지 또는 전극용 슬러리를 혼합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것<br>4.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이용하여 니켈페이스트(Nickel Paste)를 분산할 수 있는 것<br>5. 나노입자 분산기로서 최대 분산압력이 2만 피에스아이 이상인 것<br>6. 교반봉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천 회 이상인 것<br>7. 고무배합용으로서 용적(Net Volume)이 1.5리터 이상이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Speed)가 분당 150회 이상인 것<br>8. 초음파 방식으로 입자를 분산할 수 있는 것<br>9.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분쇄할 수 있는 것<br>10. 3차원으로 혼합하고 최대 혼합속도가 분당 110회 이상인 것<br>11. 고흡성수지용 겔을 분쇄하는 것으로서 최대 사용용량이 3.5리터 이상인 것 |
| 57 | 8477 | 80 | 텐터(Tenter) | 광학용 필름(시트)을 연신(Drawing)하거나 열처리를 할 때 장력(Tension)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8 | 8477 | 80 | 권취기 | 광학용 필름(시트)을 롤 형태로 감아주는 장치로서 최고 권취속도가 분당 8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59 | 8479 | 89 | 주입기 또는 분주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이온, 가스, 액정 또는 액체시료 주입용인 것<br>2. 주입 허용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br>3. 10마이크로리터 이하의 시료를 분주(分注) 또는 자동주입할 수 있는 것 |
| 60 | 8479 | 89 | 기폭체임버 | 최대 2킬로그램 티앤티(TNT, Trinitrotoluene) 규모의 반복적인 기폭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1 | 8479 | 89 | 자동운전사이클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시험주행모드를 제어장치에 입력하여 운전사이클의 속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속도 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 이하인 것<br>2.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
| 62 | 8479 | 89 | 입자상 물질 발생장치 또는 입자화장치 | 500나노미터 이하의 자동차 배기가스 입자상 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3 | 8479 | 89 | 증착기 |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의 회로 형성을 위하여 타깃(Target)을 이용하여 금속막을 증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4 | 8479 | 89 | 웨이퍼 확장기 | 다이싱(Dicing)된 웨이퍼칩을 균일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5 | 8479 | 89 | 포집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담배연기 분석용으로서 20개피 이상의 담배를 동시에 자동흡연하여 연기를 포집할 수 있는 것<br>2. 광학용 필름(시트)의 제조 과정에서 증발된 용제(Solvent)를 회수(Recovery)할 수 있는 것 |
| 66 | 8479 | 89 | 마운팅기 (Mounting Machine) | 인쇄회로기판 위에 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7 | 8479 | 89 | 글러브박스 | 질소나 아르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8 | 8479 | 89 | 디핑기(Dipping Machine)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외부전극 도포용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백 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69 | 8479 | 89 | 희석터널 | 배기가스의 입자상 물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기와 배기가스의 희석비율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0 | 8479 | 89 | 금속분말 처리기 |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금속 분말(Metal Powder)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1 | 8479<br>8486 | 89<br>20 | 막성장장치 또는 박막결정화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막성장장치로서 플라즈마 방식인 것<br>2. 박막결정화장치로서 레이저 방식인 것 |
| 72 | 8479<br>8486 | 89<br>20 | 접합기(Laminator) 또는 포스트 테이핑기(Post Taping Machi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고 섭씨 150도까지 예열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2도 이하인 것<br>2. 인쇄회로기판 또는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할 때 가열 방식 또는 가압 방식으로 봉합하거나 접합할 수 있는 것 |
| 73 | 8479<br>8486<br><br>9030 | 89<br>20,30,<br>40<br>33 | 테스터스테이션(Tester Station) 또는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반도체용 웨이퍼를 정렬하는 것[냉각기(Chiller)를 포함한다]<br>2. 평판디스플레이용 패널(Panel)을 검사하는 것 |
| 74 | 8479<br>8486 | 89<br>20,40 | 화학약품 공급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대 공급량이 분당 10리터 이상인 것<br>2. 가압을 이용하여 화학약품을 반도체 시브이디(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설비에 공급할 수 있는 것 |
| 75 | 8479<br>8486 | 89<br>20,40 | 자동이송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반도체용 웨이퍼를 로딩(Loading) 및 언로딩(Unloading)할 수 있는 것<br>2. 로트(lot) 번호별로 분류가 가능하거나 시간당 30개 이상을 이송할 수 있는 것 |
| 76 | 8479<br>8486 | 89<br>20,40 | 적재기 | 반도체용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77 | 8479<br>8486 | 89<br>30 | 압착기, 적층기 또는 합착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4층 이상의 인쇄회로기판을 최고 섭씨 300도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br>2. 적층콘덴서용 세라믹 시트를 최대 30톤 이상의 압력으로 적층할 수 있는 것<br>3. 저온소성세라믹(LTCC,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s)용 세라믹 시트를 ±5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로 정렬하여 적층할 수 있는 것<br>4.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태양전지용 글라스기판이나 반도체기판을 압착할 수 있는 것<br>5. 연료전지의 스택(Stack)을 적층하고 압력분포 및 적층거리의 측정이 가능한 것<br>6. 평판디스플레이용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실(Seal)재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것 |
| 78 | 8479<br>8486 | 89<br>30,40 | 식각기(蝕刻機)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건식 방식인 것<br>2. 플라즈마, 전자빔,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ECR,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자외선, 레이저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79 | 8479<br>8514 | 89<br>10,20,<br>30,40 | 노(爐), 오븐, 히터(Heater), 열풍 공급장치 또는 열처리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5백 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도 이하인 것<br>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것<br>3. 오븐(Oven)으로서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인 것<br>4.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br>5. 전기히터로서 최고 운전온도가 섭씨 4백 도 이상이고 최대 운전압력이 250바 이상인 것<br>6.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서 최고 운전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인 것<br>7. 최고 섭씨 36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고 질소로 내부를 치환할 수 있는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8. 광학용 필름(시트)에 열풍(熱風)을 공급하여 필름(시트) 안 용제(Solvent)를 제거할 수 있는 것<br>9. 분당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열풍을 공급하여 광학용 필름(시트)을 열고정(Heat Setting)할 수 있는 것 |
| 80 | 8479<br>8515 | 89<br>80 | 칩 접착기 또는 웨이퍼 접착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에폭시(Epoxy), 초음파 또는 레이저 방식인 것<br>2. 실리콘 웨이퍼 간 또는 실리콘웨이퍼와 유리웨이퍼 간의 정렬접합이 가능한 것 |
| 81 | 8479<br>9027 | 89<br>10,80 | 가스 분할기(Gas Divider) |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재현성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2 | 8479<br>9030 | 89<br>90 | 분광감도 측정기 | 인공 태양광을 태양전지에 조사(照射)하여 태양전지의 전기 변환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300나노미터부터 1천200나노미터까지의 파장대역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3 | 8479<br>9030 | 89<br>90 | 태양광 스펙트럼 반응 측정기 | 인공 태양광을 태양전지에 조사(照射)하여 태양전지의 발생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300나노미터부터 1천200나노미터까지의 파장대역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4 | 8479<br>9031 | 89<br>80 | 시팅벅(Seating Buck) | 자동차 실내의 구성요소 간 위치관계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동차 실내의 구성요소 중 6개 이상의 위치 변경이 가능한 것<br>2. 위치 이동 정도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85 | 8479<br>9031 | 89<br>80 | 차량·부품 충돌 시험장치 또는 충격시험기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을 충돌시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속도제어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br>2. 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충격 방식인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86 | 8479<br>9031 | 89<br>80 | 환경시험장치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대 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br>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온도 · 습도 · 강우 · 강설 · 일사 · 진동 · 기압 · 복사 · 압력 · 염수 · 광조사 · 건조 · 결로 · 자갈 또는 먼지 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br>3.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먼지의 농도, 분사속도 또는 분사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87 | 8479<br>9031 | 89<br>80 | 스 핀 스 탠 드 (Spinstand) | 엑추에이터 서보(Actuator Servo)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8 | 8479<br>9031 | 89<br>80 | 충돌시험 베리어 (Barrier) |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9 | 8479<br>8486 | 89,90<br>20 | 웨이퍼칩 보호기, 제거기 또는 웨이퍼보조시스템 | 반도체용 웨이퍼에 테이프 또는 보조유리(Support Glass)를 접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 | 8482<br><br>8483 | 20,30,<br>50,80<br>40 | 로울러 베어링 (Roller Bearing), 요우(Yaw) 베어링 또는 피치(Pitch) 베어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풍력발전기의 허브(Hub)에 설치되는 로울러 베어링으로서 최대 2천 킬로뉴턴 이상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것<br>2. 풍력발전기의 피치 또는 요우 구동용 베어링으로서 최대 20킬로뉴턴 이상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것 |
| 90 | 8483 | 40 | 증속기 | 풍력발전기에서 저속의 주축(Main Shaft)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2단 이상의 증속단과 1 : 30 이상의 증속비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2 | 8483 | 60 | 플렉시블 커플링 (Flexible Coupling) |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와 발전기 사이 구동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전달 동력이 3천뉴턴미터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3 | 8486<br>9011<br><br><br>9012<br>9031 | 10<br>10,20,<br>80<br><br>10<br>80 | 현미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br>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br>3. 레이저 · 형광 · 편광 · 이온 또는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4. 시시디(CCD) 카메라가 부착된 것 또는 부착할 수 있는 것<br>5.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br>6. 광학현미경으로서 영상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br>7.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것<br>8.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 ·분석 및 영상 처리 할 수 있는 것 |
| 94 | 8486<br>8543 | 20<br>30 | 도금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반도체용 웨이퍼, 웨이퍼칩 또는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도금할 수 있는 것<br>2.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금할 수 있는 것 |
| 95 | 8486<br>8515 | 20,40<br>19 | 납볼 탑재기 또는 납볼 부착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납볼(Solder Ball)을 기판에 탑재한 후 가열공간을 통과시켜 부착하는 것<br>2. 납볼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웨이퍼(Wafer)에 표면실장할 수 있는 것 |
| 96 | 8486 | 30 | 리페어기(Review Repair) |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빔 또는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7 | 8486 | 40 | 범프형성기 (Bump Bonder) | 반도체 웨이퍼에 금 또는 구리를 이용하여 범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8 | 8486<br>8515 | 40<br>19,80 | 납땜기 |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납땜시간, 온도 또는 공기유량의 조절이 가능한 것<br>2. 반도체 리드프레임을 납땜할 수 있는 것 |
| 99 | 8486<br>9022<br>9027<br>9030<br>9031 | 40<br>19<br>50<br>82<br>49,80 | 표면 측정기, 반사율 측정기, 두께 측정기 또는 휨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표면거칠기 측정용으로서 수직배율이 1만 배 이상인 것<br>2. 조도, 파상도 또는 형상의 측정이 가능한 것<br>3.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웨이퍼, 웨이퍼 시료, 2차전지박막, 태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양전지박막, 연료전지박막, 인쇄회로기판, 자동차브레이크용 디스크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내부전극 또는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회로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또는 굴곡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br>4. 전해식 도금 두께 측정기로서 0.01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br>5. 자동차 거울 반사율 측정용으로서 정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00 | 8501 | 10 | 서보 구동기 | 최대 토크(torque)가 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이상이고, 피드백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1 | 8501<br>8503 | 32,40,52<br>00 | 요우드라이브 또는 피치 드라이브 | 풍력발전기의 요우 또는 피치를 구동하는 기어모터로서 최대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또는 서보형 전동기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02 | 8503<br>8505<br>8708 | 00<br>20,90<br>30 |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 풍력발전기의 주축(Main Shaft) 또는 요우 제동용으로서 유압 또는 전자기력으로 작동되는 디스크형(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가압장치 및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
| 103 | 8504 | 22,34,40 | 전원 공급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압이 최대 35볼트 이상이거나 전류가 최대 2암페어 이상인 것<br>2. 정격출력이 2천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br>3. 과전압(Over-voltage), 과전류(Over-current) 또는 전압급변(Fast Voltage Transient)에 대한 차단 기능이 있는 것 |
| 104 | 8504 | 40 | 인버터 시스템 | 풍력발전기용으로서 최대용량이 3메가와트 이상이며 정격출력전압이 600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5 | 8504 | 40,50 | 전원안정화장치 | 인덕턴스(Inductance)가 50마이크로헬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6 | 8514<br>9027<br>9031 | 10<br>10,50<br>49 | 미립자 측정기 또는 미립자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초순수(超純水)에 존재하는 미립자(Particle)를 측정할 수 있는 것<br>2. 클린룸(clean room) 내 공기에 포함된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07 | 8514 | 20 | 전처리 자동희석장치 | 시멘트 성분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장치로서 시료의 건조, 증발 및 농축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8 | 8515 | 21,29, 80 | 용접기 | 초음파 방식, 전자빔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저항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109 | 8518<br>8543 | 40,50<br>70 | 증폭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 이상인 것<br>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또는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br>3. 최대 출력이 100와트 이상인 것 |
| 110 | 8521<br>9031 | 90<br>80 | 영상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고선명텔레비전(HDTV, High Definition Television) 에스디아이(SDI, Serial Digital Interface) 규격의 비디오신호 분석 및 에스디아이(SDI) 검사신호 발생용인 것<br>2. 엔티에스시(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의 영상을 재생 및 측정할 수 있는 것 |
| 111 | 8521<br>9031 | 90<br>80 | 동화상 재생기 | 메모리의 용량이 1기가바이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2 | 8525<br>8543 | 50<br>70 | 디지털 송신기, 또는 디지털 변조기(Digital Modulator) | 디지털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또는 디지털오디오방송(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8배 잔류측파대(VSB, Vestigial Side Bands) 변조 방식인 것<br>2.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변조 방식인 것 |
| 113 | 8525 | 80 | 고속 비디오동작 촬영장치 | 초당 150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4 | 8525 | 80 | 짐벌(Gimbal) 카메라 |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 야간 또는 주야간 카메라로서 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5 | 8526 | 91 | 항법장비 |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센서와 관성항법 센서(Inertial Navigation System)가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자세 정확도가 0.5도 이하이며 최대 측정 각속도가 초당 2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16 | 8529 | 10,90 | 이엠시(EMC) 안테나 | 자동차 전장품 또는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이엠시(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최대 5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7 | 8537 | 10 | 배기가스 분석계용 제어기 | 가솔린 분석계 또는 디젤 분석계와 연결되어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연비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8 | 8537<br>9024<br>9030<br>9031 | 10<br>10,80<br>89<br>80 | 피로시험기 또는 피로시험 제어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 방식 또는 모터구동 방식으로 시편 또는 구조에 하중을 주 어 인장, 굽힘, 압축 또는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br>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것 |
| 119 | 8537<br>9031<br>9032 | 10<br>80<br>89 | 동력시험기 또는 동력시험기기 제어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 Direct Current Type), 교류형(Alternating Current Type) 또는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br>나. 토크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br>2. 직류형(DC Type)으로서 견인능력(Tractive Effort)이 최대 5킬로뉴턴 이상인 것<br>3. 와전류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 이상인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br>4. 자동차 성능 시험용으로서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br>5.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동력시험기기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120 | 8537<br>9032 | 10<br>89 | 엑추에이터 제어기(Actuator Controller) | 티티피바이와이어(TTP By Wire, Time Triggered Protocol By Wire) 방식의 것으로서 시스템 제어장치의 최대 처리속도가 4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1 | 8537<br>9032 | 10,20<br>89 | 풍력발전용 제어 시스템 | 외부 조건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운전을 제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22 | 8543<br>9030 | 20,70<br>39,84,<br>89 | 신호 발생기, 펄스 발생기 또는 웨이브폼 발생기(Waveform Generator)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디지털 변조가 가능한 것<br>2. 주파수 분해능력이 10헤르츠 이상인 것<br>3. 임의(Random, Arbitrary)파 발생용인 것<br>4.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 이상인 것<br>5.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것<br>6.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또는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Wave)가 가능한 것<br>7. 주파수 정도가 ±0.01퍼센트 이하인 것<br>8. 디지털방송용으로서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 신호 출력이 가능한 것<br>9.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br>10. 감쇠 정현파 발생용으로서 최대 발생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br>11.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100피피에스(pulse per second) 이상인 것 |
| 123 | 8543 | 70 | 채널 변환기(Channel Converter) | 중간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를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 8543 | 70 | 오존 발생기 |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25 | 8543<br>9010 | 70<br>10,50 | 자외선 조사기 또는 자외선 발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외선을 조사하여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 또는 셀(cell)을 경화시킬 수 있는 것<br>2.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외선경화본드를 경화시킬 수 있는 것<br>3.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진공체임버와 연결이 가능한 것<br>4. 자외선을 조사하여 물체의 노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26 | 8543<br>9030 | 70<br>31,33,<br>39,84,<br>89 | 전자부하기<br>(Electronic Load) |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7 | 8543<br>9030 | 70<br>39,89 | 정전기시험기 또는 정전기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것<br>2. 초음파형 정전기 측정기로서 최대 50킬로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128 | 8543<br>9031 | 70<br>80 | 신호 변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디지털텔레비전용으로서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것<br>2. 디지털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컨버터 기능이 있는 것<br>3.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출력이 1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br>4. 직렬디지털신호(SDI)를 엠페그-2(MPEG-2, Moving Picture Expert Group-2) 또는 에이치264(H.264)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것<br>5.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조 가능한 것 |
| 129 | 8703 | 90 | 연료전지 자동차(Fuel Cell Vehicle) | 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 시험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0 | 9006<br>9025 | 59,99<br>19 | 열화상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 범위의 최대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br>2. 고선명텔레비전(HDTV) 연구용으로서 해상도가 200픽셀(pixel)×200픽셀(pixel) 이상이거나 10비트(bit) 이상의 변환 특성이 가능한 것<br>3.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 |
| 131 | 9012 | 10 | 이온빔시험기 | 이온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 성분을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32 | 9013 | 20 | 레이저 발진장치 | 전기에너지를 전환하여 레이저빔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레이저빔 모드가 20밀리미터밀리라디안(㎜.mrad)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33 | 9013<br>9030<br>9031 | 20<br>89<br>80 | 변위계 또는 진동변위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측정 정도가 ±0.3퍼센트 이하인 것<br>2. 동적 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분해 능력이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134 | 9013<br>9031 | 80<br>80 | 산업용 내시경 | 작업[내시(內視)] 범위가 1천 3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5 | 9014 | 10 | 관성 측정기 | 물체의 관성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속도 측정 범위가 초당 ±500도 이상이거나 가속도 측정 범위가 ±2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6 | 9015<br>9031 | 10,80<br>49,80 | 3차원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br>2. X, Y, Z축의 측정 범위가 각각 2천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탐침자(Porbe)의 최대 이송속도가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br>3. 대상이 없는 측정 지점에 타깃(Target)을 부착하는 것으로서 분해능(Resolving power)이 0.1밀리미터 이상인 것<br>4.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br>5.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br>6. 구면, 비구면 또는 자유곡면 형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br>7. 절삭공구의 3차원 측정 및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가능한 것 |
| 137 | 9016 | 00 | 중량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재현성(Repeatability)이 0.03밀리그램 이하인 것<br>2. 최대 측정중량이 4천200그램 이상인 것 |
| 138 | 9018 | 19 | 혈압 측정기 | 동물의 혈압 측정용으로서 최대 350밀리미터에이치지(mmHg) 이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9 | 9018 | 19 | 담배연기 노출 시스템 | 독성 평가를 위한 담배연기 발생 시스템으로서 일정한 농도로 배양세포에 연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40 | 9018<br>9030 | 90<br>31,32,<br>39,89 | 다기능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압 · 전류 · 주파수 · 저항 · 압력 · 온도 또는 전기신호 중 2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br>2. 의약 개발용으로서 센서를 이용하여 쥐(Mouse)의 이동경로, 이동시간 및 이동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41 | 9021<br>9024<br>9031 | 10<br>80<br>80 | 장력계 |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레버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작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2 | 9022<br>9027<br><br><br>9030 | 19<br>30,50,<br>80<br><br>89 | 분광 분석기 또는 형광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br>2. 분광영역(Spectral Range)이 11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60광학채널(Optical Channel) 이상인 것<br>3. 분해능력이 1나노미터 이상인 것<br>4.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엑스-레이(X-ray)를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143 | 9022<br>9030 | 19<br>82 | 웨이퍼 분석기 | 웨이퍼 또는 웨이퍼 막질의 재질, 전기적 특성 또는 오염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44 | 9022<br>9031 | 19<br>80 | 비파괴검사기 | 엑스선 방식, 초음파 방식 또는 레이저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5 | 9022<br><br>9027<br><br><br>9031 | 19,29,<br>90<br>30,50,<br>80<br><br>80 | 엑스선 측정기, 엑스선시험기, 형광엑스선 분석기 또는 엑스선광전자 방출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형광, 회절, 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있는 것<br>2. 엑스선(X 線)을 이용한 영상 처리장치로서 디지털에 의한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가능한 것<br>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용량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46 | 9022<br>9031 | 19,29<br>80 | 성분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금속,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성분 분석용으로서 파장 범위가 400나노미터 이상인 것<br>2. 납 · 카드뮴 · 수은 및 크롬에 대한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47 | 9022<br>9027<br><br><br>9031 | 29<br>20,30,<br>50<br><br>80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칼럼(Column) 방식인 것<br>2. 이동상(移動相)을 기체로 하고, 질량분석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br>3. 이동상을 액체 또는 이온으로 하고, 자외선검출기 · 질량분석기 또는 전도도검출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br>4. 전자포획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Detector)를 장착하여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148 | 9024 | 10 | 진동다짐기(Jolting Table) | 초당 1회전의 정속 구동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49 | 9024 | 10,80 | 경도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또는 연필심 방식인 것<br>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것<br>3. 정제(錠劑)의 경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br>4. 금속 포(Steel Wool)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필름(시트) 또는 코팅 필름(시트)의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50 | 9024 | 10,80 | 마모시험기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1 | 9024<br>9027 | 10,80<br>80 | 인장시험기 또는 크립(Creep)시험기 | 플라스틱, 금속, 또는 주물모래(Resin Coated Sand)에 대한 시험기로서 인장시험 또는 크립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2 | 9024<br>9027<br>9031 | 10,80<br>80<br>80 | 점탄성 측정기, 점도 측정기 또는 저온점도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온도 정도가 ±0.5도 이하인 것<br>2. 섭씨 20도 이상 또는 섭씨 영하 5도 이하에서 점도 측정이 가능한 것<br>3. 배합고무 및 폴리머의 점도 측정용으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150도 이상인 것<br>4. 압출식 점도 측정기로서 최대 압출속도가 초당 15밀리미터 이상인 것<br>5. 용융 수지의 최대 연신속도가 초당 1천 밀리미터 이상인 것<br>6. 최대 점도 측정 범위가 40만 포이세(Poise) 이상인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53 | 9024<br>9031 | 10,80<br>80 | 응력 측정기 또는 응력 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납볼 또는 와이어의 응력(應力)을 측정할 수 있는 것<br>2. 압축하거나 인장시킨 금속의 응력 완화(Stress Relaxation)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154 | 9024<br>9031 | 10,80<br>80 | 만능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수치제어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br>나. 최대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br>2.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破壞靭性), 파열강도 또는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br>3. 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 방식인 것<br>4. 자동차 차체 또는 차체 부품 시험용으로서 최대 압축력이 150킬로뉴턴 이상인 것 |
| 155 | 9024 | 80 | 방진(防振)고무시험기 | 방진고무의 동적 특성 및 피로 시험용으로서 3축 방향의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6 | 9024 | 80 | 스크린(Screen) | 섬유 내 포함된 이물질을 형태 또는 입자크기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7 | 9024<br>9025<br>9030<br><br>9031 | 80<br>80<br>39,84,<br>89<br>80 | 모의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금속재료의 용접 · 열처리 · 열간단조(熱間鍛造) · 압연 · 도금 · 가공 · 응력 · 도장 · 산세(酸洗) 또는 연속 주조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br>2. 자동차부품의 내구성 · 피로 · 진동 또는 소음 시험용으로서 가진력(加振力)이 1.5톤 이상인 것<br>3.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br>4. 차량신호를 모사하여 이시유(ECU,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제어기(HCU, Hydraulic Control Unit)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제어장치의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5.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내구성 · 피로 또는 진동 특성을 시험하는 것<br>6. 반도체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Circuit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br>7. 티티피(TTP, Time Triggered Protocol) 방식 시스템의 장애(Disturbance)현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br>8. 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스발생기 및 반응기와 연결이 가능한 것<br>9. 이동통신기기 연구용으로서 미국 피티시알비(PTCRB,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 유럽 지시에프(GCF, Global Certification Forum) 인증시험이 가능한 것<br>10.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
| 158 | 9024<br>9027<br>9031 | 80<br>80<br>80 | 기공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질소, 아르곤 또는 수은을 이용하여 시료의 기공(Pore) 크기 또는 비표면적(比表面積)을 측정할 수 있는 것<br>2. 궐련지(卷煙紙)의 기공도 측정용으로서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159 | 9024<br>9030<br><br>9031 | 80<br>39,84,89<br><br>49,80 | 진동계, 가진기, 진동시험기 또는 소음진동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부품 시험용인 것<br>2. 레이저 방식인 것<br>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200헤르츠 이상인 것<br>4. 진동 변위 측정 시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br>5. 구조체 또는 회전체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가 2천 헤르츠 이상인 것<br>6. 진동 측정 평가기준(ISO-6954:2000)을 만족하는 주파수 필터가 내장된 계측기로서 3축(X, Y, Z) 방향으로 동시에 진동 계측이 가능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60 | 9024<br>9030<br>9031 | 80<br>84,89<br>80 | 데이터 수집기 또는 연속데이터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br>2. 자동차의 실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br>3. 채널의 수가 16개 이상인 것<br>4.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161 | 9024<br>9031 | 80<br>80 | 내구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대상(Bench) 또는 실차 장착 상태 시험이 가능한 것<br>2. 자동차 공기조화(空氣調和)장치물품용 압축기 · 클러치 · 열교환기, 수질정화 멤브레인 또는 타이어의 내구성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 압력 · 전압 · 유량 또는 시간의 조절이 가능한 것 |
| 162 | 9024<br>9031 | 80<br>80 | 자동차좌석 지지대 또는 안전띠 지지대 강도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유압 방식에 의하여 자동차 좌석의 머리 지지대의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변위제어 또는 각도제어가 가능하고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br>2. 자동차의 좌석 및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163 | 9024<br>9031 | 80<br>80 | 마찰 특성 시험기 또는 마찰계수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마찰 측정 하중이 1천500뉴턴 이상인 것<br>2. 금속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마찰 측정 하중이 150뉴턴 이상인 것<br>3.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동성능 또는 핸들링(handling)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64 | 9024<br>9031 | 80<br>80,90 | 토크 측정기 또는 토크 센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br>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는 것<br>3. 최대 측정 토크가 500킬로그램센티미터 이상인 것<br>4. 디스크 진동에 따른 토크 측정용으로서 최대 섭씨 200도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65 | 9025<br>9030 | 19<br>89 | 열전도도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섭씨 영하 100도부터 200도까지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것<br>2. 열전도율의 측정 정도가 ±1퍼센트 이하인 것 |
| 166 | 9025 | 19,80 | 열상분포 측정기 또는 열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측정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br>2. 시멘트의 수화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1마이크로볼트의 열량 측정이 가능한 것 |
| 167 | 9025<br>9031 | 80<br>80 | 수분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1밀리그램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br>2. 체임버형(Chamber Type) 건조 방식의 것으로서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 |
| 168 | 9026<br>9031<br>9032 | 10<br>80<br>89 | 압력계 또는 압력 조절기 | 측정 정도가 ±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9 | 9026<br>9029 | 80<br>20 | 풍속 측정기 또는 열선풍속계 | 초당 1미터 이상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열선 또는 베인(Vane)을 이용하여 차량의 라디에이터 전면 또는 자동차공조품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0 | 9026<br>9031 | 90<br>80 | 압력센서 또는 차압센서 교정기 | 압력센서 또는 차압센서 교정용으로서 교정 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1 | 9027 | 10 | 연기밀도 측정기 | 체임버(Chamber) 내에서 열에 노출된 시편으로부터 방출되는 연기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2 | 9027 | 10 | 광합성 측정기 | 1회에 이산화탄소를 최대 3천 피피엠 이상 측정할수 있고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3 | 9027<br>9030 | 10<br>89 | 매연 측정기 |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방식 또는 여지 반사식(濾紙反射式, Filter Paper Method)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4 | 9027<br>9031 | 10<br>80 | 가스 누출 탐지기 | 누출된 헬륨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5 | 9027 | 10,80 | 원소 분석장치 | 탄소 · 수소 · 질소 · 산소 · 유황 또는 염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76 | 9027 | 30 | 적외선 분광기 | 적외선을 이용하여 폴리머(Polymer)의 기능 분석이 가능하도록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177 | 9027 | 30,50,80 | 휘도계 또는 색도계 | 디스플레이 또는 카메라모듈 연구용으로서 휘도(輝度) 또는 색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8 | 9027<br>9031 | 50<br>49,80 | 조도계(照度計) |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9 | 9027<br>9031 | 50,80<br>80 | 열중량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디에스시(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또는 티지에이(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 방식인 것<br>2. 열분해, 승화, 증발 또는 산화에 따른 무게의 증감을 열분해곡선(Thermogram)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br>3. 섭씨 영하 150도부터 400도까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탄성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80 | 9027 | 80 | 융착점 측정기 | 금속바(Metal Bar)를 이용하여 주물모래(Resin Coated Sand)의 융착점(Melt Point)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1 | 9027<br>9030 | 80<br>89 | 전위차 적정계(Potentiometric Titrator)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제타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br>2. 시약의 부피 및 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산도(酸度)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182 | 9027<br>9031 | 80<br>49,80 | 입자상 물질 측정기 또는 입자크기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희석터널(Dilution Tunnel)의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입자상 물질 측정기<br>2. 입자크기 측정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7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br>나. 레이저 또는 빛의 산란 방식에 의하여 입자의 분포·크기 또는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br>3. 에프아이디(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방식으로서 실시간(Real Time) 측정이 가능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83 | 9028 | 10,20 | 유량계(流量計) |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재현성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4 | 9029<br>9031 | 20<br>49,80 | 속도계(速度計) 또는 유속계(流速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비접촉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br>2. 자동차속도 측정용으로서 측정 정도가 시간당 ±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185 | 9030 | 20,39,<br>84,89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또는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입력채널 수가 2개 이상인 것<br>2. 측정 대역폭(Band Width)이 50기가헤르츠 이하인 것 |
| 186 | 9030 | 33,39 | 저항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저항 측정용으로서 1밀리옴 이하의 측정이 가능한 것<br>2. 접촉저항 측정용으로서 입력채널 수가 16개 이상이고, 100옴 이상의 전기저항 측정이 가능한 것<br>3.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 이상 측정이 가능한 것<br>4. 1천 볼트의 전극을 이용하여 표면저항과 선저항 측정이 가능한 것 |
| 187 | 9030 | 33,39,<br>84,89 | 전력 분석기 또는 전력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력분석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br>나.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br>2. 전력측정기로서 최대 측정 주파수가 5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188 | 9030<br>9031 | 33,39,<br>84,89<br>80 | 전압 측정기, 전압변동시험기 또는 과도전압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압측정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충격전압 또는 내전압 시험이 가능한 것<br>나. 연료전지용으로서 교류 정전류 신호를 보내고 전압 측정이 가능한 것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2. 과도전압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 이상인 것<br>3. 전압변동시험기로서 채널 수가 2개 이상인 것 |
| 189 | 9030<br>9031 | 33,39,84,89<br>80 | 주파수 측정기 또는 주파수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8채널 방식 이상이거나 32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br>2.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것<br>3. 13가지 이상의 측정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것<br>4.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 분석이 가능하거나 데이터신호의 입력 또는 저장이 가능한 것 |
| 190 | 9030<br>9031 | 33,39,84,89<br>80 | 신호 분석기 또는 신호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디지털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br>2. 측정 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것<br>3. 분석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br>4. 최대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br>5. 주파수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br>6.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것<br>7. 시디엠에이(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지에스엠(GSM, 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또는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 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의 신호 측정이 가능한 것 |
| 191 | 9030 | 39 | 웨이브 폼 모니터(Wave Form Monitor) | 비디오신호의 진폭 또는 시간 측정용으로서 입력채널 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192 | 9030 | 39 | 주파수 가변기(VVVF) | 출력 주파수의 범위가 5헤르츠부터 550헤르츠까지이고, 전압 변동에 대응하여 정전압(定電壓)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3 | 9030 | 39 | 후방산란 측정기 | 광섬유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파장 정도가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4 | 9030 | 39,84, 89,90 | 전기적 물성(物性)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유전율, 정전기량, 체적저항, 표면저항, 정전용량, 유전정접 또는 역률 측정용인 것<br>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또는 2차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용인 것<br>3. 전류변성기, 전압변성기, 전력변압기의 절연 성능 및 접촉저항 측정이 가능하고, 컴퓨터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br>4.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95 | 9030 | 39,84, 89 | 전자파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간섭 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br>2. 고조파 혹은 플리커(Flicker)의 측정이 가능한 것<br>3. 전도성 또는 방사성 잡음신호의 측정 또는 발생이 가능한 것 |
| 196 | 9030<br>9031 | 39,84, 89<br>80 | 전지수명 측정기 또는 전지 성능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전류 또는 전압의 측정 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br>2.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시험이 가능한 것<br>3.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197 | 9030<br>9031 | 39,89<br>49,80 | 성능시험기 또는 성능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1.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부분품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태양전지의 전기적, 물리적 또는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br>2. 모터의 초기 성능 측정용 다이너모미터(Dynamometer)로서 토크 측정 범위(Torque Range)가 800뉴턴미터 이하인 것<br>3. 자동차용 열교환기 또는 공기조절기(Air Conditioner)의 성능시험용으로서 온도 · 습도 · 풍량 · 압력 또는 유량 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br>4. 자동차에어컨 성능 시험용으로서 다축 진동테이블, 유압모터, 테스트 룸 및 글리콜 공급시스템을 갖춘 것<br>5. 자동차용 안전벨트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br>6. 광학렌즈의 해상도를 측정하는 것<br>7.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 |
| 198 | 9030<br><br>9031 | 82,84,89<br><br>80 | 네트워크 분석기 또는 회로망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인가하여 소자의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있는 것<br>2. 무선 또는 주파수 변환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출력기기의 시험이 가능한 것<br>3.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199 | 9030 | 84,89 | 통신 및 데이터 통신 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 또는 비트에러율(Bit Error Rate) 시험이 가능한 것<br>2. 데이터신호의 프레임 또는 코드에러 시험이 가능한 것<br>3. 통신 프로토콜(Protocol) 측정 또는 지터(Jitter) 측정이 가능한 것 |
| 200 | 9030 | 84,89 | 송신 성능시험기 또는 수신 성능시험기 |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지피에스(GPS),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또는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01 | 9030 | 84,89 | 이동용 무선전화기 시험기 | 휴대폰 단말기와 연결하여 송수신 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디엠에이(CDMA),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지에스엠(GSM), 이디지이(EDGE, Enhanced Data GSM Environment),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 또는 디이시티(DECT,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202 | 9030<br>9031 | 84,89<br>80 | 소음계 또는 소음 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분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하인 것<br>2. 소음 측정범위가 35데시벨 이상인 것 |
| 203 | 9030<br>9031 | 84,89<br>80 | 논리회로 분석기 또는 회로망 분석기 |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4 | 9030<br>9031 | 84,89<br>80 | 기록계 | 전류 · 전압 · 전력 · 신호 · 소음 · 속도 · 압력 또는 온도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4채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5 | 9030<br>9031 | 84,89<br>80 | 녹음기 | 소음 또는 진동 신호를 디지털 오디오테이프, 플래시메모리 또는 광디스크에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8채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6 | 9030<br>9031 | 84,89<br>80 | 이시유(ECU) 제어기, 이시유 개발시험기 또는 이시유 에뮬레이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변속기제어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Port Ram)을 갖춘 것<br>2. 엔진의 크랭크 위치신호나 차량 속도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 |
| 207 | 9030<br>9031 | 84,89<br>80 | 근전도 측정기 | 인체에서 발생하는 근육의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채널수가 최대 8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8 | 9030 | 89 | 자동선별기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시간당 최대 3천 개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9 | 9030 | 89 | 반사전자 검출기 | 주사전자현미경에서 반사된 전자를 검출하고 검출된 반사전자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0 | 9030 | 89 | 스트림 처리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 | | | 1. 디지털방송용으로서 티에스(TS, Transport Stream) 신호의 분석 또는 발생이 가능한 것<br>2. 디지털방송용으로서 티에스(TS) 신호의 통합 또는 재구성이 가능한 것<br>3. 단일주파수방송망(SFN, Single Frequency Network)을 지원하는 신호를 티에스(TS) 신호에 포함할 수 있는 것 |
| 211 | 9030 | 90 | 음향보정기 | 음향 측정기의 음장 강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2데시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12 | 9031 | 49 | 이물질 검출기(Gel Counter) | 시료의 이물질을 4천 화소 이상인 디지털 방식의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3 | 9031 | 49 | 분말 측정기 | 분말의 유동성 또는 안식각(Angle of Repose)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4 | 9031 | 49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 접촉각 측정 허용 오차가 ±0.1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15 | 9031 | 49,80 | 형상 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br>2.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br>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216 | 9031 | 49,80 | 간섭계(Interferometer)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측정 대상물의 변형을 3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br>2. 레이저빔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217 | 9031 | 49,80 | 광디스크 측정장치 | 광디스크의 동(動)특성 및 정(靜)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8 | 9031 | 49,80 | 아이트래킹 시스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시선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300티브이엘(tvl) 이상인 것<br>2. 눈동자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200티브이엘 이상인 것 |
| 219 | 9031 | 49,80 |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 화각(Field of View)이 최대 4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20 | 9031 | 49,80 | 변형률 측정기 또는 자기(磁氣) 변형 측정기 | 표면 또는 길이의 변형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1 | 9031 | 80 | 인체모형 교정기 또는 더미용 로드셀 교정기 |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충격 시험용 인체모형(Dummy) 또는 더미용 로드셀(Load Cell)을 교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2 | 9031 | 80 | 인체모형 위치 측정기 |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충격 시험용 인체모형(Dummy)의 위치를 광학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3 | 9031 | 80 | 에어백 시험기 또는 에어백센서 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충돌 재현 가속도가 100 중력가속도 이상인 것<br>2. 에어백 전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전개 지연시간이 최대 1천 밀리세컨드 이상인 것 |
| 224 | 9031 | 80 | 조임력 측정기(Pinch Force Sensor) | 자동차 창유리의 조임력(Pinch Force)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25 | 9031 | 80 | 블로바이미터(Blowby Meter) |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1.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6 | 9031 | 80 | 오토콜리메이터(Autocollimator) | 광디스크기록 재생장치의 평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분해 능력이 0.01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7 | 9031 | 80 | 연료분사시험기 |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System) 시험용으로서 인젝터(Injector) 또는 코먼레일(Common Rail)을 장착하여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8 | 9031 | 80 | 프로브카드 분석기(Probe Card Analyzer) | 프로브 카드의 평탄도와 정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9 | 9031 | 80 | 가속도계 센서 교정기 | 가속도계의 센서를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속도가 10미터퍼세크제곱($m/s^2$)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0 | 9031 | 80 | 피막 두께 측정기 | 피막 두께를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1 | 9031 | 80 | 차량거동 측정기 | 롤 또는 피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32 | 9031 | 80 | 통기도 측정기 |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측정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3 | 9031 | 80 | 자력 측정기 (Gauss Meter) | 최대 측정 자력이 1만 가우스(Gauss) 이상인 것 또는 측정 정도가 ±10가우스(Gauss)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4 | 9031 | 80 | 경사계 | 경사의 측정 범위가 최대 ±45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5 | 9031 | 80 | 조타력 3분력 검출장치 (Rudder Force Measuring System) | 선박의 조타기(Rudder)에 걸리는 3방향의 힘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6 | 9031 | 80 | 운전자 동작분석기 | 인체에 부착한 마커(Marker)의 채널 수가 4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7 | 9031 | 80 | 표면장력 측정기 | 액체의 표면을 드롭셰이프(Drop Shape)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8 | 9031 | 80 | 공기회전력 측정기 | 자동차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 회전력(Swirl)을 토크 값으로 측정할 수 있고,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9 | 9031 | 80 | 변속기 시험기 | 자동차용 변속기의 소음 · 진동 · 성능 또는 내구 시험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천 회 이상인 것<br>2. 토크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240 | 9031 | 80 | 기어 측정기 | 기어의 피치, 나선각(Helix Angle) 및 흔들림(Run Out)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1 | 9031 | 80 | 연소 시험기 | 자동차엔진 내부의 연소 상태를 시험 및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2 | 9031 | 80 | 마모입자 분석기 | 윤활유 내의 금속마모입자를 정량분석 또는 정성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3 | 9031 | 80 | 연료소비량 측정기 | 자동차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이거나 자동교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44 | 9031 | 80 | 타이어 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타이어를 최대 시속 300킬로미터 이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br>2. 타이어 비드부(Bead 部)의 압착력 측정이 가능한 것 |
| 245 | 9031 | 80 | 현가시험기 또는 댐퍼시험기 | 자동차의 현가장치 또는 그 구성품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축의 하중이 최대 0.5톤 이상인 유압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246 | 9031 | 80 | 차륜정렬시험기 |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캠버각(Angle of Camber), 캐스터각(Angle of Caster) 또는 토인각(Angle of Toe-in)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7 | 9031 | 80 | 공연비 분석기 또는 측정기 | 자동차엔진의 공연비(空燃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이거나 람다센서(Lambda Sensor)가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248 | 9031 | 80 | 에어컨시험장치 | 자동차에어컨 시스템의 압축기 구동부, 증발기 및 응축기의 내구성 또는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9 | 9031 | 80 | 온도 또는 전압 교정기 |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전압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 9031 | 80 | 모덜 분석장비 | 자동차 부품의 구조해석을 위한 모덜(Modal) 분석장비로 한정한다. |
| 251 | 9031 | 80 | 내후성 시험기(Weather Meter) | 크세논램프(Xenon Lamp) 또는 자외선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광량 및 온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52 | 9031 | 80 | 자동화상검사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저온소성세라믹(LTCC) 시트의 불량 유무 검사용으로서 측정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br>2. 시시디(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용 세라믹 시트의 불량 유무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분해 능력이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253 | 9031 | 80 | 6분력계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머플러의 6분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계측 범위가 5킬로뉴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4 | 9031 | 80 | 모션캡쳐 시스템 | 실시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일련번호 | 관세율표 번호 | | 품 명 | 규 격 |
|---|---|---|---|---|
| | 호 | 소호 | | |
| 255 | 9618 | 00 | 인체모형 또는 인체부분모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자동차의 충돌시험용 또는 자동차 충격시험에 사용되는 것<br>2. 자동차 시트 표면에 작용하는 인체 하중 분포 시험용인 것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2008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261개 물품 중 수소저장장치 등 50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외선분광기 등 44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총 255개 물품에 대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법무부령 제640호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

###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

교도관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를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로, "교회직류·분류직류공무원 및 직업훈련담당공무원"을 "교회직류·분류직류공무원, 직업훈련담당공무원, 보건의무직공무원 및 기술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모"를 "예모 및 근무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무연수원신임교정반 학생표지로"를 "교정상징문양으로"로, "교도장과 소속장의 2종으로, 법무연수원 신임교정반 학생표지는 7급반과 9급반의 2종으로 구분하며"를 "교도장과 소속장의 2종으로 구분하며"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을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원실 등에서 민원관련 업무를 할 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 1]

교도관모의 제식(제3조제2항제1호 관련)

1. 예 모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남자교도관<br>1) 덮 개<br>가)겨울예모 : 흑색 모직지(겨울 예복지와 같음)<br>나)여름예모 : 백색 모직 또는 모 · 폴리에스테르 혼방지(여름 예복지와 같음)<br>2) 차양 : 흑색 멜론지 또는 가죽<br>3)턱끈(전반부) : 금색 금속사<br>4) 주름테 : 흑색 견직지 | 가. 남자교도관<br>1) 모자를 감싸는 윗부분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둥근망사줄을 넣어 팽팽하게 한다.<br>2) 모자테의 둘레 바깥면에는 너비 4센티미터의 주름테를 두르고, 안면에는 비닐땀받이를 붙인다.<br>3) 주름테에는 상 · 하단에 너비 0.3센티미터의 금색 금속사줄을 두르고, 가운데 부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금색 금속사로 자수한다.<br>가) 서기관 이상 : 활짝핀 무궁화 1개에 무궁화봉오리 2개와 무궁화잎 2매가 연결된 것 18개를 상하 2줄로 자수한다.<br>나) 교정관 · 교정관시보 : 활짝 핀 무궁화 1개에 무궁화봉오리 2개와 무궁화잎 2매가 연결된 것 18개를 한가운데에 1줄로 자수한다. | 가. 남자교도관<br>1) 모 자<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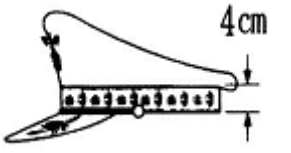 <br>2) 주름테<br>가) 서기관 이상<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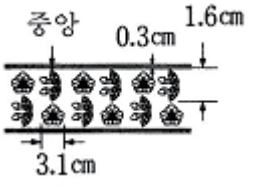 <br>나)교정관 · 교정관시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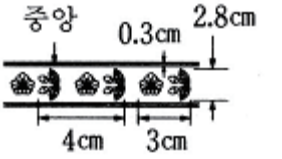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다)교감 · 교위 · 교위시보 : 무궁화봉오리 2개와 무궁화잎 2매가 연결된 것 51개를 한가운데에 1줄로 2개씩 엇바꾸어 연결 자수한다. | 다)교감 · 교위 · 교위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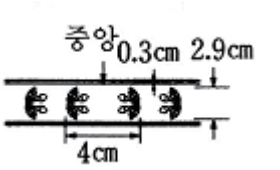  |
| | 라) 교사 이하 : 자수를 하지 아니한다. | 라) 교사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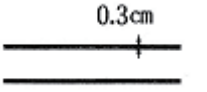  |
| | 4) 턱끈은 금색 금속사끈 6개를 3가닥으로 엮은 것을 모자테의 전반부에 두르고, 양끝에 귀단추(소형)를 단다. | |
| | 5) 차양은 정모와 같이 하고 모자표장은 정장을 붙이되, 그 하단이 주름테의 한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
| 나.여자교도관 : 남자교도관의 것과 같다. 다만, 차양은 덮개의 재질과 같이 한다. | 나.여자교도관 : 여자교도관의 정모와 같이 하고, 모자표장은 정장을 붙이되, 그 하단이 턱끈으로부터 위로 1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오도록 한다. | 나.여자교도관 : 여자교도관의 정모와 같다. |

2. 정 모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남자교도관 | 가. 남자교도관 | 가. 남자교도관 |
| 1) 덮개 : 정복지와 같다. | 1) 모자를 감싸는 윗부분은 타원형으로하고, 둘레에는 둥근망사줄을 넣어 팽팽하게 한다. | 1) 모 자 |
| 2) 턱끈 : 황동판에 금색도금 | 2) 모자의 둘레 바깥 면에는 너비 4센티미터의 주름테를 두르고, 안면에는 땀받이를 붙인다. | 가) 교감 이상 |
| | 3) 모자테의 앞쪽에 너비 1.5센티미터의 금색 턱끈을 두르고, 양끝에 금색 귀단추(소형)를 단다. | 나) 교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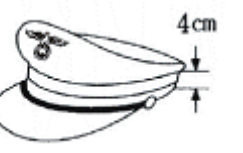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3) 차 양<br>가)교감이상 : 흑색 나사지 위에 황동판 금색 도금장식<br>나)교위이하 : 흑색 비닐지<br>4) 주름테 : 흑색 견직지 | 4)차양은반월형으로 한다. 다만, 교감 이상은 차양표면에 다음 구분에 따라 금색 무궁화장식을 붙인다.<br>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본부장) : 한가운데에 직경 2.8센티미터의 서기관 계급장 문양과 그 양 옆에 무궁화봉오리 14개(양옆에 각 7개) 및 무궁화잎 30매(양옆에 각 15매)를 2단으로 구성한다.<br>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및 지방교정청장) : 한가운데에 직경 2.6센티미터의 서기관 계급장 문양과 양 옆에 무궁화 봉오리 12개(양옆에 각 6개) 및 무궁화잎 28매(양옆에 각 14매)를 2단으로 구성한다.<br>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보안정책단장 및 교정시설의 장) 및 부이사관; 한가운데에 직경 2.3센티미터의 서기관 계급장 문양과 그 양 옆에 무궁화봉오리 10개(양옆에 각 5개) 및 무궁화잎 24매(양옆에 각 12매)로 한다. | 2) 차 양<br>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본부장)<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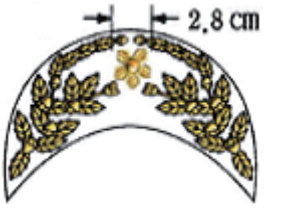 <br>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및 지방교정청장)<br> <br>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보안정책단장 및 교정시설의 장) 및 부이사관<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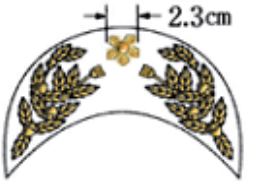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라) 서기관 : 한가운데에 직경 2.3센티미터의 서기관 계급장 문양과 그 양 옆에 무궁화봉오리 8개(양옆에 각 4개) 및 무궁화잎 20매(양옆에 각 10매)로 한다. | 라) 서기관<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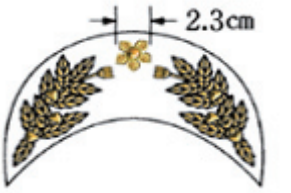 |
| | 마)교정관 : 한가운데에 직경 1.7센티미터의 무궁화 1개와 그 양옆에 무궁화봉오리 6개(양옆에 각 3개) 및 무궁화잎 16매(양옆에 각 8매)로 한다. | (마) 교정관<br> |
| | 바) 교감 : 무궁화봉오리 4개(양옆에 각 2개) 및 무궁화잎 12매(양옆에 각 6매)로 한다. | (바) 교 감<br> |
| | 5) 모자표장은 정장을 붙이되, 그 하단이 주름테의 한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
| 나. 여자교도관<br>1) 색상과 재질 : 정복지와 같다.<br>2) 턱끈 : 금색 금속사 | 나. 여자교도관<br>1) 원형의 등산모 모양으로 하되, 테둘레에 앞뒤로 누빈 차양을 두른다. | 나. 여자교도관<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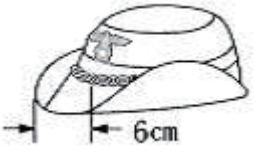 |
| | 2) 너비 1.5센티미터가 되도록 금색 금속사를 꼬아 모자테의 전반부에 두르고 양끝에 금색 귀단추(소형)를 단다. | |
| | 3) 교감 이상은 앞차양 표면에 남자교도관의 것과 같은 장식을 자수한다. | |
| | 4) 모자표장은 정장을 붙이되, 그 하단이 턱끝으로부터 위로 1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오도록 한다. | |

3. 근무모

| 재 질 | 제 식 | 도형 |
|---|---|---|
| 정복지와 같다. | 가. 겨울근무모<br>1) 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이 높고 뒷면이 낮게 한다.<br>2) 앞면 속부분에 앞면을 세우는 플라스틱받침대를 부착한다.<br>3) 교감 이상은 차양표면에 정모의 것과 같은 모양을 금색사로 자수한다.<br>4) 근무모 뒷면에 모자 크기를 조절하는 도형과 같은 장치를 부착한다.<br>5)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br><br>나. 여름근무모<br>여름근무모의제식은 겨울근무모의제식과 같으나, 양측면은 망사로 한다. | 가. 겨울근무모<br>1) 앞면<br> <br>2) 뒷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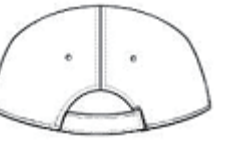 <br>나. 여름근무모<br> |

4. 기동모 및 방한모(남 · 여 공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기동모 : 기동복지와 같이 한다. | 가. 기동모<br>1) 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이 높고 뒷면이 낮게 한다.<br>2) 교감 이상의 것의 차양 표면에는 정모의 것과 같은 장식을 자수한다.<br>3)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이되, 덮개의 앞면 한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가. 기동모<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나.방한모 : 진회색면직 또는모 · 폴리에스텔 혼방지(기동복지와 같음) | 나. 방한모<br>1) 투구 모양으로 하고, 양귀 부분에 구멍이 뚫린 귀가리개를 달며, 그 끝에 끈을 단다.<br>2) 차양은 위로 향한다.<br>3)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이되, 위로 향한 차양의 표면 한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나. 방한모<br> |

[별표 2]

교도관복의 제식(제3조제2항제2호 관련)

1. 예 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남자교도관<br>1) 겨울예복 : 흑색 모직지<br>2) 여름예복 : 백색 모직지 또는 모 · 폴리에스테르 혼방지<br><br>나.여자교도관 : 남자교도관의 예복과 같다. | 가. 남자교도관<br>1) 상의는 남자교도관의 정복 상의와 같이 하되, 깃은 벌림칼 깃으로서 왼쪽 깃끝이 1센티미터 더 길게 하며, 양어깨에는 어깨표장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각각 고리 2개를 단다.<br>2) 상의의 양어깨에는 어깨표장을 각각 붙인다.<br>3) 상의의 양소매에는 소매표장을 각각 붙인다.<br>4) 가슴표장 · 지휘관표장 및 깃표장을 다는 위치는 남자교도관의 정복상의와 같다.<br>5) 하의는 남자교도관의 정복하의와 같이 한다. | 가. 남자교도관<br>1) 상 의<br>가) 앞 면<br> <br>나) 뒷 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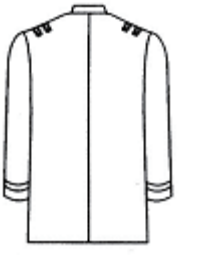 <br>2) 하 의<br>남자교도관의 정복하의와 같다.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나. 여자교도관<br>1) 상의는 여자교도관의 정복 상의와 같이 하되, 뒷면 가운데 선 대신 허리부분에서 상의 하단으로 잇는 이음줄 2개(양옆에 각 1개)를 넣고, 양어깨에는 어깨표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각각 고리 2개를 단다.<br>2) 상의의 양어깨에는 어깨표장을 각각 붙인다.<br>3) 상의의 양소매에는 소매표장을 각각 붙인다.<br>4) 가슴표장 · 지휘관표장 및 깃표장을 다는 위치는 여자교도관의 정복 상의와 같다.<br>5) 하의는 여자교도관의 정복 하의와 같이 한다. | 나. 여자교도관<br>1) 상 의<br>가) 앞 면<br> <br>나) 뒷 면<br> <br>2)하의 : 여자교도관의 정복 하의와 같다. |

2. 정 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진회색 모 · 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남 · 여 공통) | 가. 남자교도관<br>1) 상 의<br>가) 벌림깃으로 하되, 왼쪽 깃끝이 1센티미터 더 길게 하며, 앞면 한가운데 1줄로 4개의 단추(대형)를 단다.<br>나) 가슴부분과 배부분 양옆에 속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고, 흉부양옆주머니에는 단추(중형)를 단다.<br>다) 양어깨에는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단추(중형)를 단다. | 가. 남자교도관<br>1) 상 의<br>가) 앞 면<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라) 등판은 가운데 봉합선 하단을 가른다.<br>마) 양어깨 표장지에는 계급장(정장)을 단다.<br>바) 가슴표장은 왼쪽 가슴부분주머니 한가운데에, 지휘관표장은 오른쪽 가슴부분주머니 한가운데에 단다.<br>사) 깃표장 중 교도장은 왼쪽 아래 깃 한가운데에, 소속장은 오른쪽 아래 깃 한가운데에 단다. | 나) 뒷 면<br> |
| | 2) 하 의<br>가) 긴 바지로 한다.<br>나)양옆면에 각각 사선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붙이고, 오른쪽 주머니안에 속붙임 작은주머니를 붙인다.<br>다) 뒷면 양옆으로 각각속붙임주머니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소형)는 왼쪽에만 단다.<br>라) 앞판 좌우에 주름 2개를 만든다 | 2) 하 의<br>가) 앞 면<br> <br>나) 뒷 면<br> |
| | 나. 여자교도관<br>1) 상 의<br>가) 벌림깃으로 하되, 오른쪽 깃끝이 1센티미터 더 길게 하며, 앞면 한가운데에 1줄로 4개의 단추(대형)를 달고, 허리부분은 잘록하게 한다.<br>나) 양면 허리 양옆에 속붙임주머니를 붙인다. | 나. 여자교도관<br>1) 상 의<br>가) 앞 면<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다) 양어깨에는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단추(중형)를 단다.<br>라) 양어깨 표장지에는 계급장(정장)을 단다.<br>마) 가슴표장을 다는 위치는 남자교도관의 정복과 같다.<br>바) 깃표장을 다는 위치는 남자교도관의 정복과 같다.<br>2) 하 의<br>가) 여자용 보통치마 또는 바지로 하되 치마는 그 끝이 무릎을 덮도록 한다.<br>나) 양 옆면에 각각 길이로 사선 속붙임주머니를 붙이며, 뒷면 하단은 맞주름으로 한다. | 나) 뒷 면<br> <br>2) 하 의<br>가) 치 마<br>(앞 면)<br> <br>(뒷 면)<br> <br>나) 바 지<br> |

3. 근무복(남 · 여 공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겨울옷<br>1)상의 : 연청회색 모 · 폴리에스테르 혼방지 | 가. 겨울옷<br>1) 상 의<br>가) 와이셔츠식 깃에, 앞면 한가운데에 1줄 5개의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br>나)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을 커프스식으로 하여 소매에 각각 플라스틱단추(소형) 2개씩을 단다.<br>다)가슴부분 양옆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br>라) 양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br>마) 가슴표장은 왼쪽 주머니 상단 재봉선위에, 지휘관 표장은 오른쪽 가슴부분 주머니 한가운데에, 계급장 (약장)은 양어깨표장지에, 교정표지장은 왼쪽팔 상단에, 명찰은 오른쪽 주머니 상단 재봉선 위에 각각 단다 | 가. 겨울옷<br>1) 상 의<br>가) 앞 면<br> <br><br>※ 여자는 오른쪽 앞섶이 위로 가게 한다.<br>나) 뒷 면<br> |
| 2) 하의 : 정복지와 같다. | 2) 하의 : 정복하의와 같이 하되, 여자교도관의 것은 치마와 바지 두가지로 한다. | 2) 하 의<br>가)치마 : 정복치마와 같다.<br>나) 바 지<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나. 여름옷 : 겨울옷과 같다. | 나. 여름옷<br>1) 남자교도관의 상의<br>가) 노타이식 깃으로 하고, 앞면 한가운데에 1줄로 5개의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br>나) 반소매로 하고, 가슴부분 양옆에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며,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br>다) 양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br>라)가슴표장 · 지휘관표장 · 계급장(약장) · 교정 표지장 및 명찰을 다는 위치는 근무복과 같다.<br>2) 남자교도관의 하의 : 남자교도관의 정복하의와 같다.<br>3) 여자교도관의 상의 : 남자교도관의 여름옷 상의와 같다. 다만, 허리부분에곡선을 주며 밖으로 내어 입는다. | 나. 여름옷<br>1) 남자교도관의 상의<br>가) 앞 면<br> <br><br>나) 뒷 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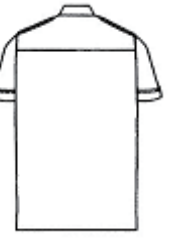 <br>2) 남자교도관의 하의 : 남자교도관의 정복하의와 같다.<br>3) 여자교도관의 상의<br>가) 앞 면<br> <br>나) 뒷 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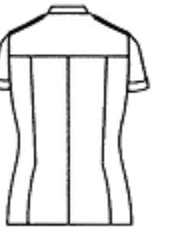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다.임부근무복 : 근무복과 같다 | 4) 여자교도관의 하의 : 여자교도관의 겨울옷 하의와 같다.<br>다. 임부근무복<br>1) 상의는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단추는 앞면 한가운데에 5개의 플라스틱 단추(소형)를 달며 밖으로 내어 입는다.<br>2) 소매부분은 근무복과 같다. 다만, 여름철에는 반소매로 한다.<br>3) 가슴부분 양옆에 속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달며 가슴부위에 세로로 주름을 만든다.<br>4) 계급장(약장) · 교정표지장 및 명찰을 달며 그 위치는 근무복과 같다.<br>5) 하의는 보통치마로 하되, 무릎 아래로 내려오게 한다.<br>6) 허리띠는 배부위는 조임끈으로 하고 등부위는 신축성 있는 고무띠를 단다. | 4) 여자교도관의 하의 : 근무복 겨울옷 여자 교도관의 하의와 같다.<br>다. 임부근무복<br>1) 상 의<br> <br><br>2) 하 의<br> |

4. 기동복(남 · 여 공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진회색 화학섬유 혼방지 | 가.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앞면 한가운데에 5개의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 | 가. 상 의<br>1) 앞 면<br> <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 2) 뒷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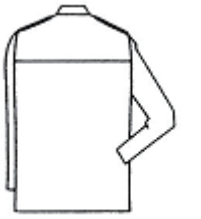 |
| | 나. 하의는 정복하의와 같이 하되, 양측면에 바깥주머니를 단다.<br>다. 계급장(약장)·지휘관표장·교정표지장 및 명찰의 위치는 근무복과 같고, 왼쪽 가슴부위에 교정상징문양을 부착한다. | 나. 하 의 |

5. 점퍼(남·여 공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진회색 폴리에스테르(프라다) | 가. 점 퍼<br>1) 나비깃에 흑색 인조모피 깃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한다.<br>2) 복지 안쪽면에 보온용 솜을 부착하고, 진회색 보온용 누비를 지퍼식으로 하여 쉽게 열었다 잠갔다 할 수 있도록 한다.<br>3) 앞면에는 지퍼를 달되, 왼쪽 앞섶을 이중으로 하여 지퍼가 보이지 않게 한다.<br>4) 복부 양옆에 속붙임주머니를 사선형으로 단다.<br>5) 양어깨에는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그 위에계급장(정장)을 단다. | 가. 앞 면<br> <br>나. 뒷 면<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6) 왼쪽팔 상단에 교정표지장을 달고, 왼쪽 가슴부위에 교정상징문양(자수)을 부착하고 오른쪽 가슴부분에 명찰을 단다.<br>나. 춘추잠바 : 겨울잠바와 제식은 같되, 인조모피깃, 보온용 솜과 누비를 부착하지 않는다. | |

6. 방한외투(남 · 여 공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겉감 : 진회색 인조견(또는 면) · 폴리에스텔 혼방지<br>나. 안 감<br>1) 몸체 : 누비<br>2) 소매 : 검정색 조리개 | 가. 일반외투의 길이와 같이 한다.<br>나. 앞면 한가운데에 위에서 아래로 지퍼를 달며, 왼쪽 앞섶을 이중으로 하되, 15센티미터 간격으로 눌림단추를 단다.<br>다. 배부분 양옆에 가로로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눌림단추 1개씩을 단다.<br>라. 깃에는 첨모를 달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두건을 단다.<br>마. 안으로 보온용 누비를 붙인다.<br>바. 허리부분의 안감과 겉감을 너비 3센티미터 누빔으로 돌려박아 허리조임끈을 낀다.<br>사. 양어깨에는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그 위에 계급장(약장)을 달며, 끝에 눌림단추를 단다. | 가. 앞 면<br> <br><br>나. 뒷 면<br> <br> |

7. 비옷(남 · 여 공통)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회색의 무늬없는 나일론원단에 폴리우레탄 코팅 비옷감 | 가. 일반 외투 길이로 하되, 앞섶을 이중으로 한 벌림깃으로 하고, 남자교도관의 것은 왼쪽 섶이 위로, 여자교도관의것은 오른쪽 섶이 위로 가게 하며, 앞면에 3개씩의 플라스틱단추(대형)를 길이로 두줄단다.<br>나. 소매 끝에 너비 5센티미터의 반띠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소형) 4개를 달며, 등부분의 안쪽에 등받이를 덧붙인다.<br>다. 앞 · 뒷면 양쪽에 허리띠 고리를 달아 폭 5센티미터의 허리띠를 두르고, 한쪽 끝에 비옷과 같은 색의 플라스틱장식의 버클을 단다.<br>라. 배부분의 양쪽에 사선 속붙임주머니를 붙이고,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3개씩의 통풍구를 낸다.<br>마. 양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소형)를 단다.<br>바. 교사 이하에 한하여 두건을 깃부분에 연결하게 한다. | 가. 비 옷<br>가) 앞 면<br> <br>※여자는 오른쪽 앞섶이 위로 가게 한다.<br>나) 뒷 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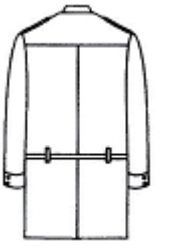 <br>나. 두 건<br> |

8.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상의)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연회색 순모(남 · 여 공통) | 가. 겨울옷<br>1) 남자사복교도관<br>가)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없이 하고, 1줄 4개의 플라스틱단추(중형)를 단다. | 가. 겨울옷<br>1) 남자사복교도관<br>가) 앞 면<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나) 양쪽 가슴부분과 배부분에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인다.<br>다) 등판은 가운데 봉합선 하단을 가른다. | 나) 뒷 면<br> |
| | 2) 여자사복교도관<br>남자사복교도관과 같이 하되, 뒷면의 봉합선 하단을 가른 윗부분에 세로 3센티미터 크기의 천을 가로로 대고 양쪽 끝에 플라스틱단추(중형)를 단다. | 2) 여자사복교도관<br>가) 앞 면<br> <br>나) 뒷 면<br> |
| 연회색(줄무늬)모 · 폴리에스테르(남 · 녀 공용) | 나. 여름옷 : 겨울옷과 같이 하되, 반소매로 한다. | 나. 여름옷 : 겨울옷과 같이 하되, 반소매로 한다. |

[별표 4]

직위 · 계급별 표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

1. 정장과 약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정장 : 황동판에 크롬도금 | 가. 정 장<br>1)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본부장) : 태극장 둘레에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것 4개를 배열한다. | 가. 정 장<br>1)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본부장)<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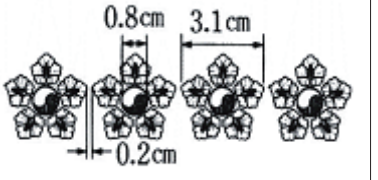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2)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및 지방교정청장) : 5각 무궁화 3개를 배열한다. | 2)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교정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및 지방교정청장)<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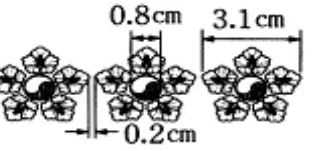 |
| | 3)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보안정책단장 및 교정시설의장)및 부이사관 : 5각 무궁화 2개를 배열한다. | 3)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보안정책단장 및 교정시설의장) 및 부이사관<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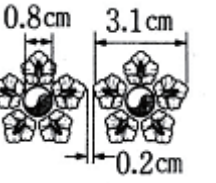 |
| | 4) 서기관 : 5각 무궁화 1개로 한다. | 4) 서기관<br> |
| | 5) 교정관 · 교정관시보 : 활짝 핀 무궁화 3개를 배열한다. | 5) 교정관 · 교정관시보<br> |
| | 6) 교감 : 교정관의 것과 같은 무궁화 2개를 배열한다. | 6) 교감<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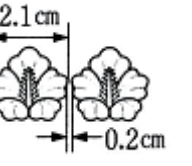 |
| | 7) 교위 · 교위시보 : 교정관의 것과 같은 무궁화 1개로 한다. | 7) 교위 · 교위시보<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8) 교사 : 태극장 둘레의 무궁화 잎 3매를 3개 배열한다. | 8) 교사<br> |
| | 9) 교도 · 교도시보 : 교사와 같은 무궁화 잎 2개를 배열한다. | 9) 교도 · 교도시보<br> |
| 나. 약장 : 정복지와같은 색상과 재질의 받침대 위에 교정감 이상은 청 · 홍색 태극장에 은색사로 자수한 무궁화로 하고, 교정관 이하는 백사로 자수한다. | 나. 약장 : 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는 정장의 3분의 2로 한다. | 나. 약장 : 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는 정장의 3분의 2로 한다. |

2. 어깨표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겨울 예복용은 흑색 나사지, 여름 예복용은 백색 나사지 | 가. 바탕은 길이 14.5센티미터, 너비 5.5센티미터로 하고 깃쪽의 끝이 2개의 각이 되게 하며, 바탕속에경금속판을 넣어 빳빳하게 하고, 뒷면은 흑색으로 하되, 2개의 고리를 달며, 눌림단추를 단다.<br>나. 바탕의 표면 둘레에는 금속 금속사 3가닥으로 땋은 너비 0.7센티미터의 줄을 두른다.<br>다. 바탕표면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금색 금속사로 자수하고, 깃쪽에 어깨표장지 단추를, 한가운데에 해당 계급의 정장을 단다.<br>1) 서기관 이상 : 바탕 전면을 자수한다. |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교정본부장)<br> <br>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교정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및 지방교정청장)<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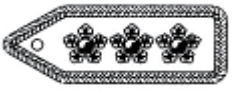 <br>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보안정책단장 및 교정시설의장) 및 부이사관<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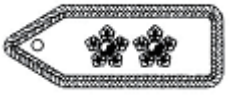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2) 교정관 · 교정관시보 : 상하 양쪽에 너비 3센티미터를 자수한다.<br>3) 교감 · 교위 · 교위시보 : 상하 양쪽에 너비 2센티미터를 자수한다.<br>4) 교사 이하 : 상하 양쪽에 너비 1센티미터를 자수한다. | 라. 서기관<br> <br>마. 교정관 · 교정관시보<br> <br>바. 교감<br> <br>사. 교위 · 교위시보<br> <br>아. 교사<br> <br>자. 교도 · 교도시보<br> |

3. 소매표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주름줄 및 자수부분 : 금색 금속사 | 양소매에 다음 구분에 따라 소매표장을 단다.<br>가. 서기관 이상 : 소매끝에서 위로 5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너비 5센티미터의 주름줄을 두르고, 그 위에 0.3센티미터를 띄어서 활짝 핀 무궁화, 무궁화 봉오리, 무궁화잎을 금색 금속사로 자수한다. | 가. 서기관 이상<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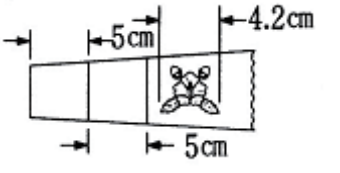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나. 교정관 · 교정관시보 : 소매끝에서 위로 6.5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너비 3센티미터의 주름줄을 두르고 그 위에 교정감 이상의 것과 같은 활짝 핀 무궁화, 무궁화봉오리, 무궁화잎을 금색 금속사로 자수한다. | 나. 교정관 · 교정관시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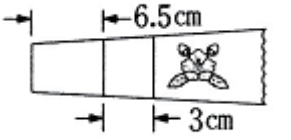 |
| | 다.교감 · 교위 · 교위시보 : 소매끝에서 위로 8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너비 2센티미터의 주름줄을 두르고, 그 위에 교정감 이상의 것과 같은 활짝 핀 무궁화, 무궁화봉오리, 무궁화잎을 금색 금속사로 자수한다. | 다. 교감 · 교위 · 교위시보<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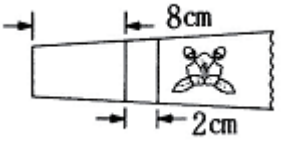 |
| | 라. 교사 이하 : 소매 끝에서 위로 8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너비 2센티미터의 주름줄만 두른다. | 라. 교사 이하<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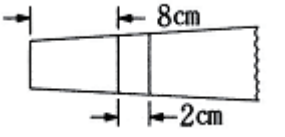 |

[별표 5]

표지장의 제식(제3조제2항제5호 관련)

1. 모자표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정장 : 흑색 나사지 바탕에 금색 금속사로 자수하되, 비둘기의 눈은 금색흑색사로 하며, 횃불은 백색사로 태극장은 청 · 홍색사로 자수한다. | 가. 정 장<br>1)남자교도관 : 지름 1.3센티미터의 청 · 홍색 태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궁화 위에 횃불봉과 횃불 및 비상하는 한 마리의 비둘기를 배치한다. | 가. 정 장<br>1) 남자교도관<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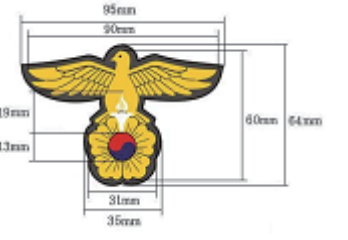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 2)여자교도관 : 남자교도관의 것과 같이 하되, 무궁화의 지름을 2.5센티미터로 하는 등 그 크기를 작게 한다. | 2) 여자교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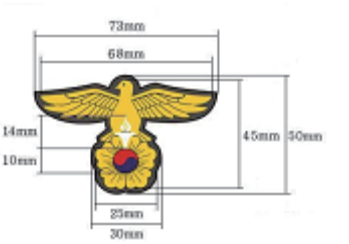  |
| 나. 약장 : 정장과 같다. | 나. 약장 : 여자교도관의 정장과 같다. | 나. 약장 : 여자교도관의 정장과 같다. |

2. 가슴표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은색 금속지로 주조 | 가. 윗부분의 타원형 방패와 아랫부분의 띠로 구성한다.<br>나. 폭 5센티미터, 길이 6.5센티미터의 방패 가운데에는 폭 3.2센티미터, 길이 4센티미터의 타원과 폭 5.9 센티미터의 모자 표장 문양을 배치한다.<br>다. 타원형 방패와 모자 표장 문양을 둘러싸고 있는 타원사이에는 두개의 타원을 1.5 밀리미터 간격으로 배치한다.<br>라. 띠 안에는 “CORRECTION”을 표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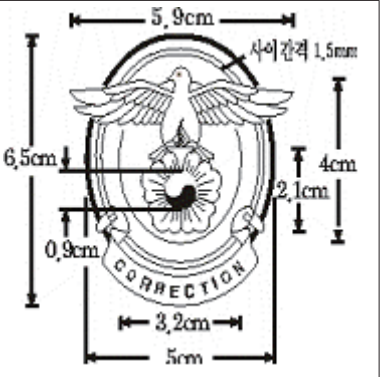  |

3. 깃표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가. 교도장 : 금색 금속지 | 가. 교도장<br>1) 직경이 1센티미터인 원형 둘레에 무궁화 꽃잎 5매를 배열하고, 그 둘레에 무궁화 잎 14매(양쪽 각 7매)를 연결하여 배치하며, 전체지름은 2센티미터로 한다.<br>2)원형안은백색으로 하고,청색으로“교정”이라는 글자를 세로로 새긴다. | 가. 교도장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나. 소속장 : 교도장과 같다. | 나. 소속장 : 직경이 1센티미터인 원형둘레에 무궁화잎 5매를 두르고, 백색바탕의원형속에 청색으로 소속을 세로로 새기며, 전체지름을 2센티미터로 한다. | 나. 소속장<br> |

4. 교정표지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진회색 나사지 바탕에 백색사로 자수한다. | 가. 윗부분의 원형과 아랫부분의 방패로 구성한다.<br>나. 방패 가운데에 모자 표장 문양을 배치하고, 윗부분의 원형 안에는 “교정”을, 방패아랫부분에는 “법무부”를 각각 표기한다.<br>다. 모자 표장 문양 아래 원형 띠 안에는 “JUSTICE CORRECTION”을 표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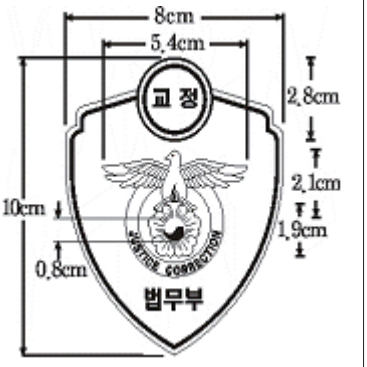 |

5. 지휘관표장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은색 금속지로 주조 | 폭 6센티미터, 길이 6.5센티미터의 세로로 가는 선을 친 방패모양의 바탕위에 무궁화의 지름을 2.1센티미터로 작게 한 모자표장을 위치시키고, 무궁화의 가운데에는 지름 0.9센티미터의 청·홍색 태극장을 넣고 무궁화 아랫부분은 월계수 잎 14매를 가로로 배열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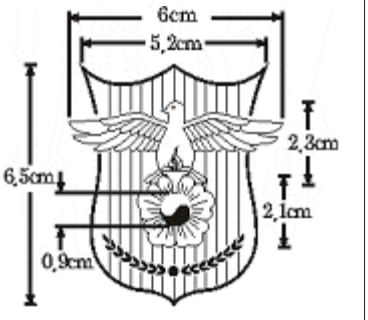 |

6. 교정상징문양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흑색나사지 바탕에 백색사 등으로 자수한다. | 가. 직경이 6센티미터인 원형과 청색바탕의 직경이 3센티미터인 원형안의 모자표장 문양으로 구성한다.<br>나. 비둘기와 무궁화는 회색사로 자수하되 횃불과 태극장은 모자표장의 것과 동일한 색상으로 자수한다.<br>다. 직경 6센티미터의 원형둘레 윗부분에는 0.15센티미터 굵기의 회색 반원을 두르고, 직경 3센티미터의 원형 둘레 윗부분에는 0.2센티미터 굵기의 반원을 두르며 아랫부분에는 0.15센티미터 굵기의 반원을 두른다.<br>라. 직경 6센티미터의 원형과 직경 3센티미터의 원형 사이에는 지름 4.8센티미터의 원을 배치한다.<br>마. 진청색바탕의 사각 원형 띠 속에 백색으로 “교정”이라는 글자를 가로로 새기고, 모자표장문양아래에는“KOREA CORRECTIONAL SERVICE”를 표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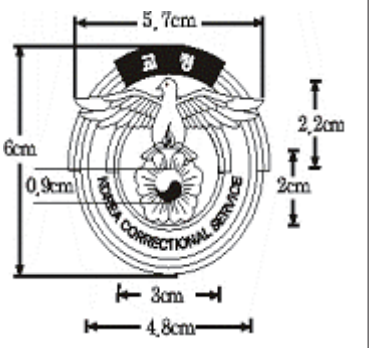 |

[별표 6]

부속물의 제식(제3조제2항제6호 관련)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1. 와이셔츠(예복 및 정복용) : 백색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지 | 1. 와이셔츠(예복 및 정복용) : 일반보통와이셔츠와 같은 규격으로 한다. | 1. 와이셔츠(예복 및 정복용) |
| 2. 넥타이 : 청색폴리에스테르지로 한다. | 2. 넥타이<br>가. 예복용 : 일반용 보통넥타이와 같은 규격으로 한다.<br>나. 정복 및 근무복용 : 탈부착식 또는 지퍼식으로 하되 지퍼식 넥타이에는 안전장치로 잠금 · 풀림 고리를 부착한다. | 2. 넥타이<br>가. 예복용 <br>나. 정복 및 근무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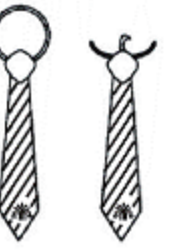 |
| 3. 넥타이핀 : 황동판에 크롬도금 및 멜라닌 색조 조합 | 3. 넥타이핀<br>가. 집게형으로 하고 3단 받침대 위에 교정을 상징하는 배지를 붙이고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제작한다.<br>나. 배지의 가운데 원형안에는 모자표장 문양을 하고, 그 원형 둘레에는 “대한민국 · 법무 · CORRECTION · 교정”을 표기하며, 가장자리에는 무궁화꽃과 잎을 5각으로 연결한다. | 3. 넥타이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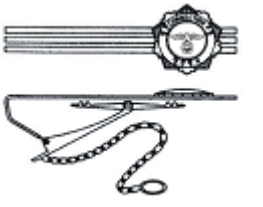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4. 단 추<br>가. 금속 단추 : 황동판에 니켈 도금 | 4. 단 추<br>가. 금속 단추<br>1) 크기는 대형과 중형으로 구분하며, 대형의 지름은 2.3센티미터, 중형의 지름은 1.7센티미터로 한다.<br>2) 모양은 반구형으로 하되, 가장자리는 로프식 띠를 두르고 그 안에 모자표장 문양을 양각한다.<br>3) 뒷면의 중앙에 고리를 달고, 고리를 중심으로 “ㅂㅓㅂ ㅁㅜ ㄱㅛㅈㅓㅇ”을 음각한다.<br>4) 다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br>가) 대형 : 예복·정복의 상의 앞면<br>나) 중형 : 예복·정복의어깨표장지, 예복·정복의 주머니, 정모의 귀단추 | 4. 단 추<br>가. 금속 단추<br> <br> |
| 나. 플라스틱단추 : 소재는 플라스틱이고, 색상은 부착되는 복장과 같이 한다. | 나. 플라스틱단추<br>1) 크기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며, 대형의 지름은 2.3센티미터, 소형의 지름은 1.4센티미터로 한다.<br>2) 모양은 원형으로 하되, 앞면에 “ㅂㅓㅂㅁㅜ ㄱㅛㅈㅓㅇ”을 음각한다.<br>3) 다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br>가)대형 : 방한외투·비옷의 앞면, 어깨표장지 및 주머니<br>나)소형 : 근무복·기동복의 앞면, 어깨표장지및 주머니 | 나. 플라스틱단추<br> |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5. 허리띠<br>가. 근무복 허리띠<br>1) 버클 : 황동판에 크롬도금<br>2) 띠 : 가죽 또는 인조가죽 | 5. 허리띠 : 버클의 앞면에 모자 표장 문양을 양각하고 잠금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br>가. 근무복 허리띠 : 띠에 미끄럼방지턱을 붙여 버클의 돌출부위에 고정되도록 한다. | 5. 허리띠<br>가. 근무복 허리띠<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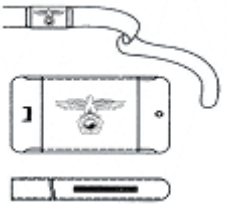 |
| 나. 기동복 허리띠<br>1) 버클 : 스테인리스<br>2) 띠 : 면직 또는 혼방지로 기동복 색상과 같이 한다. | 나. 기동복 허리띠 : 버클의 잠금봉으로 고정되도록 하고 띠의 끝에는 은색 금속제 절편을 붙인다. | 나. 기동복 허리띠<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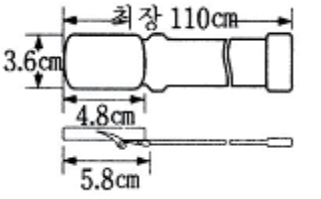 |
| 6. 장갑 : 흑색 소가죽복스지 | 6. 장갑 : 다섯손가락용 일반 가죽제품 장갑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 6. 장 갑<br> |
| 7. 명 찰<br>가. 정복·근무복 등 명찰 : 흰색아크릴에 스테인리스 | 7. 명찰 : 성명을 적당한 크기로 표기하고 하단에 영문으로 성을 표시하되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br>가. 정복·근무복 등 명찰 : 검정색으로 표기 | 7. 명 찰<br>가. 정복·근무복 등 명찰<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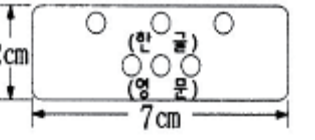 |
| 나. 기동복 명찰 : 기동복 복지와 같은 재질과 색상 | 나. 기동복 명찰 : 황색으로 자수 | 나. 기동복 명찰<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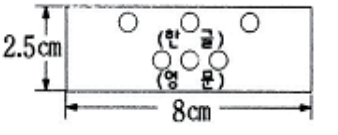 |

[별표 7]

휴대품의 제식(제14조제3항 관련)

| 재 질 | 제 식 | 도 형 |
|---|---|---|
| 1. 호루라기<br>가. 몸체 : 은색 금속지<br>나. 고리 : 은색스테인리스 | 1. 호루라기<br>가. 색상은 은색으로 하고, 일반 호루라기와 같이 한다.<br>나. 호루라기의 앞 코부분에는스테인리스 선으로 직경 1.5밀리미터의 고리를 붙인다.<br>다. 측면에 모자표장 문양을 양각한다.<br>라. 부는 구멍의 너비는 1.5센티미터로, 소리나는 구멍이 있는 몸체의 직경은 2.3센티미터, 길이는 4.3센티미터로 한다.<br>마. 호루라기 줄은 정복과 같은 색의 꼬임줄로 하되, 양끝에 연결용 고리쇠를 달고, 그 길이는 50센티미터로 한다.<br>바. 호루라기의 소리나는 구멍안에는 소리울림용 콜크 1개를 넣는다. | 1. 호루라기<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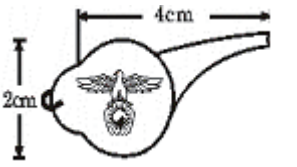 |
| 2. 포승 : 순면사 | 2. 포 승<br>가. 머리부분은 길이 3센티미터의 코로 하며, 총길이는 7미터로 한다.<br>나. 순면사 4줄을 겹쳐 꼬아야 하며, 그 지름은 0.3센티미터로 한다. | 2. 포 승<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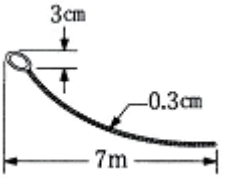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내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개편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교정본부장 및 교정정책단장 등 교정본부내 새롭게 설치되거나 변경된 직위에 맞는 계급장을 마련하여 제복에 달 수 있도록 하고, 교정상징 문양 및 모자표장 등 교도관 제복 부속물을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회 규약
2.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마을협의회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 · 위생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 · 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 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 ·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 ·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 · 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 ·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 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시장 · 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 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제7조**(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의 체계성
2. 시설 수준의 적합성
3.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
4. 이용자의 만족도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평가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현황 자료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

⑨ 그 밖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농교류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법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도농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 구 분 | 시설의 종류 | 준 수 사 항 |
|---|---|---|
|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 가. 폐교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br>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br>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br>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br>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br>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br>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
| |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br>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br>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br>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br>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br>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br>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
| 2. 안전 시설 기준 | 마을공동 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별표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구 분 | 교 육 과 목 | 교 육 시 간 |
|---|---|---|
|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1) 도농교류 관련법령 | 이론 · 현장학습 · 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
| | 2) 마을경영 | |
| | 3) 지역자원발굴 · 활용 | |
| | 4) 홍보 · 마케팅 | |
| | 5)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
| 나.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1)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 이론 · 현장학습 · 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20시간 이상 |
| | 2)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 |
| | 3) 농어촌지역 자원의 가치 창출 | |
| | 4) 농어촌지역개발 전략계획 및 기획서 작성 | |
| | 5) 지역사회 파트너쉽 형성 | |
| | 6) 지역경영 및 장소 마케팅 기법 | |
| | 7) 혁신과 리더쉽 | |
| | 8) 농어촌지역개발 현장교육 및 실습 | |
| | 9)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교 육 과 목 | 교 육 시 간 | 교 육 시 설 |
|---|---|---|
| 가.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 · 운영 | 이론 · 현장학습 · 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
| 나.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 | |
| 다. 농어촌체험 지도기법 | | |
| 라. 안전교육 | | |
|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 |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교 육 과 목 | 교 육 시 간 | 교 육 시 설 |
|---|---|---|
|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 이론 · 현장학습 · 실습 등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이상 |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
| 나. 마을해설기법 | | |
| 다. 농어촌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 |
| 라.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 | |
|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 |

[별표 3]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표시(제11조 관련)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번호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인증번호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번호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처리기간<br>30일 |
|---|---|---|---|---|
| 신청인<br>(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 사업자(마을명) | | | | |
| 마 을 소 재 지 | (전화 : ) | | | |
| 마 을 현 황 | | | | |
| 정부(지방자치단체)<br>지원사업명<br>(지원연도) | | | | |
| 사 업 개 요 |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70g/㎡】

(뒤쪽)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안내

| 제출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
|---|---|---|
| 구비 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br>(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1. 마을협의회 규약<br>2.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br>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br>4.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 위치 및 규모<br>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br>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 계획<br>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br>2.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 명세서<br>3.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설 내용 | |
|---|---|
| | 가. 생활편의시설 : |
| |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 |
| |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 |
| |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 판매 · 가공시설 : |

|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br>①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이하 생략) |
|---|---|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사업자(마을명) :

사업 소재지 :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대표자) :

주소(대표자) :

사업개요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 지정번호 | 사업자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br>번호(대표자) | 주소 | 지정<br>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7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15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마을 소재지 | | | 사업자 (마을명) | | |
| 지정번호 | | 지정 연월일 | | | |
| 변경 내용 | |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70g/㎡】

(뒤쪽)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 제출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
|---|---|---|
| 구비 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설 내용 | |
|---|---|
| | 가. 생활편의시설 : |
| |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 |
| |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 |
| |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 판매 · 가공시설 : |

| 관련 법규 |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br>① (생 략)<br>② (생 략)<br>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br>(이하 생략) |

[별지 제5호서식]

## 도 농 교 류 (기 부) 확 인 신 청 서

신청번호 : 0000년 - 0000호

1. 신청자 (전화 : )

| 성 명 (단 체 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2. 기부처

| 마을 · 대표자명 (사업자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3. 기부 내용

| 현금 | 현물 | 연월일 | 기부금품 | | | 금 액 |
|---|---|---|---|---|---|---|
| | | | 품명 | 수량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관련 증빙 영수증

210㎜×297㎜【일반용지 70g/㎡】

[별지 제6호서식]

## 도 농 교 류 (기 부) 확 인 서

1. 발급번호 : 0000년-0000호

2. 기부자 (전화 : )

| 성 명<br>(단 체 명) |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2. 기부처

| 마을 · 대표자명<br>(사업자명) |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3. 기부 내용

| 현금 | 현물 | 연월일 | 기부금품 | | | 금 액 |
|---|---|---|---|---|---|---|
| | | | 품명 | 수량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70g/㎡】

[별지 제7호서식]

##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 · 봉사) 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연도 | |
|---|---|

###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내용

| 일련번호 | 날짜 | 성 명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교류확인 내용 | | | 발급 내용 | |
|---|---|---|---|---|---|---|---|---|
| | | 기부자 또는 체험 · 봉사자 주소 | | 기부 금액 | 체험 · 봉사 활동시간 | 확인자 |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 | | 기부처 또는 체험 · 봉사활동장소 (마을 · 대표자명, 사업자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70g/㎡】

[별지 제8호서식]

## 도 농 교 류 (체 험 · 봉 사) 확 인 신 청 서

1. 신청자 (전화 : )

| 성 명 (단 체 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2. 체험봉사활동 장소

| 마을 · 대표자명 (사업자명) | |
|---|---|
| 소 재 지 | |

3. 신청 내용

| 활동기간 | | 비고 |
|---|---|---|
| 활동시간 | | |
| 활동횟수 | | |
| 활동사항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 · 봉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마을 이 · 통장
00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대표 귀하
00관광농원사업자 대표

210㎜×297㎜【일반용지 70g/㎡】

[별지 제9호서식]

## 도 농 교 류 (체 험 · 봉 사) 확 인 서

발급번호 : 0000년-0000호

1. 신청자 (전화 : )

| 성 명<br>단 체 명 |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2. 발급자

| 마을대표자<br>사업자명 |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3. 활동 내용

| 활동기간 | | 비고 |
|---|---|---|
| 활동시간 | | |
| 활동횟수 | | |
| 활동사항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체험 ·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이 · 통장
00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대표
00관광농원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7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table>
<tr><td colspan="6">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td><td>처리기간<br>180일</td></tr>
<tr><td rowspan="5">신청인</td><td>신청자<br>(기관 · 단체)명</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대표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2" row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팩스번호</td><td></td></tr>
<tr><td rowspan="8">개요</td><td>프로그램 명칭</td><td colspan="5"></td></tr>
<tr><td>교육대상</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교육시간</td><td colspan="2">계</td><td>강의</td><td colspan="2">실습</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교육내용</td><td colspan="5"></td></tr>
<tr><td>진행방법</td><td colspan="5"></td></tr>
<tr><td>강사자격</td><td colspan="5"></td></tr>
<tr><td>평가방법</td><td colspan="5"></td></tr>
</table>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br>(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 1.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 1. 사업자등록증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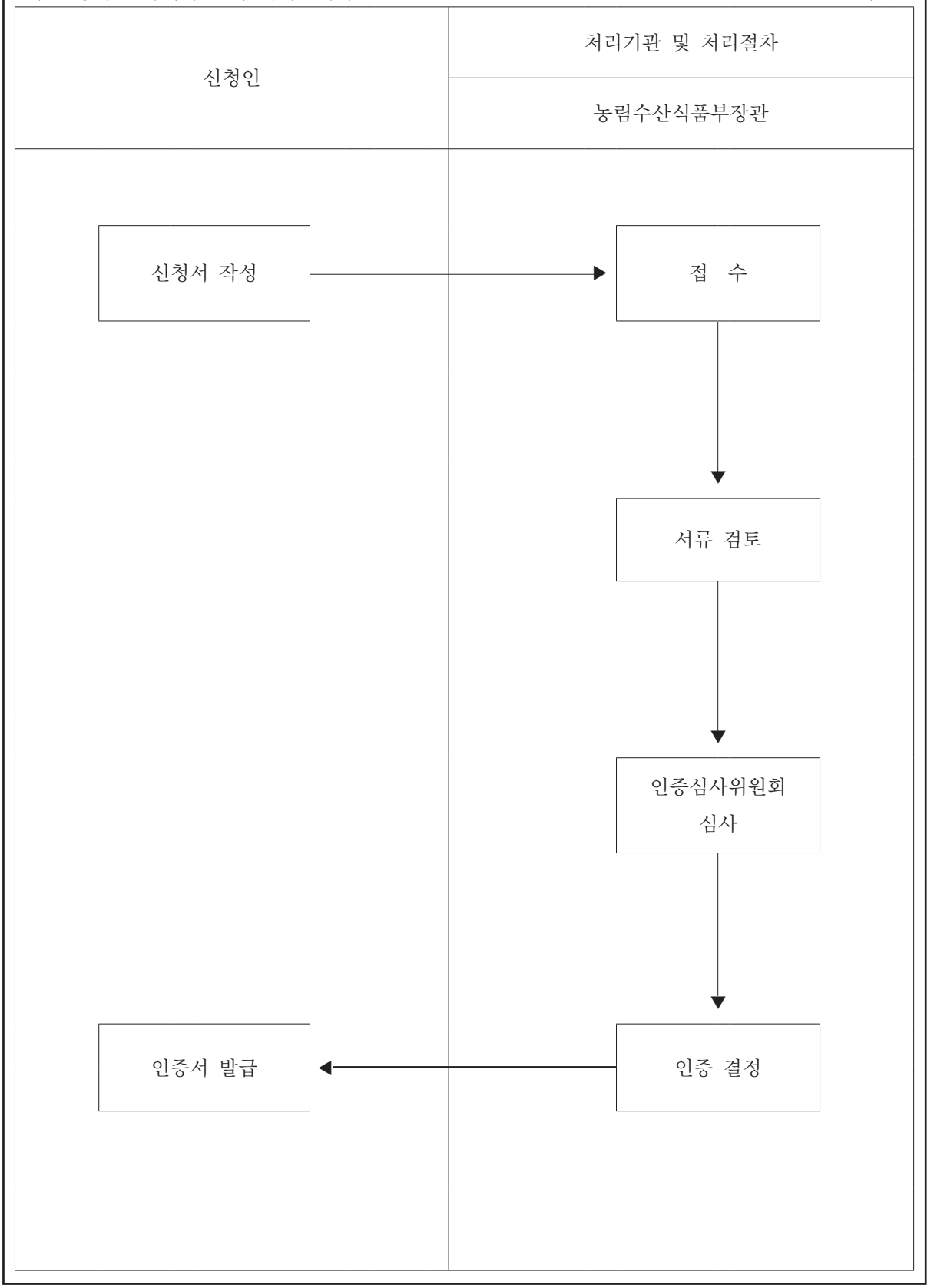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 | | | | 처리기간 180일 |
|---|---|---|---|---|---|
| 신청인 | 신청자 (기관 · 단체)명 |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
| 신청분야 (√으로 표시) | □ 농어촌체험지도사 □ 농어촌마을해설가 | | | | |

| 기본교육의 내용 | 기본교육 내용 | 강 사 | 교육교재 | | 교육시간 | | |
|---|---|---|---|---|---|---|---|
| | | | 교재명 | 발행처 · 저자 | 계 | 강의 | 실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과정 내용 | 프로그램 명칭 | 제공기관 | 교육내용 | 교육장소 | 교육방법 및 시간 | | | 강사 구성 |
|---|---|---|---|---|---|---|---|---|
| | | | | | 계 | 강의 | 실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시설 현황 | 시설구분 | 시설 갯수 | 면적 | 비고 |
|---|---|---|---|---|
| | 강의실 | | ㎡ | |
| | 실습장 | | ㎡ | |
| | 사무실 | | ㎡ | |
| | 화장실 | | 칸 | |
| | 건물 | □ 신축, □ 개조, □ 구조변경 | | |
| | 소유관계 | □ 자가, □ 임차 | | |

210㎜×297㎜【일반용지 70g/㎡】

(제2쪽)

|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br>(전공과목) | 주요경력 | 소 지<br>자격증 |
|---|---|---|---|---|---|---|
| 강사 인적 사항 | | |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br>(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구비 서류 | 1. 교육시설 현황 자료<br>2. 강사 개인별 이력서 | 1. 사업자등록증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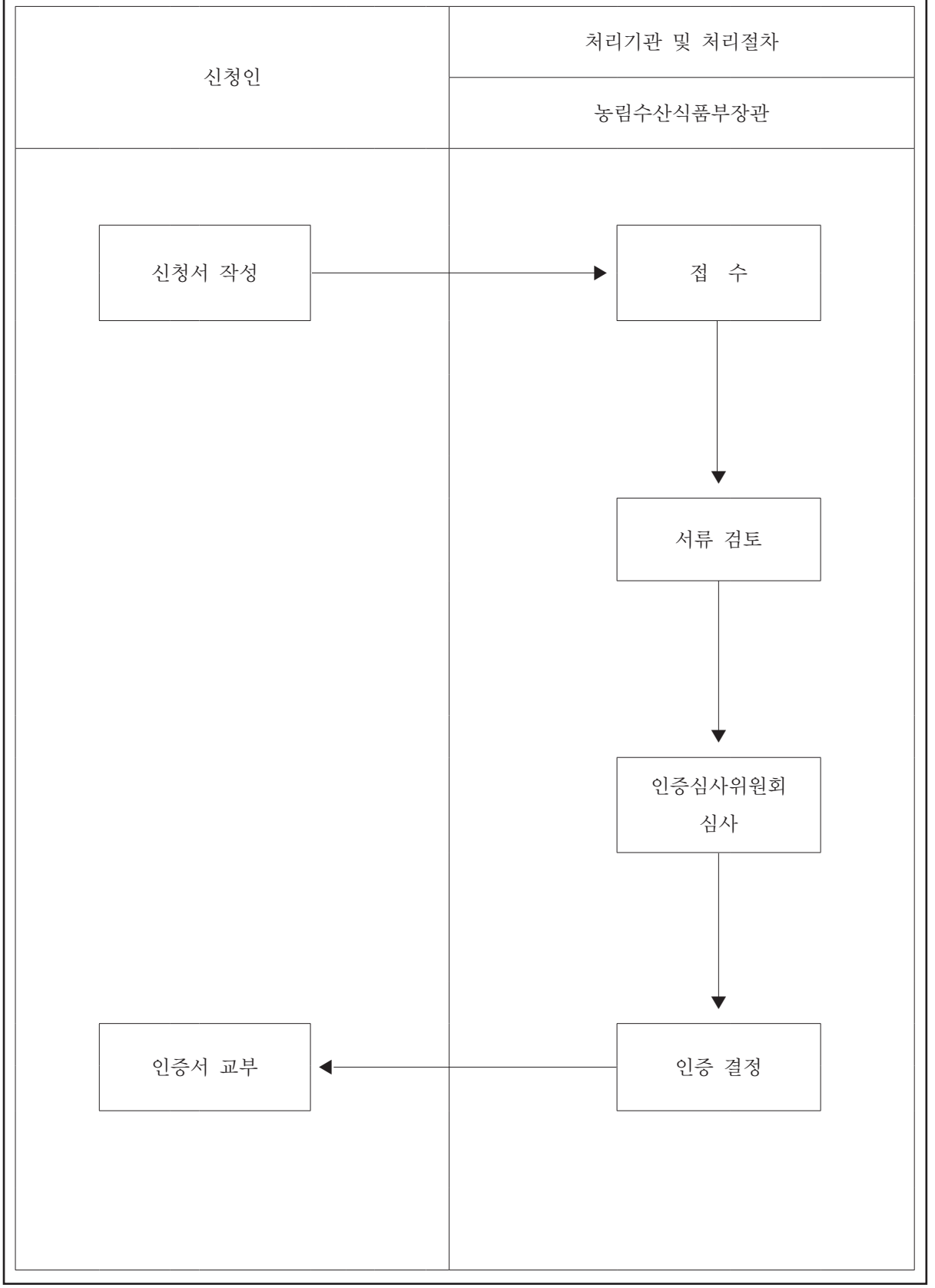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인 증 서

○ 인증번호 :

○ 기관 · 단체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인증분야 :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유효기간 : 20 . . . ~20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 | | 처리기간 60일 |
|---|---|---|---|
| ①기관 · 단체명 | | | |
| ②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③소 재 지 | (전화)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210㎜×297㎜【일반용지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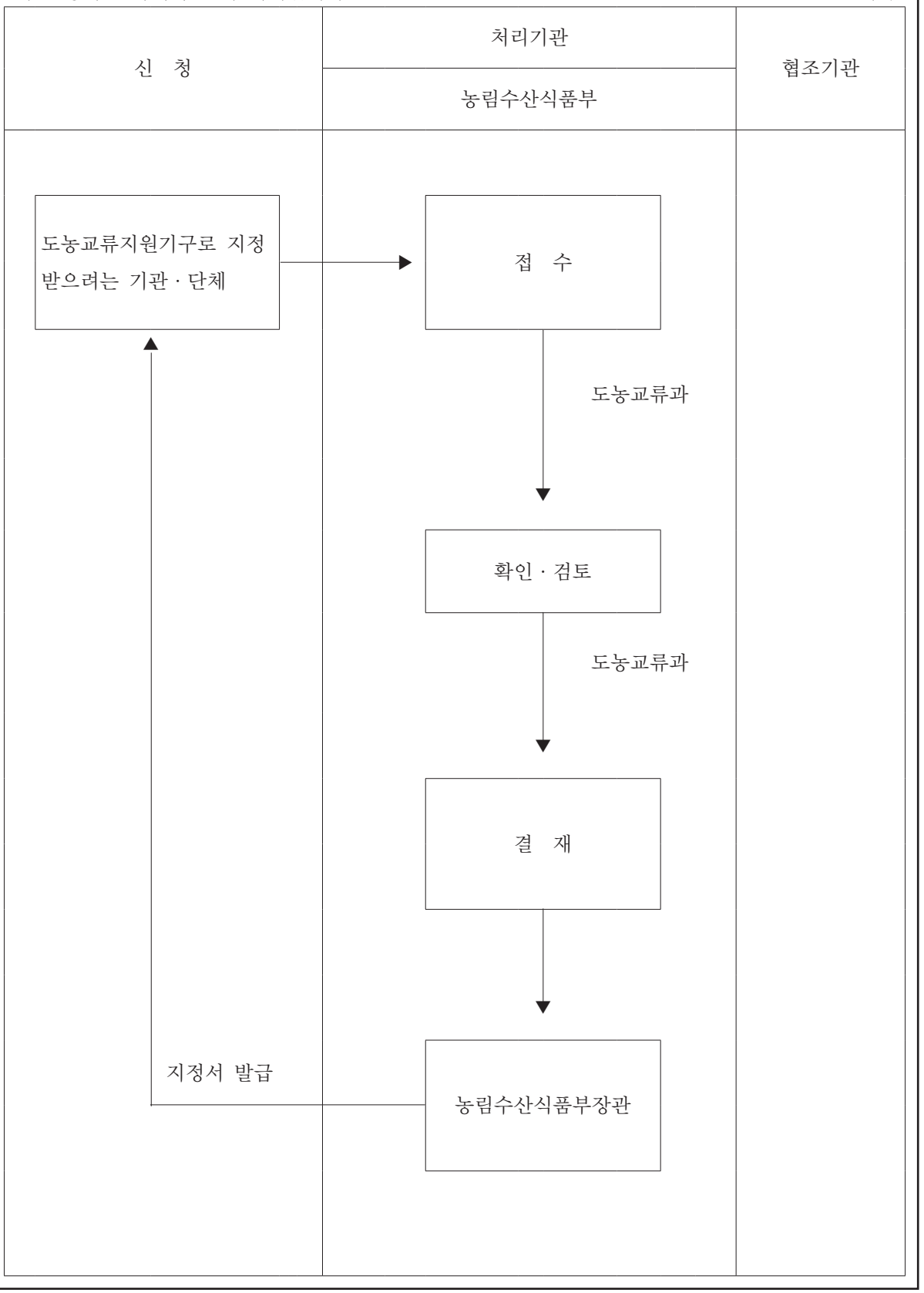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 | | | |
|---|---|---|---|
| ① 기관 · 단체명 | | 법인등록번호 | |
| ②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③ 소재지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5호서식]

| 홍보 · 조사 · 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처리기간<br>20일 |
|---|---|---|---|
| 기관 명칭 | |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대 표 자<br>성 명 | | 대 표 자<br>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 · 조사 · 연구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단체)장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210㎜×297㎜【일반용지 70g/㎡】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고,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민간 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75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20855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절차,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지도사·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절차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절차(제2조 및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등의 사업계획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

나.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및 인증기준(제9조, 제10조 및 별표 2)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신청절차, 인증기준과 인증서 발급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하려는 자와 농어촌체험지도사·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내주도록 함.

(3)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도농교류 관련법령, 마을경영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총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함.

(나)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함.

(다)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농어촌마을의 이해, 마을해설기법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절차 마련(제17조)

(1)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 고 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03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 고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 · 경영 학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 · 경영 학교법인

| 구 분 | 계 | 학교법인명(학교명) |
|---|---|---|
| 대 학 | 11 |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br>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br>대건학당(광주가톨릭대학교)<br>영남신학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br>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br>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br>승가학원(중앙승가대학교)<br>영산학원(영산선학대학교)<br>장로회신학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br>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학교)<br>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
| 대학원대학 | 9 | 계약학원(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br>베뢰아아카데미학원(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br>복음신학원(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br>성서침례학원(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br>순장학원(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br>순총학원(순복음대학원대학교)<br>원불교대학원(원불교대학원대학교)<br>종암중앙학원(개신대학원대학교)<br>중앙총신학원(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
| 각종학교 | 1 | 대전신학원(대전신학교) |
| 합 계 | | 21개 학교법인 |

## ⊙법무부고시제2008-3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 록 예 정 기 준 지 | 근거규정 |
|---|---|---|---|---|---|
| 임홍해 | 1984. 2.22 | 남 | 중 국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 231번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 231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정순남 | 1971. 8.21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64-4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곽인봉 | 1982.10.29 | 남 | 중 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31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서경선 | 1979.10.29 | 여 | 중 국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217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쑨주위엔 | 1986. 9.27 | 남 | 중 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21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해양 | 1985. 9.29 | 남 | 중 국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68-32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우찡쓰 | 1959. 8.28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장옥파 | 1967.12.18 | 여 | 중 국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213번지 | 국적법 제6조2항3호 |
| 김명월 | 1971. 3.25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00번지 7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쵠쑨찌 | 1963. 5. 7 | 여 | 중 국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54번지 솔빛마을 주공A 103-10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필문수 | 1979. 4. 6 | 여 | 중 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17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송봉화 | 1982. 5.12 | 여 | 중 국 | 대구 북구 산격동 1207-5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박창주 | 1942. 9. 7 | 여 | 중 국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연화리 19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이춘애 | 1959. 6.27 | 여 | 중 국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81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임금순 | 1953. 1. 7 | 여 | 중 국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316번지 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조춘매 | 1980. 9.23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허려나 | 1978.12. 7 | 여 | 중 국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368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 록 예 정 기 준 지 | 근거규정 |
|---|---|---|---|---|---|
| 김명자 | 1956. 7.14 | 여 | 중 국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383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지앙위지 | 1958.12. 4 | 여 | 중 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82-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지래나 | 1980. 4. 9 | 여 | 우 즈 베키스탄 |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104-5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황해연 | 1959. 1. 5 | 여 | 중 국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39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최국군 | 1983. 2. 4 | 남 | 중 국 | 부산 북구 구포동 610번지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지경화 | 1980. 2. 7 | 여 | 중 국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2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상운 | 1980.11.26 | 남 | 중 국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35-8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순옥 | 1946. 4.26 | 여 | 중 국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07 비취4동 217호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최초영 | 1980.12.23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 44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은화 | 1986. 3.29 | 여 | 중 국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63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영란 | 1985. 3.28 | 여 | 중 국 |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906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진테이청 | 1984. 8.12 | 남 | 중 국 |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361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남준 | 1980. 2.18 | 남 | 중 국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75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영애 | 1964. 1.24 | 여 | 중 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2-16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김 천 | 1987. 8.25 | 남 | 중 국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번지의18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청미 | 1984. 6.18 | 여 | 중 국 | 부산 금정구 남산동 112-2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지경호 | 1983. 1. 3 | 남 | 중 국 | 제주 제주시 연동 304-28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박향단 | 1984. 5. 5 | 여 | 중 국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북지리 261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하 기 | 1983. 8.23 | 여 | 중 국 | 부산 남구 문현동 744-13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 록 예 정 기 준 지 | 근거규정 |
|---|---|---|---|---|---|
| 마향화 | 1985. 4.25 | 여 | 중 국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1-2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홍미련 | 1983. 1. 9 | 여 | 중 국 | 강원 강릉시 노암동 279-66번지 12통3반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김미화 | 1983. 9.18 | 여 | 중 국 |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632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김 호 | 1985. 9.27 | 남 | 중 국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81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엄 광 | 1980.12.24 | 남 | 중 국 | 강원 삼척시 정하동 8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원원 | 1988. 8.23 | 남 | 중 국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김순월 | 1988. 3.14 | 여 | 중 국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72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김은재 | 1990. 7.28 | 남 | 중 국 |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75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김 일 | 1988. 1. 5 | 여 | 중 국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18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박 호 | 1990. 2. 8 | 남 | 중 국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265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김흠용 | 1988. 9.27 | 남 | 중 국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263-2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강애화 | 1991. 5. 7 | 여 | 중 국 |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923번지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서진우 | 1988. 8. 3 | 남 | 중 국 |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고성집 | 1993. 7. 5 | 남 | 중 국 | 서울 성동구 사근동 산 76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이상일 | 1978. 3. 6 | 남 | 중 국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35-8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황 매 | 1987. 5.25 | 여 | 중 국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90-9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법무부고시제2008-3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 록 예 정 기 준 지 | 근 거 규 정 |
|---|---|---|---|---|---|
| 첸전지 | 1975.11.28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15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홍란 | 1976. 6.18 | 여 | 중 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108번지 | 국적법 제6조2항4호 |
| 짱찐쑤 | 1973. 8.13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8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옥현 | 1970. 6.10 | 여 | 중 국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8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오명화 | 1966.12. 9 | 여 | 중 국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량리 358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우삐화 | 1972. 3.11 | 여 | 중 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리 263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쉬산이 | 1958. 8.13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70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한순희 | 1969.11.21 | 여 | 중 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93-1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장옥희 | 1960. 1.16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10-8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송춘자 | 1956.11. 2 | 여 | 중 국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54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손순옥 | 1970. 7. 6 | 여 | 중 국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49-7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장정옥 | 1960.12.30 | 여 | 중 국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678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미선 | 1959.10. 9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7-53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배란영 | 1971. 7.17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2번지 37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뭉흐아드야 | 1975. 3.30 | 여 | 몽 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18-9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문순자 | 1955. 4. 2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9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상슈윈 | 1962. 9.27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94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찐랜쭈 | 1960. 2.12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6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정미연 | 1983. 1.30 | 여 | 중 국 |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178-4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이경희 | 1970. 6. 1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69-9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한송금 | 1955. 7.15 | 여 | 중 국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50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 록 예 정 기 준 지 | 근 거 규 정 |
|---|---|---|---|---|---|
| 리옥춘 | 1958. 3. 1 | 여 | 중 국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749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유동옥 | 1974. 1.23 | 여 | 중 국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352-13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송밍화 | 1956. 7.11 | 여 | 중 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25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영화 | 1981. 9. 7 | 여 | 중 국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44-4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박미옥 | 1960.12. 1 | 여 | 중 국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144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빌마엘디에즈 | 1967. 8. 1 | 여 | 필 리 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140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순희 | 1963. 1.14 | 여 | 중 국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59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윤주녀 | 1946. 1.18 | 여 | 중 국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457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표펑화 | 1978. 2.13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8번지 4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이금선 | 1949. 8. 6 | 여 | 중 국 |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봉곡리 810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허금송 | 1977. 9.13 | 여 | 중 국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1735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방봉자 | 1948. 3. 6 | 여 | 중 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42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정순화 | 1975. 7. 5 | 여 | 중 국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5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정향란 | 1978. 6.16 | 여 | 중 국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424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박금오 | 1951. 3. 7 | 여 | 중 국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3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신진숙 | 1952. 2. 6 | 여 | 중 국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240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순화 | 1960. 5.28 | 여 | 중 국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90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지앙훼이슈 | 1958. 7. 3 | 여 | 중 국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93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기순 | 1971. 4. 8 | 여 | 중 국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110번지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전련화 | 1961.11.10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35-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 록 예 정 기 준 지 | 근 거 규 정 |
|---|---|---|---|---|---|
| 추이청저 | 1967. 2.10 | 남 | 중 국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추이잉메이 | 1978. 6.30 | 여 | 중 국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686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리진쉰 | 1953. 3.27 | 여 | 중 국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356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전설매 | 1981. 1.27 | 여 | 중 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30-3 | 국적법 제6조2항3호 |
| 박정애 | 1971. 9.27 | 여 | 중 국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1-3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이향련 | 1963. 6. 9 | 여 | 중 국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150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인밍쑤 | 1960. 7. 6 | 여 | 중 국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646-16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허향순 | 1962.11.10 | 여 | 중 국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286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박혜숙 | 1968.12.13 | 여 | 중 국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545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이혜숙 | 1957. 8.12 | 여 | 중 국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99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리 위 | 1980. 4.10 | 여 | 중 국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가화리 142-1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박영화 | 1957. 9. 8 | 여 | 중 국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6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이향미 | 1978.10.14 | 여 | 중 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6-3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영애 | 1958. 6.18 | 여 | 중 국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58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추이찡위 | 1960. 9.18 | 여 | 중 국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26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장복화 | 1963. 9. 9 | 여 | 중 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229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장메이화 | 1973. 2.27 | 여 | 중 국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18-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허옥란 | 1959. 2.20 | 여 | 중 국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317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최금화 | 1968. 3.23 | 여 | 중 국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수리 52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오춘숙 | 1958.12.18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820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향란 | 1962. 9.12 | 여 | 중 국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27-8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 록 예 정 기 준 지 | 근 거 규 정 |
|---|---|---|---|---|---|
| 떠 핑 | 1972. 3.30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0-70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리위싼 | 1953. 4.10 | 여 | 중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동 358-785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김복화 | 1982. 8.20 | 여 | 중 국 |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96 | 국적법 제6조2항1호 |

## ⊙노동부고시제2008-28호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26일

노 동부 장 관

###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 붐(이하 "사다리 붐"이라 한다)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조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웃트리거(Outrigger)"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지지하거나 수평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잭, 현가장치, 잠금장치 및 연장차축 등으로 구성된다.

동조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차대(Chassis)"란 엔진, 구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전기장치 및 보조장치(동력인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동조동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동력인출장치(Power Take Off)"라 함은 차량의 엔진을 원동기로 사용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서 차대 주행장치로부터 동력을 인출하여 유압펌프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동력의 연결과 끊음이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동조동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차량 제동장치"란 차량을 감속, 정지 또는 어떤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동조동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다리 붐”이란 외판 박스 빔형, 트러스트된 격자형, 개방된 U트러스형 등의 구조로 된 사다리 장치의 조립된 부분을 말한다.

동조동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복(Luffing)”이란 지면과의 수평면에서 사다리 붐 각의 변화를 말한다.

동조동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최대작업 높이”란 사다리 붐을 최대 기립각도로 전부 펼쳤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사다리 붐 최상단 지지점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동조동항 제1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상 · 하부 프레임 등의 구조부분, 턴 테이블, 아웃트리거, 기복장치, 사다리 조립체(사다리 붐, 사다리 가이드, 헤드 가이드, 연장 베드), 윈치, 운반구 조립체, 동력인출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조작장치, 와이어로프

제3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1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속** 재 료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재료기준) ①구조부분(강도계산에 있어서 하중이 걸리지 않는 것은 제외)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의 지지, 조립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강재
3.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에 적합한 강재
4.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강재
5.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 형재)에 적합한 강재

② 제1항에 관계없이 구조부분의 재료를 내식 알미늄합금 압출형재, 내식 알미늄 합금판 등의 재료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은 구조부분의 부재로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1항의 재료 중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

1. 종탄성 계수 : 21,000(kgf/㎟) {206,000N/㎟)
2. 횡탄성 계수 : 8,100(kgf/㎟) {79,000N/㎟)
3. 포 와 송 비 : 0.3
4. 선팽창 계수 : 0.000012

⑤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에 적합한 강재
3. KS D 3752(기계 구조용 탄소강재)에 적합한 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6. KS D 4104(고망간 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7. KS D 4301(회 주철품)에 적합한 강재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에 적합한 강재
9.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제2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속** 허용응력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재료의 허용응력) ①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굽힘응력의 값은 각각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sta=se/1.5 sbac = sta/1.15 sca = sta/1.15

t = sta/v3 sbat = sta sda = 1.4sta

이 식에서 sta, se, sca, sbat, sbac, t 및 sda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sta : 허용인장응력(kgf/㎟) {N/㎟}

se : 재료의 항복점(kgf/㎟) {N/㎟}

sca : 허용압축응력(kgf/㎟) {N/㎟}

sbat :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kgf/㎟) {N/㎟}

sbac :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kgf/㎟) {N/㎟}

t : 허용전단응력(kgf/㎟) {N/㎟}

sda : 허용지지압응력(kgf/㎟) {N/㎟}

②제1항 재료의 허용좌굴응력 값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lambda$<20의 경우 fk=fc

20 =$\lambda$= 200의 경우 fk=(1/$\omega$)fc

여기에서 fk : 허용좌굴응력(kgf/㎟) {N/㎟}

fc : 허용압축응력(kgf/㎟) {N/㎟}

$\omega$ : 별표 1, 2에 정하는 좌굴계수

$\lambda$ : 유효 세장비( = 부재길이/부재단면의 최소회전반경)

③제1항의 재료 이외의 재료 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허용굽힘응력 및 허용좌굴응력(이하 '허용응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는 해당 규격으로 정하는 기계적 성질에 따라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값
2. 한국산업규격(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정한 인장시험을 행하는 재료는 해당 시험의 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값
3. 인장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종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강재의 허용응력 값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용접부의 허용응력)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허용좌굴응력은 제외)은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값(용접 가공의 방법이 필렛용접일 때에는 허용전단응력의 값)에 다음〈표 2-1〉의 용접가공방법과 강재의 종류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표에서 A는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강재 중에서 특히 용접성이 우수한 것, B는 A이외의 강재를 말한다.

〈표 2-1〉

| 용 접 가 공 방 법 | | 맞 대 기 용 접 | | 필 렛 용 접 | |
|---|---|---|---|---|---|
| 강 재 의 종 류 | | A | B | A | B |
| 계수단위 : (%) | 허용인장응력 | 84.0 | 80.0 | 84.0 | 80.0 |
| | 허용압축응력 | 94.5 | 90.0 | 84.0 | 80.0 |
| | 허용굽힘응력 | 84.0 | 80.0 | - | - |
| | 허용전단응력 | 84.0 | 80.0 | 84.0 | 80.0 |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허용응력의 범위) 제55조의4 중 허용응력의 값은 제55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산에서 각각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할증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3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속** 강도

제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6**(하중의 종류)구조부분에 부가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하중
2. 수평하중
3. 풍하중

제5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7**(풍하중의 계산) ①제55조의6제3호의 풍하중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W=qCA

여기에서 W : 풍하중(kgf){N}

q : 속도압(kgf/㎡){N/㎡}

C : 풍력계수

A : 압력을 받는 면적(㎡)

②제1항 속도압의 값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q = 8.5 ×(h의root4제곱) (kgf/㎡) 또는 83.3 ×(h의root4제곱){N/㎡}

여기에서 q : 속도압 (kgf/㎡){N/㎡}

h : 지면으로부터 바람받는 리프트 면까지의 높이. 다만, 그 높이가 16m 미만일 때에는 16으로 한다.

③제1항의 풍력계수의 값은 풍동시험에 의할 때를 제외하고는〈표 3-1〉에 정한 값으로 한다.

〈표 3-1〉

| 바람을 받는 면의 종류 | 충 실 률 | 풍력계수(C) | 비 고 |
|---|---|---|---|
| 평면래티스 또는 평면 트러스로 구성된 면 | 0.1 미만 | 2.0 | 충실률의 값은 바람을 받는 겉보기면적을 당해 바람받는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
| | 0.1이상~0.3 미만 | 1.8 | |
| | 0.3이상~0.9 미만 | 1.6 | |
| | 0.9 이상 | 2.0 | |
| 평면으로 구성된 구조물의 면 | - | 1.2 | |
| 와이어로프의 면 | - | 1.2 | |

④제1항의 압력을 받는 면적은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의 직각면에 대한 투영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바람을 받는 면이 바람방향에 대하여 2면 이상 겹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바람받는 면이 2면으로 겹칠 때에는 바람방향에 대한 제1면의 투영면적에 바람방향에 대한 제2면 중 제1면과 겹친 부분의 투영면적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면적과 바람방향에 대한 제2면 중 제1면과 겹치지 않는 면의 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2. 바람받는 면이 3면 이상 겹칠 때에는 제1호의 면적에 바람방향에 대하여 제3면 이하로 되는 면 중 전방의 면과 겹치는 면의 투영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 및 바람방향에 대해 3면 이하가 되는 면 중 전방에 있는 면과 겹치지 않는 부분의 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제5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강도계산) ①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계산의 합이 각각 제55조의3에서 정한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및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의 합
2. 정하중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동하중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동하중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풍하중의 합

②제1항에 따른 응력 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하여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③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정하중 계수, 동하중 계수는 각각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종류, 하중률, 운전시간율, 충격 또는 구조부분의 형상에 따른 값으로 한다.

제5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9**(안정도) ①자립고(Free Standing) 상태에서 모든 사다리 붐의 펼침 위치에 따라 리프트에 작용하는 안정도 모멘트 값은 전도 모멘트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전도 및 안정도 모멘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최대 전도 모멘트와 이에 상응하는 안정도 모멘트는 가장 불리한 전도선(Tipping Line)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전도선은 KS B ISO 4305(이동식 크레인-안정성 판단)참조)
2. 차대의 최대 허용경사에서 사다리 붐을 가장 불리하게 연장 또는 축소한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과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가장 불리하게 하중과 힘이 조합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리프트의 설치에 있어서는 부정확성으로 인한 허용오차 0.5°를 차대의 최대허용 경사각에 더하여야 한다.
4. 전도 및 안정도 모멘트를 계산할 때에는 부품 제조시 허용오차, 사다리 붐 연결부위의 틈새, 힘의 작용에 의한 탄성 변형, 작업위치에서 리프트 카 공기 타이어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 한쪽 타이어의 파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4호에서 탄성변형은 실험으로 정할 수도 있다.
6. 전도 또는 안정도 모멘트를 일으키는 구조물의 중량과 정격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힘은 계수 1.0을 곱하고, 수직하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사다리 붐의 작동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성력은 계수 0.1을 곱하고 가장 큰 전도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제6호에서 관성력에 관련된 가속도 및 감속도를 측정하여 입증하는 경우 0.1 이하의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0**(강성의 유지) 제55조의8에 따른다.

제4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속** 구조부분

제5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1**(사다리 붐 등)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다리 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사다리 붐은 운반구를 제7호의 작동속도로 운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질 것.
2. 사다리 붐을 턴테이블에 고정시켜 주는 사다리 뒷기둥, 사다리 가이드, 헤드 가이드, 연장 베드 등은 흔들림이나 틀어짐 방지를 위하여 견고히 지지되어 있을 것.
3. 사다리 붐과 사다리 붐의 겹침부의 길이는 최대작업높이가 3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다리 붐 길이의 100분의 20 이상, 3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이상이 될 것. 다만, 제55조의8에 따른 강도계산 값 이상일 것.
4.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사다리 붐의 기복 · 신축 · 회전운동을 할 수 있을 것.
5. 사다리 붐은 전도 방지를 위하여 축소되거나 굽혀지는 운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아웃트리거가 최대전개위치에서만 리프트가 작동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운반구가 두개 이상의 사다리 붐에 의하여 지탱되는 경우 사다리 붐에는 운반구를 동시에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7. 최대 작동 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다리 붐의 승강 : 0.4 m/s
   나. 선회 : 0.7 m/s (사다리 붐 바깥 끝 부분에서의 수평 속도)
8. 사다리 붐의 끝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건물 등에 견고히 지지할 것
   가. 사다리는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미끄러지거나 뒤틀리지 않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직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추가 설치하는 보조받침대는 측면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는 구조일 것
   다. 사다리 붐은 건물에 지지할 경우 사다리 붐 끝단에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 및 측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9. 사다리 붐의 차대 연결부는 사다리 붐에 가해지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한 구조일 것
10. 사다리 붐 구동시스템은 사다리 붐의 불시 작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
11.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또는 벨트가 파단(破斷)될 경우 사다리 붐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될 것
12. 수동구동시스템은 핸들의 반발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3. 동력식 구동장치와 수동식 구동장치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구동장치가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인터록시스템을(Interlock) 갖출 것(구동장치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동일)

제55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2**(턴 테이블)턴 테이블은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턴 테이블은 부가되는 모든 구조하중의 최소 100분의 150 이상 능력의 강도와 구조로 설치할 것.
2. 유압모터에 의한 유성기어타입, 웜 기어타임 등으로 회전되며 자동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웜 기어타입의 경우 자동브레이크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제5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3**(아웃트리거) 아웃트리거는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슬라이드 및 잭 장치는 유압에 의하여 자동 ·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것.
2. 아웃트리거 조작대에는 전 · 후 · 좌 · 우 수평을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크기의 수평계를 설치할 것.
3. 수평계는 차체와 평행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수평정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차체 진동이나 충격에 흔들리거나 떨림이 없을 것.
4. 전 · 후 · 좌 · 우 각각의 아웃트리거는 부가되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100분의 150 이상 지지능력을 가질 것.
5. 아웃트리거가 접히거나 펼쳐졌을 때 유압호스 및 전기장치에 의한 배선 등이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져야 하며, 원활히 수납되는 구조일 것.
6. 아웃트리거 설치완료 후 사다리 작동시 유압계통이나 유압파이프 등이 파손되는 경우 잭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7.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최대 경사면에서 작동할 때 최대허용경사 내에서 차대의 수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8.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발이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 포함)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9. 한정된 동작범위에서 아웃트리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10. 동력구동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경우, 사다리 붐 및 운반대가 운송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웃트리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할 것.
11. 아웃트리거가 불시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12. 아웃트리거 또는 아웃트리거의 발은 최소한 10° 경사의 불균형 지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일 것.
13. 기계적인 정지장치에 의하여 아웃트리거의 움직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유압 또는 공압 실린더 끝단에 기계적인 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4. 잠금 핀은 풀리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제55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4**(운반구) 운반구는 사다리 붐과 균형이 유지되고 중량물 등의 취급에 쉽게 변형되지 않는 강도와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운반구내의 화물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반구 난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난간을 펼쳐서 작업할 경우에는 운반물의 추락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운반구의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는 경우 운반구의 자동낙하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운반구의 수평은 작동 중의 하중과 힘에 의하거나 사다리 붐의 설치위치에도 불구하고 ±5° 이내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5. 운반구의 이탈방지용 가이드롤러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치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다만 운반구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55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5**(구멍가공 및 볼트 등의 조임)구멍가공 및 볼트 등의 조임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의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6**(용접)구조부의 용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강재 사용부분의 용접방법은 아크(Arc)용접으로 하며,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그 밖의 같은 재질의 모재에 대해서는 아르곤 아크 (Argon Arc)용접으로 제작할 것.

2. 모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용접봉을 사용할 것.

제5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속** 기계부분

제55조의1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7**(동력인출장치 등) ①동력인출장치는 펌프전동장치가 작동되고 차대 변속장치 중립에서 동력전달장치가 구동되어야 하며, 별도로 수동식(공압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동력인출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수동 변속장치가 설치된 경우 변속장치에 설치된 동력인출장치, 엔진 앞의 크랭크축 동력인출장치, 또는 엔진 플라이휠 동력인출장치로 구동되고 운전실 내의 펌프와 연결된 표시등 또는 표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펌프 작동중”임을 조작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제55조의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8**(윈치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 ①윈치에는 운반구 및 사다리 붐의 움직임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동 토크(회전력)의 값은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의 물건을 실었을 때에 해당 윈치의 토크 값 중 최대값의 1.5배 이상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이 V벨트 등으로 구동되는 것인 때에는 드럼을 직접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윈치의 토크 값 계산할 때에는 윈치의 저항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윈치에 100분의 75 이하의 효율을 가진 웜,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기어기구의 저항에 의하여 생기는 토크(회전력) 값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9**(도르래 등의 설치) ①도르래 등은 사용 중 끌려가거나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②도르래 지지대는 용접 또는 풀림방지용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③도르래 피치원 지름과 해당 도르래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는 14(와이어로프 두께가 8mm 이상인 경우) 또는 16(와이어로프 두께가 8mm 미만인 경우) 이상이어야 한다.

제55조의2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0**(로프 드럼의 크기)윈치 등에서 사용되는 로프드럼의 피치원 지름과 해당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는 20 이상으로 한다.

제55조의2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1**(드럼에 감기는 로프의 각도)제28조에 따른다.

제55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2**(연결부의 고정)①와이어로프와 윈치의 드럼 또는 운반구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은 배빗메탈 고정, 압축고정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부의 강도는 와이어로프 최소파단(破斷) 강도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②안전한 여유 감김이 있는 드럼고정을 제외하고 클램프 고정방법을 하중지지용 와이어로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의2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3**(회전부 등의 방호장치)제30조에 따른다.

제55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4**(볼트 등의 조임)제31조에 따른다.

제55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5**(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①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표 6-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와이어로프의 최소 직경은 6mm 이상일 것

〈표 6-1〉

| 종 류 | 안 전 율 |
|---|---|
| 권상용 와이어로프 | 5 이상 |
| (유도, 보조)가이로프 | 4 이상 |

②와이어로프는 운반구 및 사다리 붐의 위치가 최대높이가 되었을 때 각각의 해당 윈치의 드럼에 두 바퀴 이상의 여유감김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거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때 로프의 자중 또는 이것이 통하는 도르래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6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속** 조작장치

제55조의2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6**(콘트롤러) ①콘트롤러에는 제어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 되지 않도록 할 것
2.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 설비용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하거나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 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로 할 것
4. 유선 및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시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 동시조작에 의한 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5. 각각의 제어기에는 제어 대상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표시가 되어 있을 것
6. 지정된 제어기 이외의 신호에 의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7. 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자동으로 정지 하거나 위험한 작동을 유발시키지 않는 구조일 것. 단, 가목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를 감지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
8.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통제되도록 할 것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10. 무선원격제어기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이 설치 될 것
11. 무선원격제어기의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일 것

제55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7**(펜던트 스위치) ①펜던트 스위치에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 종류에 따른 누름버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펜던트 스위치의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제3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1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속** 방호장치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방호조치 등)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력에 의하여 사다리 붐이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회전방지장치

2. 유압 파이프 등이 파손되는 경우 각 유압부품의 유압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 등의 안전장치
3. 아웃트리거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될 때까지 사다리 지지대로부터 사다리 붐의 작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 및 경보장치.
4. 아웃트리거 잭의 하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및 경보장치.
5. 사다리 붐을 최대로 펼쳤을 때 사용한계 도달 직전 자동감속 및 자동정지장치
6. 사다리 붐이나 운반구가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비상정지장치) ①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복귀 되는 구조로서 작동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권과방지장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권과방지장치(卷過防止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반구가 사다리의 하부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것
2. 운반구가 과상승시 사다리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정지할 것
3.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4. 조정이나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6. 물, 먼지,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제7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과부하방지장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過負荷防止裝置)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성능검정 합격품을 부착할 것
2. 적재하중의 1.1배 초과하중 적재시 경보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봉인된 제품일 것

제2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속** 주요구조

제7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6**(사다리 붐 등) ①사다리 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사다리 붐 등의 체결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高張力鋼)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크너트 등으로 풀림방지 조치를 할 것
2. 사다리 붐은 평행도가 유지되고 운반구와의 균형이 맞을 것.
3. 사다리 붐 연결부 좌우 어긋남을 1.5㎜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사다리 붐의 마모에 대한 사용한도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사다리 붐 등에는 운반구 운전에 불필요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제7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7**(운반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운반구 조립용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 조치를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화물의 낙하방지울은 화물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운반구 바닥면은 자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틈새가 없도록 하거나 낙하방지조치를 할 것
4.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의 마모한도는 원래 규격두께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하며 손상되거나 이탈되지 않을 것
5.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와 접촉하는 사다리 가이드 측면과 운반구의 가이드롤러 사이의 간격은 3㎜ 미만일 것

제7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8**(도르래 등) 도르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2.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3. 도르래 홈은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4. 부시 및 암은 마모, 균열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5. 브라켓, 키, 핀 등은 파손, 변형 및 휨이 없을 것

제7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9**(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소선이 1꼬임(1피치내)에서 소선수의 100분의 10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100분의 7 이하일 것
3. 킹크가 없을 것
4. 도르래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5. 급유상태는 양호할 것
6. 화물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한 마모, 부식, 변형 등이 없을 것

제7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10**(전기장치 등) ①기본적인 사다리 붐과 각종 부수장치 등은 전기동력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차대의 전기시스템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②배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③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전기배선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속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속** 유지관리 등

제7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11**(작동상태) 정격하중하에서 3회를 작동시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승, 하강작동이 원활할 것
2. 브레이크, 클러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3. 안전장치 등의 작동이 정확할 것
4. 구조부의 변형이 없을 것
5. 이상음, 이상진동이 없을 것

제7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12**(유지관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설계 또는 설치 당시의 안전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1.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지 말 것
2.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후 사용하지 말 것
3. 지정된 조작자 이외에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조작하지 못하게 할 것
4. 해당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적재하중, 정격속도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 할 것
5. 그 밖에 해당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상태와 현장실정에 적합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3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구조부분의 사용재료)제55조의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검사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강도계산)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10까지 및 제55조의25의 규정에 따른 강도계산과 안전율이 적합한지 검사한다.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5**(사다리 붐 등의 구조) 사다리 붐등의 구조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사다리 붐 등의 구조는 제55조의11 및 제73조의6
2. 턴 테이블의 구조는 제55조의12
3. 아웃트리거의 구조는 제55조의13
4. 운반구의 구조는 제55조의14 및 제73조의7
5. 볼트 등의 풀림방지조치는 제55조의15 및 제55조의24
6. 용접 조치는 제55조의16

제8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6**(기계장치) 기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동력인출장치 등의 설치는 제55조의17

2. 윈치 및 윈치의 제동장치 등은 제55조의18

3. 도르래의 설치 등은 제55조의19 및 제73조의8

4. 로프 드럼의 크기는 제55조의20

5. 드럼에 감기는 로프의 각도는 제55조의21

6. 연결부의 고정은 제55조의22

7. 회전부 등의 방호조치는 제55조의23

8.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은 제55조의25 및 제73조의9

제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7**(조작장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조작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콘트롤러는 제55조의26

2. 펜던트스위치는 제55조의27

제8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8**(방호장치 등의 설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호장치등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제73조의2에 따른 방호조치

2. 제73조의3에 따른 비상정지장치

3. 제73조의4에 따른 권과방지장치

4. 제73조의5에 따른 과부하방지장치

제8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9**(전기장치 등) 전기장치 등은 제73조의10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차량의 주행부분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시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완성검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제품 및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품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제55조의11 제3호·제5호, 제55조의13 제8호·제10호·제12호, 제55조의14 제2호, 제55조의16 제2호, 제55조의17 제2항·제3항, 제55조의19 제3항, 제55조의20, 제55조의21, 제55조의26 제11호, 제55조의27, 제73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3조의7 제5호, 제73조의10 제3항을 제외한다.

별표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검 사 항 목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비 고 |
|---|---|---|---|
| 1. 사용부재의 재질 및 규격 | | | 제55조의2 |
| 1) 사다리 붐 등 주요구조부 | ○ | | |
| 2) 연결볼트 및 기초볼트 | ○ | | |
| 2. 외관 및 설치상태 | | | |
| 1) 볼트의 체결상태 및 변형 유무 | ○ | ○ | 제55조의15, 제55조의16 |
| 2) 적재하중 표시 | ○ | ○ | 제73조의12 |
| 3. 구조 | | | |
| 1) 사다리 붐등의 구조 | ○ | ○ | 제55조의11, 제73조의6 |
| 2) 아웃트리거의 구조 | ○ | ○ | 제55조의13 |
| 3) 운반구의 구조 | ○ | ○ | 제55조의14, 제73조의7 |
| 4) 주요 구조부 등의 설계서류와 적합 여부 | ○ | | |
| 4. 기계장치 | | | |
| 1) 브레이크 및 감속장치 | ○ | ○ | 제55조의12 |
| 2) 동력인출장치 | ○ | ○ | 제55조의17 |
| 3) 드럼 및 도르래의 설치 및 마모상태 | ○ | ○ | 제55조의18 내지 제55조의21, 제73조의8 |
| 4) 와이어로프의 고정 및 변형 상태 | ○ | ○ | 제55조의24, 제73조의9 |
| 5. 조작장치 | | | |
| 1) 콘트롤러 | ○ | ○ | 제55조의26 |
| 2) 펜던트스위치 | ○ | ○ | 제55조의27 |
| 6. 방호장치 설치여부 및 상태 | | | |
| 1) 회전부 등의 방호조치 | ○ | ○ | 제55조의23 |
| 2) 방호조치 | ○ | ○ | 제73조의2 |
| 3) 안전밸브 등 유압용 안전장치 | ○ | ○ | 제73조의2 |
| 4) 낙하방지장치 | ○ | ○ | 제55조의14 |
| 5) 비상정지장치 | ○ | ○ | 제73조의3 |
| 6) 권과방지장치 | ○ | ○ | 제73조의4 |
| 7) 과부하방지장치 | ○ | ○ | 제73조의5 |
| 7. 작동상태(적재하중에서) | ○ | ○ | 제73조의11 |
| 1) 상승, 하강 동작상태 | ○ | ○ | |
| 2) 이상진동 및 이상음 발생여부 | ○ | ○ | |
| 3) 방호장치 작동상태 | | | |
| 8. 전기장치 | ○ | ○ | 제73조의10 |
| 1) 배선상태 | ○ | ○ | |
| 2) 제어반 상태 | ○ | ○ | |
| 3) 조명장치 | | | |

## ⊙국세청고시제2008-24호

축산업 ·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 · 임 · 어업용면세석유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각종서식 개정 고시

축산업 ·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 · 임 · 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각종서식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국 세 청 장

제명 "축산업 · 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및농 · 임 · 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공급확인서발급절차및면세유류구입권등의각종서식"을 "축산업 ·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으로 한다.

제1장 중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제2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6조, 제17조 제5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7조에서"를 "제2조 제6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로 하고,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각종"을 삭제한다.

제2장 중 "제2장 축산업 ·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제3호의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6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제1항의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2항의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호의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2호의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3호의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별지 제3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명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을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6항"으로,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6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찰청고시제2008-2호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경찰청고시 제2005-4호, 2005. 10. 1.)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 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 ·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 · 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 서울 · 부산 양방향 06 : 00~22 : 00

나. 토요일, 공휴일 : 서울 · 부산 양방향 09 : 00~22 : 00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 ·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 · 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6 : 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 : 00까지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 · 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 : 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 : 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평일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 ⊙병무청고시제2008-2호

관보 2008년 6월 10일(화)자 병무청 고시 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병 무 청 장

2008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09년도 인원배정 기준 정정

3. 2009년도 인력지원 규모

≪정정 전≫

| 구 분 | 계 | 연 구 기 관 | 산 업 체 |
|---|---|---|---|
| 계 | 12,400명 | 2,500명 | 9,900명 |
| 현 역 자원 | 7,000명 | 2,500명 | 4,500명 |
| 보충역 자원 | 5,400명 | | 5,400명 |

≪정정 후≫

| 구 분 | 계 | 연구기관 | 산업체 | 승선근무예비역 |
|---|---|---|---|---|
| 계 | 12,400명 | 2,500명 | 9,100명 | 800 |
| 현 역 자원 | 7,000명 | 2,500명 | 3,700명 | 800 |
| 보충역 자원 | 5,400명 | | 5,400명 | |

6. 2009년도 지정업체 인원배정 기준

≪정정 전≫

다. 산업체

-해운 · 수산업, 방위산업분야

•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08년도 편입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정정 후≫

다. 산업체

-해운 · 수산업, 방위산업분야

•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08년도 편입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단, 해운 · 수산업은 보충역에 한하여 배정

≪추가 ≫

8. 2009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기준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나. 인원배정 절차 등

○인원배정 절차

| | | | | | | |
|---|---|---|---|---|---|---|
| 해운 · 수산업체 | ⇨ | 국토해양부 | ⇨ | 병무청 | ⇨ | 해운 · 수산업체 |
| 소요인원 제 출 | '08.6월중 | 소요인원 통 보 | '08.7월중 | 인원배정 결 정 | '08.10~11월 중 | 인원배정결과접수 |

○신청기한 : 2008년 6월 30일까지

○신청대상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수산업 분야 :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접수기관 : 국토해양부

| 분 야 별 | 접 수 기 관 | 접 수 |
|---|---|---|
| • 해운업 분야<br>• 수산업 분야 | 국토해양부 | • 한국선주협회<br>• 한국선박관리업협회<br>• 한국해운조합<br>• 한국원양산업협회 |

다. 인원배정 방향

•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운 · 수산분야 업체별 소요신청 인원과 업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정

라. 향후 추진 일정

○인원배정 소요신청 접수

-해운 · 수산업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 : '08년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병무청에 통보 : '08년 7월말까지

○인원배정 결정 및 통보 : '08년 10~11월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0호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7호(2008. 1. 17.)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한 낙동강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 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14일~2010년 1월 29일
2. 사업의 명칭 : 황강 합천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 : 황강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소재지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 일련번호 | 지번 | | 지목 | | 면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
|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현실 | 당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 1 | 산105-2 | 산105-3 | 임 | 임 | 1,356.0 | 394.0 | 국(농림수산식품부) | | | | |
| 2 | 9-1 | 9-1 | 답 | 답 | 138.0 | 138.0 | 김영호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3-4 금호APT 101호 | | | |
| 3 | 9-2 | 9-3 | 답 | 전 | 2,138.0 | 542.0 | 김영호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3-4 금호APT 101호 | | | |
| 4 | 10 | 10-1 | 답 | 전 | 1,074.0 | 151.0 | 박삼숙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10 | | | |

| 일련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번호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현실 | 당 초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종류 |
| 5 | 11 | 11-1 | 답 | 전 | 2,024.0 | 236.0 | 김광길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27 | | | |
| 6 | 12 | 12-1 | 답 | 전 | 1,157.0 | 132×2292/6366<br>132×1358/6366<br>132×1358/6366<br>132×1358/6366 | 조임선외(3)<br>(김희곤)<br>(김성운)<br>(김호동)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00<br>(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32)<br>(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51)<br>(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51) | | | |
| 7 | 13 | 13-1 | 답 | 전 | 1,253.0 | 131.0 | 조임선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00 | | | |
| 8 | 14-1 | 14-7 | 답 | 전 | 1,037.0 | 101.0 | 정해산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28 | | | |
| 9 | 14-2 | 14-8 | 답 | 전 | 568.0 | 55.0 | 하재규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23 | | | |
| 10 | 14-3 | 14-9 | 답 | 전 | 1,197.0 | 108.0 | 하종용 | 대구 북구 침산동 479-31 | | | |
| 11 | 14-4 | 14-10 | 답 | 전 | 794.0 | 72.0 | 안원재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00 | | | |
| 12 | 14-5 | 14-11 | 답 | 전 | 2,376.0 | 190.0 | 박이식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51-3 | 국 | 서대구 세무서 | 압 류 |
| 13 | 286 | 286-2 | 구 | 구 | 36,395.0 | 738.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일련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번호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현실 | 당 초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종류 |
| 14 | 56-3 | 56-4 | 답 | 전 | 287.0 | 1.0 | 한국농촌공사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 | | |
| 15 | 57-1 | 57-3 | 답 | 전 | 515.0 | 15.0 | 한국농촌공사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 | | |
| 16 | 57 | 57-2 | 답 | 전 | 3,386.0 | 345.0 | 김학대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41 | | | |
| 17 | 58 | 58-1 | 답 | 전 | 2,897.0 | 423.0 | 김희곤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32 | | | |
| 18 | 59 | 59-1 | 답 | 전 | 1,493.0 | 348.0 | 홍증식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28 | | | |
| 19 | 60 | 60-1 | 답 | 전 | 1,269.0 | 658.0 | 김광길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27 | | | |
| 20 | 61 | 61-1 | 도 | 도 | 971.0 | 191.0 | 국(농림<br>수산식품부) | | | | |
| 21 | 67 | 67-1 | 답 | 전 | 3,206.0 | 18.0 | 김우동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00 | | | |
| 22 | 66 | 66-1 | 답 | 전 | 2,473.0 | 678.0 | 하원수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23 | | | |
| 23 | 286 | 286-3 | 구 | 구 | 36,395.0 | 755.0 | 국(농림<br>수산식품부) | | | | |
| 24 | 97-1 | 97-3 | 답 | 답 | 1,343.0 | 87.0 | 안현성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br>주공APT 458동504호 | | | |
| 25 | 97-2 | 97-2 | 답 | 전 | 1,243.0 | 1243×1/2<br>1243×1/2 | 김규주외(1)<br>(김계운)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41<br>(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41) | 손병문<br>김영희 | 대구 서구 비산<br>930-10(7/3) | 강재경<br>매신청 |

| 일련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번호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현실 | 당 초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종류 |
| 26 | 286 | 286-4 | 구 | 구 | 36,395.0 | 304.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27 | 171 | 171-1 | 답 | 전 | 3,028.0 | 5.0 | 이호수 |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852-1 | | | |
| 28 | 172-1 | 172-3 | 답 | 전 | 1,475.0 | 401.0 | 안영목 |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12-28 | | | |
| 29 | 382 | 382-1 | 도 | 도 | 750.0 | 285.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30 | 172-2 | 172-2 | 답 | 전 | 250.0 | 250.0 | 안영목 |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12-28 | | | |
| 31 | 172-1 | 172-4 | 답 | 전 | 1,475.0 | 494.0 | 안영목 |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12-28 | | | |
| 32 | 173 | 173-1 | 도 | 도 | 1,215.0 | 12.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33 | 198 | 198-1 | 도 | 도 | 5,475.0 | 186.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34 | 286 | 286-5 | 구 | 구 | 36,395.0 | 2,268.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35 | 174 | 174-3 | 답 | 답 | 784.0 | 184.0 | 장결순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453 | | | |
| 36 | 174-2 | 174-4 | 답 | 답 | 105.0 | 1.0 | 김윤기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453 | | | |
| 37 | 229 | 229-1 | 답 | 답 | 401.0 | 53.0 | 이호수 |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852-1 | | | |

| 일련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번호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현실 | 당 초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종류 |
| 38 | 230 | 230-1 | 답 | 답 | 2,740.0 | 508.0 | 장결순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453 | | | |
| 39 | 231 | 231-1 | 답 | 답 | 492.0 | 130.0 | 주식회사 케이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 | |
| 40 | 191 | 191-1 | 도 | 도 | 1,610.0 | 100.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41 | 232 | 232-1 | 답 | 답 | 1,638.0 | 1160×265/365<br>1160×100/365 | 김희준외(1)<br>(공외갑)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85<br>(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475) | | | |
| 42 | 234 | 234-3 | 답 | 답 | 1,460.0 | 18.0 | 김규영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91 | | | |
| 43 | 296 | 296-1 | 답 | 답 | 1,927.0 | 877.0 | 박근용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11 | | | |
| 44 | 295 | 295-1 | 답 | 전 | 1,006.0 | 8.0 | 박문성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57 | | | |
| 45 | 271 | 271-1 | 도 | 도 | 951.0 | 157.0 | 국(농림 수산식품부) | | | | |
| 46 | 297 | 297 | 답 | 답 | 1,471.0 | 1,471.0 | 박종택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42 | | | |
| 47 | 298 | 298-3 | 답 | 답 | 1,966.0 | 105.0 | 김상욱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30 | 린나이 코리아㈜ | 인천 부평 십정 560-2 | 근저당 설정 |

| 일련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번호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현실 | 당 초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종류 |
| 48 | 286 | 286-6 | 구 | 구 | 36,395.0 | 144.0 | 국(농림<br>수산식품부) | | | | |
| 49 | 산105-1 | 산105-1 | 제 | 제 | 424.0 | 424.0 | 국(국토해양부) | | | | |
| 50 | 324-1 | 324-1 | 제 | 제 | 4,048.0 | 4,048.0 | 국(국토해양부) | | | | |
| 51 | 729-2 | 729-3 | 구 | 구 | 1,170.0 | 318.0 | 국(농림<br>수산식품부) | | | | |
| 52 | 284-3 | 284-3 | 제 | 제 | 4,632.0 | 4,632.0 | 국(국토해양부) | | | | |
| 53 | 722-4 | 722-5 | 구 | 구 | 697.0 | 124.0 | 국(농림<br>수산식품부) | | | | |
| 54 | 265-1 | 265-1 | 제 | 제 | 4,375.0 | 4,375.0 | 국(국토해양부) | | | | |
| 55 | 272-1 | 272-1 | 제 | 제 | 109.0 | 109×1/2<br>109×1/2 | 김규주외(1)<br>(김계운)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41<br>(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41) | 손병문<br>김영희 | 대구 서구 비산<br>930-10(7/3) | 강재경<br>매신청 |
| 56 | 274-1 | 274-1 | 제 | 제 | 152.0 | 152.0 | 국(국토해양부) | | | | |
| 57 | 267-3 | 267-3 | 제 | 제 | 11.0 | 11.0 | 국(국토해양부) | | | | |
| 58 | 724 | 724-2 | 도 | 도 | 265.0 | 71.0 | 국(국토해양부) | | | | |

| 일련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번호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현실 | 당 초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종류 |
| 59 | 254-1 | 254-1 | 제 | 제 | 626.0 | 626.0 | 국(국토해양부) | | | | |
| 60 | 723-2 | 723-3 | 구 | 구 | 1,054.0 | 125.0 | 국(농림<br>수산식품부) | | | | |
| 61 | 79-3 | 79-3 | 제 | 제 | 10,134.0 | 10,134.0 | 국<br>(국토해양부) | | | | |
| 62 | 727-3 | 727-4 | 구 | 구 | 494.0 | 154.0 | 국(농림<br>수산식품부) | | | | |
| 63 | 17 | 17 | 천 | 천 | 424,332.0 | 424,332.0 | 국(국토해양부) | | | | |
| 64 | 255 | 255 | 천 | 천 | 223.0 | 223.0 | 국(국토해양부) | | | | |
| 65 | 186-1 | 186-1 | 천 | 천 | 274.0 | 274×<br>202/274<br>274×<br>72/274 | 국(국토해양부)<br>외(1)<br>(박기형) |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36) |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6호(2004. 8.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 구분 | 종 류 | 노 선 명 | 구 간 | 총연장 | 중요경과지 | 구역결정(변경)이유 | 비 고 |
|---|---|---|---|---|---|---|---|
| 현구역 | 일반국도 | 국도36호선 (보령~울진) | 시점 : 충북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98도<br>종점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86-3도 | 13.4㎞ | 내수읍 |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 청주시 시행예정구간L=2.2km제외 |
| 변경구역 | | | 시점 : 충북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98도<br>종점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86-3도 | 13.4㎞ | | | |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0월~2012년 6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4 | 답 | 9,279 | 64-3 | 200 | 청주시 율량동 29 | 김수진 | | | |
| 2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5 | 전 | 1,425 | 65-1 | 305 |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498-1 | 신각철 | | | |
| 3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6 | 답 | 1,233 | 66 | 1,233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7 | 김해김씨 진사공휘순파 율량종친회 대표자 김재봉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4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6-1 | 전 | 902 | 66-1 | 902 | 청주시 율량동 116 | 서봉삼 | | | |
| 5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6-2 | 전 | 3,124 | 66-2 | 3124×1/2 | 청주시 우암동 111-13 평화아파트 2동 508호 | 유최형 | | | |
| 5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6-2 | 전 | 3,124 | 66-2 | 3124×1/2 | 청주시 내덕동 748-2 보성@ 7동505호 | 서원덕 | | | |
| 6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7 | 전 | 4,542 | 67-1 | 3,153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84-6 | 서복동 | 근저당 지상권 | 석교 새마을금고 |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5-150 |
| 7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8 | 답 | 5,570 | 68-2 | 1722×6/18 | 서울 구로구 개봉동 132-13 | 김언년 | | | |
| 7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8 | 답 | 5,570 | 68-2 | 1722×3/18 | 청주시 율량동 165-1 | 김언이 | | | |
| 7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8 | 답 | 5,570 | 68-2 | 1722×3/18 | 서울 구로구 고척동 249-20 | 김인희 | | | |
| 7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8 | 답 | 5,570 | 68-2 | 1722×6/18 | 청주시 율량동 99 | 김정희 | | | |
| 8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69 | 전 | 2,354 | 69-1 | 817 | 청주시 분평동 237 우성아파트 203-1107 | 서효원 | | | |
| 9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3 | 455× 397/7240 | 청주시 내덕동 407 | 서종순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9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3 | 455×6326/7240 | 청주시 율량동 113 | 서종석 | | | |
| 9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3 | 455×517/14480 |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2-15 | 임백수 | | | |
| 9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3 | 455×517/14480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4-23 학산연립비-202 | 임희용 | | | |
| 10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4 | 152×397/7240 | 청주시 내덕동 407 | 서종순 | | | |
| 10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4 | 152×6326/7240 | 청주시 율량동 113 | 서종석 | | | |
| 10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4 | 152×517/14480 |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2-15 | 임백수 | | | |
| 10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산96-1 | 임 | 7,240 | 산96-4 | 152×517/14480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4-23학산연립비-202 | 임희용 | | | |
| 11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0-3 | 전 | 536 | 40-5 | 326 |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36 | 석상기 | | | |
| 12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1-2 | 임 | 810 | 41-5 | 288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28 | 박석승 | | | |
| 1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1-3 | 답 | 221 | 41-6 | 63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64-3 | 박광호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4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1-4 | 답 | 860 | 41-7 | 356 | 청주시 상당구 탑동 212-12 | 김응모 | | | |
| 15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5-1 | 답 | 3,824 | 45-6 | 2,35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91 | 김응복 | 근저당 지상권 | 내수농업 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1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8-5 | 답 | 2,033 | 48-5 | 2033×1/4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62 | 김장식 | | | |
| 1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8-5 | 답 | 2,033 | 48-5 | 2033×1/4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98 | 김만식 | | | |
| 1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8-5 | 답 | 2,033 | 48-5 | 2033×1/4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홍의 | | | |
| 1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8-5 | 답 | 2,033 | 48-5 | 2033×1/4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노식 | | | |
| 17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8-1 | 답 | 2,288 | 48-7 | 201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701-3 | 김윤태 | 가압류<br><br>근저당, 지상권 | 민복기<br><br>내수농업 협동조합 | 청주 흥덕 가경동 1510 세원가경골@104-1105<br>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18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8-2 | 답 | 1,660 | 48-8 | 83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91 | 김응복 | 근저당 지상권 | 내수농업 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19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8-3 | 답 | 3,676 | 48-9 | 3,060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62 | 김정수 | | | |
| 2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49 | 전 | 3,098 | 49-1 | 930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영식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1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50-1 | 임 | 476 | 50-1 | 476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549 | 김정랑 | | | |
| 22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50-2 | 전 | 3,788 | 50-4 | 24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 | 이상억 | | | |
| 2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77 | 답 | 4,661 | 77-1 | 1,470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3 | 이상신 | | | |
| 24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78-4 | 답 | 1,934 | 78-8 | 111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 | 이상억 | | | |
| 25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80 | 전 | 1,372 | 80-1 | 3×1/2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한응 | | | |
| 25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80 | 전 | 1,372 | 80-1 | 3×1/2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병식 | | | |
| 2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21 | 전 | 1,587 | 121 | 1,587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00-6 양정맨션 가동 302호 | 천세환 | | | |
| 27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22 | 답 | 936 | 122 | 936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00-6 양정맨션 가동 302호 | 천세환 | | | |
| 28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23 | 답 | 598 | 123 | 598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00-6 양정맨션 가동 302호 | 천세환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9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32 | 답 | 3,154 | 132 | 3154×1/2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 | 김연식 | | | |
| 29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32 | 답 | 3,154 | 132 | 3154×1/2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대식 | | | |
| 3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19 | 전 | 469 | 119 | 469 | 청원군 북이면 국동리 34 | 김병식 | | | |
| 31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20 | 전 | 2,522 | 120-1 | 989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34 | 김병식 | | | |
| 32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24 | 전 | 2,618 | 124-1 | 73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64 | 김용식 | | | |
| 3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33 | 답 | 2,731 | 133-1 | 1,091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 | 김연식 | | | |
| 34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37-1 | 답 | 559 | 137-8 | 8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00-6 양정맨션 가동 302호 | 천세환 | | | |
| 35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40 | 답 | 2,555 | 140-1 | 2,277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 | 김연식 | | | |
| 3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41 | 답 | 4,836 | 141-1 | 3,440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 | 김연식 | | | |
| 37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45 | 답 | 1,702 | 145-1 | 102×1/2 | 대전 중구 목동 24 목양마을@ 102-1703 | 김명섭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7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45 | 답 | 1,702 | 145-1 | 102×1/2 |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406 | 함언예 | | | |
| 38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46 | 답 | 3,812 | 146-1 | 498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64 | 김광성 | | | |
| 39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47-1 | 답 | 4,374 | 147-3 | 2,03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34 | 이종임 | | | |
| 4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48-1 | 답 | 3,669 | 148-4 | 2,801 |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476 | 한산이씨승지공파문중 | | | |
| 41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0-1 | 전 | 2,585 | 150-3 | 785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97-9 모란아파트 3동 406호 | 김응주 | | | |
| 42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0-2 | 답 | 1,200 | 150-4 | 434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101 | 이상찬 | | | |
| 4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1-1 | 답 | 3,187 | 151-1 | 3187×1/5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한응 | | | |
| 4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1-1 | 답 | 3,187 | 151-1 | 3187×1/5 | 청주시 신봉동 35-1 두진백로@ 102-1003 | 김응재 | | | |
| 4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1-1 | 답 | 3,187 | 151-1 | 3187×1/5 | 청주시 우암동 367-26 | 김응진(1) | | | |
| 4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1-1 | 답 | 3,187 | 151-1 | 3187×1/5 | 대전 유성구 장대동 191-22 | 김응득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4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1-1 | 답 | 3,187 | 151-1 | 3187×1/5 | 청원군 북일면 국동리 34 | 김대식 | | | |
| 44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2 | 답 | 1,858 | 152 | 1,858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42-26 | 김태식 | | | |
| 45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3 | 답 | 714 | 153 | 714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86-1 | 이용희 | | | |
| 4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4-1 | 전 | 2,298 | 154-4 | 156 | 천안군 천안면 읍내리 167 | 김명구 | | | |
| 47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5 | 전 | 545.0 | 155-1 | 13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86 | 조경열 | | | |
| 48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156-3 | 전 | 1,673.0 | 156-8 | 575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86 | 조경열 | | | |
| 49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1-2 | 임 | 32,331 | 산1-12 | 2,693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300 | 이진견 | 근저당 지상권 | 청주축산업 협동조합 | 청주시 우암동 378-7 |
| 50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1-3 | 임 | 2,975 | 산1-13 | 1,813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692-8 | 최수진 | | | |
| 51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1-4 | 임 | 13,587 | 산1-14 | 3,376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692-8 | 최수진 | | | |
| 52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1-11 | 임 | 4,760 | 산1-15 | 1,336 |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36 | 석상기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53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2-1 | 임 | 37,091 | 산2-3 | 124 |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 181 | 한산이씨 화재공파종중 대표자 이웅복 | | | |
| 54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29-1 | 임 | 46,314 | 산29-4 | 16,088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62 | 김응진(2) | 근저당 | 김영문 | 부산 동구 좌천동 994-7 |
| 55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30-5 | 임 | 109,289 | 산30-6 | 582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7 정든마을 407-1402 | 유재현 | | | |
| 56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30-5 | 임 | 109,289 | 산30-7 | 445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7 정든마을 407-1402 | 유재현 | | | |
| 57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32 | 임 | 16,661 | 산32-1 | 7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 195-1 그린타운아파트 102동 105호 | 이춘우 | | | |
| 58 |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 산32 | 임 | 16,661 | 산32-2 | 32 | 대전 대덕구 법2동 195-1 그린타운아파트 102동 106호 | 이춘우 | | | |
| 59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91-2 | 전 | 1,871 | 91-2 | 1,871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영준 | | | |
| 60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43 | 전 | 1,706 | 143-1 | 50 |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5-5 진흥2차아파트 202동 102호 | 권금선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61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47 | 답 | 2,869 | 147-1 | 698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77 | 임인철 | | | |
| 62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48-1 | 답 | 998 | 148-2 | 464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69 | 임인철 | | | |
| 63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49-1 | 답 | 4,335 | 149-4 | 3,469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69 | 정장류 | 근저당 지상권 | 내수농업 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64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49-2 | 답 | 565 | 149-5 | 378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69 | 임인철 | | | |
| 6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0 | 답 | 1,572 | 150-2 | 2×1/4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76 태산그린@101-301 | 임헌호 | | | |
| 6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0 | 답 | 1,572 | 150-2 | 2×1/4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77 | 임관철 | | | |
| 6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0 | 답 | 1,572 | 150-2 | 2×1/4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69 | 임인철 | | | |
| 6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0 | 답 | 1,572 | 150-2 | 2×1/4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69 | 임수철 | | | |
| 66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3 | 답 | 774 | 153-1 | 28 |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4 학여울청구@114-203 | 김춘옥 | | | |
| 67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4 | 답 | 4,231 | 154-1 | 2,232 |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4 학여울청구@114-203 | 김춘옥 | | | |
| 68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5 | 묘 | 512 | 155 | 512 | 청원군 내수읍 산직리 | 이상진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69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6 | 답 | 1,868 | 156-2 | 1,292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76 태산그린@101-301 | 임헌호 | | | |
| 70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6-1 | 전 | 694 | 156-3 | 467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94 | 이상일 | | | |
| 71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7 | 답 | 377 | 157-1 | 270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94 | 이상일 | | | |
| 72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58-1 | 답 | 1,709 | 158-3 | 558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94 | 이상일 | | | |
| 73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81-1 | 답 | 734 | 181-3 | 2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76 태산그린@101-301 | 임헌호 | | | |
| 74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81-1 | 답 | 734 | 181-4 | 1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76 태산그린@101-301 | 임헌호 | | | |
| 7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82 | 답 | 1,167 | 182-1 | 68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91-6 | 김은철 | | | |
| 76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83 | 답 | 2,073 | 183-1 | 1,206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91-6 | 김은철 | | | |
| 77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84 | 답 | 1,398 | 184 | 1,398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76 태산그린@101-301 | 임헌호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78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85 | 답 | 555 | 185 | 555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76 태산그린@101-301 | 임헌호 | | | |
| 79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96 | 전 | 2,400 | 196-1 | 196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77 | 임인철 | | | |
| 80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97 | 전 | 691 | 197 | 691 | 서울 강동구 암사동 433-119 | 임웅철 | | | |
| 81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198 | 답 | 3,927 | 198-1 | 2,072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77-1 | 임흥철 | 근저당 | 내수농업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82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12 | 답 | 231 | 212 | 231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700 | 이만구 | | | |
| 83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12-1 | 전 | 2,142 | 212-6 | 164 |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50 | 한산이씨묵방삼파종중 | | | |
| 84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12-2 | 답 | 2,540 | 212-8 | 2,115 |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50 | 한산이씨묵방삼파종중 | | | |
| 8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18 | 전 | 2,066 | 218 | 2,066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77 | 김찬열 | | | |
| 86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41 | 전 | 1,231 | 241-2 | 921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300 | 김일준 | | | |
| 87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42 | 전 | 83 | 242 | 83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300 | 김일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88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43-2 | 답 | 412 | 243-4 | 5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300 | 김일준 | | | |
| 89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272-1 | 전 | 1,322 | 272-1 | 1,322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1 | 이 원 | | | |
| 90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35-2 | 답 | 2,824 | 335-2 | 2,824 | 청원군 북일면 주성리 50 | 한산이씨 묵방삼파종중 | | | |
| 91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35-1 | 답 | 2,575 | 335-4 | 1,646 | 청원군 북일면 주성리 50 | 한산이씨 묵방삼파종중 | | | |
| 92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36 | 답 | 6,187 | 336-1 | 4,337 | 청원군 북일면 원통리 388 | 한산이씨이유당공파종중 | | | |
| 93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39-1 | 답 | 1,758 | 339-2 | 909 | 청원군 북일면 주성리 50 | 한산이씨 묵방삼파종중 | | | |
| 94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40 | 답 | 1,784 | 340 | 1,784 |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319 | 한산이씨사복(휘상직) 공파종중 | | | |
| 9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40-1 | 답 | 1,914 | 340-1 | 1,914 |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319 | 한산이씨사복(휘상직) 공파종중 | | | |
| 96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56 | 답 | 3,618 | 356-3 | 96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69 | 임인철 | | | |
| 97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356 | 답 | 3,618 | 356-4 | 548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69 | 임인철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98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11-1 | 임 | 2,925 | 산11-6 | 29 | 청주시 사직동 618 | 신관기 | | | |
| 99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19-1 | 임 | 458,304 | 산19-43 | 2,016 |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50 | 한산이씨 묵방삼파종중 | | | |
| 100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19-1 | 임 | 458,304 | 산19-44 | 737 |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50 | 한산이씨 묵방삼파종중 | | | |
| 101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19-1 | 임 | 458,304 | 산19-45 | 184 |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50 | 한산이씨 묵방삼파종중 | | | |
| 102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22-3 | 임 | 13,278 | 산22-6 | 3,062 | 청원군 북일면 주성리 1 | 한산이씨시헌(휘 : 규복) 공파종중 | | | |
| 103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23-1 | 임 | 21,145 | 산23-7 | 5,931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1 | 이 원 | | | |
| 104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23-1 | 임 | 21,145 | 산23-8 | 1,258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1 | 이 원 | | | |
| 105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24-3 | 임 | 14,641 | 산24-9 | 1,735 |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300 | 김노택 | | | |
| 106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25 | 임 | 4,975 | 산25-6 | 2,608 |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55-6 | 석상기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07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산25-2 | 임 | 1,701 | 산25-8 | 231 | 원주시 우산동 333-11 우산아파트 3-503 | 김귀택 | | | |
| 108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17 | 전 | 1,118 | 17 | 1,118 |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521 | 임성수 | | | |
| 109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17-1 | 전 | 417 | 17-1 | 417 |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 조희문 | | | |
| 110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18 | 전 | 508 | 18 | 508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진주유씨 사정공파문중 | | | |
| 111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18-1 | 전 | 486 | 18-3 | 351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8 | 진주류씨운경의경수경익경공파문중 | | | |
| 112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19-2 | 전 | 635 | 19-2 | 635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8 | 진주류씨운경의경수경익경공파문중 | | | |
| 113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19 | 답 | 2,669 | 19-4 | 1,588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진주유씨 사정공파문중 | | | |
| 114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20 | 답 | 2,078 | 20-4 | 171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진주류씨은곡승지공파문중 | | | |
| 115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28 | 전 | 1,098 | 28-1 | 512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0 | 이천준 | | | |
| 11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29 | 전 | 337 | 29-1 | 188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4 | 박정순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17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0-1 | 전 | 774 | 30-1 | 774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4 | 박정순 | | | |
| 118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0-2 | 대 | 255 | 30-2 | 255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4 | 박정순 | | | |
| 119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0-3 | 대 | 149 | 30-3 | 149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0 삼익@102-201 | 이정희 | | | |
| 120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0-4 | 대 | 271 | 30-6 | 56 | 청원군 북이면 은곡리 | 조한조 | | | |
| 121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0-5 | 대 | 198 | 30-7 | 2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118 | 유태모 | 근저당 지상권 | 서청주 새마을금고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7 |
| 122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1-1 | 답 | 1,250 | 31-1 | 1,250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0 | 이천준 | | | |
| 123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1-2 | 답 | 1,306 | 31-4 | 555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0 | 이천준 | | | |
| 124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4 | 전 | 1,398 | 34-1 | 161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6 | 한산이씨 현직파종중 | | | |
| 125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6 | 전 | 3,382 | 36-1 | 2,324 | 청주시 봉명동 687 | 이철준 | | | |
| 12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6 | 전 | 3,382 | 36-2 | 7 | 청주시 봉명동 687 | 이철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27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8-1 | 답 | 4,436 | 38-1 | 4,436 | 청원군 북이면 부연리 106 | 장희대 | 가압류<br>압 류<br>압 류<br>압 류<br>가압류<br>근저당<br>근저당 | 한국자산관리공사<br>청주세무서<br>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br>서초세무서<br>청원군<br>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br>농업협동조합중앙회<br>장희성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br>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br>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5 대종빌딩 2층<br>서울 강남 역삼1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 3,4층<br>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br>서울 강동구 암사동 441-11<br>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사창동지점)<br>서울 성동구 행당동 349 행당동한신@ 117-1003 |
| 128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8-2 | 전 | 298 | 38-2 | 298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박동호 | | | |
| 129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9 | 전 | 615 | 39 | 615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박동호 | | | |
| 130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40 | 전 | 2,857 | 40-3 | 1,263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118 장자마을 부영@ 1005-1505 | 이재화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31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43-1 | 답 | 1,415 | 43-1 | 1,415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84-4 | 조명이 | 근저당 지상권 | 내수농업 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132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43-2 | 답 | 2,479 | 43-2 | 2,479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96 | 이정준 | | | |
| 133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44-2 | 답 | 684 | 44-2 | 684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동원 | | | |
| 134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44-1 | 전 | 3,488 | 44-5 | 8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동원 | | | |
| 135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44-1 | 전 | 3,488 | 44-6 | 2,427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동원 | | | |
| 13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49 | 전 | 374 | 49 | 374 | 청원군 내수읍 오리 | 이화구 | | | |
| 137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50 | 전 | 142 | 50 | 142 | 청원군 내수읍 오리 | 이한복 | | | |
| 138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69-5 | 답 | 337 | 69-5 | 337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한준 | | | |
| 139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73-2 | 답 | 2,051 | 373-5 | 10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한준 | | | |
| 140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73-3 | 답 | 2,879 | 373-6 | 957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한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41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373-4 | 답 | 1,961 | 373-7 | 1,701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8 | 이한준 | | | |
| 142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38 | 임 | 3,174 | 산38-1 | 643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84 | 조성기 | | | |
| 143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39-1 | 임 | 3,967.0 | 산39-3 | 1,780 | 진천군 이월면 송두리 477 | 조완석 | | | |
| 144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0 | 임 | 3,967 | 산40-1 | 3,112 |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50 | 조희문 | | | |
| 145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1-1 | 임 | 9,711 | 산41-6 | 278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8 | 진주류씨 운경의경수경 익경공파문중 | | | |
| 14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1-1 | 임 | 9,711 | 산41-7 | 4,893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8 | 진주류씨 운경의경수경 익경공파문중 | | | |
| 147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2-2 | 임 | 7,393 | 산42-5 | 1,737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0 삼익@ 102-201 | 이정희 | | | |
| 148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3-1 | 임 | 7,911 | 산43-4 | 1,512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 | 조항일 | | | |
| 149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4-1 | 임 | 13,071 | 산44-5 | 100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 | 조항일 | | | |
| 150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4-1 | 임 | 13,071 | 산44-6 | 276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 | 조항일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51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4-1 | 임 | 13,071 | 산44-7 | 802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 | 조항일 | | | |
| 152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4-4 | 임 | 714 | 산44-8 | 295 | 청주시 사직동 142-1 삼원아파트 103호 | 심우진 | | | |
| 153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45 | 임 | 23,802 | 산45-1 | 2,797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진주유씨 사정공파문중 | | | |
| 154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4 | 임 | 26,182 | 산64-1 | 12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이석구 | | | |
| 155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5-4 | 임 | 8,826 | 산65-7 | 5,451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97 | 이관원 | | | |
| 15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6-5 | 임 | 35,452 | 산66-16 | 1464×1/3 | 서울 강서구 고덕동 670 시영@ 15-106 | 박경수 | | | |
| 15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6-5 | 임 | 35,452 | 산66-16 | 1464×1/3 |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0 보광@ 2-403 | 이상섭 | 가압류 | 이중화 | 시흥시 목감동 180-1 |
| 156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6-5 | 임 | 35,452 | 산66-16 | 1464×1/3 | 서울 구로 구로동 426-213 | 이중찬 | | | |
| 157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6-6 | 임 | 19,802 | 산66-17 | 94 |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489 선경주택 2층 2호 | 김경환 | | | |
| 158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6-6 | 임 | 19,802 | 산66-18 | 108 |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489 선경주택 2층 2호 | 김경환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59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7 | 임 | 15,074 | 산67-1 | 2,252 | 청주시 수동 259-3 | 이동준 | | | |
| 160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 산67 | 임 | 15,074 | 산67-2 | 5,733 | 청주시 수동 259-3 | 이동준 | | | |
| 161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37-1 | 답 | 1,628 | 537-1 | 1,628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157 | 강영주 | | | |
| 162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37 | 답 | 472 | 537-2 | 50 |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97-8 상당연립 나동 201호 | 정성교 | | | |
| 163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39 | 답 | 2,664 | 539 | 2,664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157 | 강영주 | | | |
| 164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39-1 | 답 | 1,401 | 539-1 | 1,401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157 | 강영주 | | | |
| 165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40 | 답 | 2,081 | 540 | 2,081 | 청주시 석교동 116-17 | 평양조씨 참판공파문중 | | | |
| 166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40-1 | 답 | 574 | 540-2 | 502 | 청주시 석교동 116-17 | 평양조씨 참판공파문중 | | | |
| 167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41 | 답 | 2,843 | 541-2 | 1,941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134 | 이석운 | 근저당 지상권 | 내수농업 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05-7 |
| 168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41-1 | 답 | 1,547 | 541-3 | 121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157 | 이규식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69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 | 답 | 1,306 | 551-4 | 1,159 | 청원군 북일면 덕암리 114 | 정영만 | | | |
| 170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1 | 답 | 1,952 | 551-5 | 1386×1/6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유승학 | | | |
| 170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1 | 답 | 1,952 | 551-5 | 1386×1/6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19 | 유승건 | | | |
| 170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1 | 답 | 1,952 | 551-5 | 1386×1/6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20 | 유승직 | | | |
| 170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1 | 답 | 1,952 | 551-5 | 1386×1/6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20 | 유승각 | | | |
| 170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1 | 답 | 1,952 | 551-5 | 1386×1/6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유승용 | | | |
| 170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1 | 답 | 1,952 | 551-5 | 1386×1/6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유승억 | | | |
| 171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2 | 답 | 1,843 | 551-7 | 1,106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유승학 | | | |
| 172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1-3 | 답 | 813 | 551-9 | 453 | 청원군 북일면 은곡리 140 | 유양모 | | | |
| 173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7 | 전 | 1,724 | 557-2 | 1,575.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74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8 | 답 | 1,157 | 558-1 | 96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175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59 | 전 | 1,858 | 559-1 | 797.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176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560 | 전 | 2,572 | 560-1 | 1,595.0 |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140 | 진주류씨 참판공파문중 | | | |
| 177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1 | 임 | 21,640 | 산71-3 | 4405×6/99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37 우성@ 205-903 | 박국지 | | | |
| 177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1 | 임 | 21,640 | 산71-3 | 4405×4/99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32-201 | 조재원 | | | |
| 177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1 | 임 | 21,640 | 산71-3 | 4405×4/99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73-5 태암수정@ 101-1005 | 조성원 | | | |
| 177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1 | 임 | 21,640 | 산71-3 | 4405×4/99 | 서울 노원구 월계동 18 그랑빌@ 115-1601 | 조민정 | | | |
| 177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1 | 임 | 21,640 | 산71-3 | 4405×37/99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321 | 조진기 | | | |
| 177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1 | 임 | 21,640 | 산71-3 | 4405×44/99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05 | 조항범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78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3-1 | 구 | 1,800.0 | 산73-6 | 857 |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4-6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179 |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 산74 | 임 | 6,562 | 산74-3 | 110 |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65 | 강릉함씨초당파(소종계) 대표자 함해용 | | | |
| 180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 22-4 | 전 | 4,309 | 22-5 | 75×2/9 | 천안시 직산면 모시리 206-13 우성@ 102-711 | 최선희 | | | |
| 180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 22-4 | 전 | 4,309 | 22-5 | 75×3/9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226-7 | 최정락 | | | |
| 180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 22-4 | 전 | 4,309 | 22-5 | 75×2/9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226-7 | 최상락 | | | |
| 180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 22-4 | 전 | 4,309 | 22-5 | 75×2/9 |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226-7 | 최호락 | | | |
| 181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 27-7 | 답 | 3,306 | 27-10 | 10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774 3층 | 성병준 | 근저당 | 서문새마을금고 |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9-2 |
| 182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 27-1 | 답 | 3,016 | 27-8 | 218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1-12 | 박재훈 | | | |
| 183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 31-2 | 임 | 204 | 31-2 | 204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0 삼익@ 102-405 | 김영희 | 근저당 | 신용보증기금 |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8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 | 전 | 240 | 1-1 | 24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18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88-1 | 구 | 34 | 88-3 | 3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18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89-4 | 구 | 341 | 89-10 | 240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18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89-3 | 전 | 249 | 89-3 | 24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18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89-1 | 전 | 1,971 | 89-9 | 1,52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18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90-1 | 전 | 586 | 90-10 | 13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19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90-2 | 전 | 3,028 | 90-11 | 27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19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90-2 | 전 | 3,028 | 90-12 | 39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90-6 | 구 | 86 | 90-6 | 86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19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91-1 | 과 | 1,795 | 91-2 | 1,650 | 서울 은평구 구산동 162-1 경향@ 1-404 | 배승학 | | | |
| 19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92-1 | 전 | 1,211 | 92-1 | 1,21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5.499/14979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83-10 우성아파트 비동 208호 | 안재봉 | 근저당권<br>가압류<br>압 류<br>압 류 | 주식회사 충북은행<br>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br>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br>국(청주세무서)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br>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br>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7-3<br>-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305.874/14979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 현대대두아파트 801-405 | 김병성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오창지점) | 서울중구 을지로2가 50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5.482/14979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5 장자마을부영아파트 104동 801호 | 길용주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청주지점) | 서울중구을지로2가 50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3865.518/1497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5-31동 2호 | 주식회사 대화레이져 | 근저당권 | 중소기업진흥공단<br>중소기업은행(오창지점)<br>주식회사 외환은행(청주북지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br>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br>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02.217/14979 | 청주시 상당구 수동 402-40 | 김윤성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청주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2.508/14979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75 | 연광모 | 근저당권<br>가압류<br>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청주중앙지점)<br>신용보증기금(청주지점)<br>주식회사 충북은행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br>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br>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2.508/14979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6 분평주공아파트 602동1103호 | 임성충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오창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4.262/14979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아파트 105동 603호 | 이경복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청주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838.196 /1497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5-3 동 1호 | 주식회사 아이.케 이.이.비 | 근저당권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청주북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428.223 /14979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74 | 이문택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5.482 /14979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38-2 형제주택 301호 | 주정태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우리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화현동1가 203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2.508 /14979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신동아아파트 12-1202 | 이길영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조흥은행 (사천동지점) |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428.223 /14979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504 | 정권순 | 가압류<br>가압류<br>근저당권 |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br>기술신용보증기금(청주지점)<br>하나은행(청주북문로지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br>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br>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26.007 /14979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3 영조아름다운나날 2차아파트 208-1003 | 전영만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충북은행<br>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br>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18.744 /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14 산남주공4차아파트 410동202호 | 김문옥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한권수 | 대전 서구 관저동 67-3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2.508 /14979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5 한울아파트 101동 506호 | 김규창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171.289 /14979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55 우창진주아파트 203-704 | 장진수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171.289 /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1 세원청실아파트 103동 1007호 | 권오하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충북은행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5.482 /14979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7 뉴타운아파트 105-905 | 안병권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171.289 /14979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아파트 307동 602호 | 정동민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570.965 /1497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5-3 5동6호 | 주식회사 청주연마철강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서울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5.482/14979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8 동아아파트 203-506 | 김찬희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충북은행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5.482/14979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8 신라아파트 2-902 | 장길봉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570.965/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6 세원홍실아파트 101-406 | 신현순 | 근저당권 압 류 가압류 압 류 | 내율사 새마을금고 국민건강 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주식회사 원일에스티 국(동청주 세무서)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05-15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84시흥유통상가 27-302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171.289/14979 |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227-41 | 김태호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428.223/14979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9 삼성아파트 2동 803호 | 김종석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428.223/14979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아파트 104-1205 | 김복현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844.449/14979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9 삼성아파트 5-507 | 이성숙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428.223/14979 | 광명시 광명동 158-1353 4층 | 박인숙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570.965/14979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00 | 우경산업 주식회사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1.772/14979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23 가좌마을부영그린타운1차아파트 302-1405 | 권성안 | 근저당권 | 내수농업 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5.803/14979 |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255 삼일아파트 106-103 | 김화영 | 근저당권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청주북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81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171.289/14979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8-1 산업용재유통상가 101동101호,201호 | 주식회사 보고 | | |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7.254/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8 산남주공아파트 101-102 | 정지형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신한은행(청주영업부지점)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
| 1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0 | 80×282.508/14979 |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93 | 이소형 | 근저당권 | 오창 새마을금고 |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86-2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5.499 /14979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83-10 우성아파트 비동 208호 | 안재봉 | 근저당권<br>가압류<br>압류<br>압류 | 주식회사 충북은행<br>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br>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br>국(청주세무서)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br>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br>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7-3<br>-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305.874 /14979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 현대대두아파트 801-405 | 김병성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오창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5.482 /14979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5 장자마을부영아파트 104동-801호 | 길용주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3865.518 /1497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5-31동 2호 | 주식회사 대화레이져 | 근저당권 | 중소기업 진흥공단<br>중소기업은행 (오창지점)<br>주식회사 외환은행 (청주북지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br>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br>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02.217 /14979 | 청주시 상당구 수동 402-40 | 김윤성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2.508 /14979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75 | 연광모 | 근저당권<br>가압류<br>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청주중앙지점)<br>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br>주식회사 충북은행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br>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br>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2.508 /14979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6 분평주공아파트 602동1103호 | 임성충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오창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4.262 /14979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4 세원한아름아파트 105동 603호 | 이경복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838.196 /1497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5-3 동 1호 | 주식회사아이.케이.이.비 | 근저당권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청주북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428.223 /14979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74 | 이문택 |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 | 서울중구 을지로2가 50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5.482/14979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38-2 형제주택 301호 | 주정태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우리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2.508/14979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신동아아파트 12-1202 | 이길영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조흥은행 (사천동지점) |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428.223/14979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504 | 정권순 | 가압류<br>가압류<br>근저당권 |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br>기술신용보증기금(청주지점)<br>하나은행(청주북문로지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br>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br>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26.007/14979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3 영조아름다운나날 2차아파트 208-1003 | 전영만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충북은행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br>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18.744/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14 산남주공4차아파트 410동202호 | 김문옥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한권수 | 대전 서구 관저동 67-3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2.508/14979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5 한울아파트 101동 506호 | 김규창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171.289 /14979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55 우창진주아파트 203-704 | 장진수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171.289 /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1 세원청실아파트 103동 1007호 | 권오하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충북은행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5.482 /14979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7 뉴타운 아파트 105-905 | 안병권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171.289 /14979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 분평주공아파트 307동 602호 | 정동민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570.965 /1497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5-3 5동6호 | 주식회사 청주연마철강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서울은행 (청주지점) |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5.482 /14979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8 동아아파트 203-506 | 김찬희 | 근저당권 | 주식회사 충북은행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5.482 /14979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8 신라아파트 2-902 | 장길봉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570.965/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6 세원홍실아파트 101-406 | 신현순 | 근저당권<br>압 류<br>가압류<br>압 류 | 내율사 새마을금고<br>국민건강 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br>주식회사 원일에스티국(동청주세무서)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05-15<br>서울 금천 시흥3동984 시흥유통상가27-302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171.289/14979 |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227-41 | 김태호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428.223/14979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9 삼성아파트 2동 803호 | 김종석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428.223/14979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아파트 104동 1205호 | 김복현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844.449/14979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9 삼성아파트 5-507 | 이성숙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428.223/14979 | 광명시 광명동 158-1353 4층 | 박인숙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570.965/14979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00 | 우경산업 주식회사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1.772 /14979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23 가좌마을부영그린타운1차아파트 302-1405 | 권성안 | 근저당권 | 내수농업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5.803 /14979 |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255 삼일아파트 106-103 | 김화영 | 근저당권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청주북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81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171.289 /14979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8-1 산업용재유통상가 101동 101호, 201호 | 주식회사 보고 | | |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7.254 /14979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8 산남주공아파트 101-102 | 정지형 |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청주영업부지점)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
| 1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5-3 | 공장용지 | 14,979 | 105-11 | 93×282.508 /14979 |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93 | 이소형 | 근저당권 | 오창 새마을금고 |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86-2 |
| 19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6-1 | 전 | 1,058 | 106-10 | 31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19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6-3 | 임 | 2,686 | 106-11 | 1,66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19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6-4 | 임 | 35 | 106-4 | 3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0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6-8 | 과 | 22 | 106-8 | 2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20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7-1 | 과 | 1,986 | 107-11 | 92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20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7-2 | 과 | 1,012 | 107-12 | 80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20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7-5 | 과 | 1,667 | 107-13 | 19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20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7-5 | 과 | 1,667 | 107-14 | 95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20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7-3 | 전 | 80 | 107-3 | 80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3-2 | 신종민 | | | |
| 20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16 | 과 | 371 | 108-16 | 371 | 청주시 우암동 377-8 | 박노성 | | | |
| 20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17 | 과 | 32 | 108-17 | 32 | 청주시 우암동 377-8 | 박노성 | | | |
| 20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18 | 과 | 202.0 | 108-18 | 202 | 청주시 우암동 377-8 | 박노성 | | | |
| 20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2 | 과 | 434.0 | 108-24 | 56 | 청주시 우암동 377-8 | 박노성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1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5 | 과 | 808 | 108-26 | 55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21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7 | 과 | 1,095 | 108-27 | 690 | 청주시 우암 377-8 | 박노성 | | | |
| 21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11 | 과 | 4,398.0 | 108-28 | 3,438 | 청주시 우암동 377-8 | 박노성 | | | |
| 21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19 | 과 | 828.0 | 108-31 | 354 | 청주시 우암동 377-8 | 박노성 | | | |
| 21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8-6 | 과 | 148 | 108-6 | 14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08-6 | 박건재 | | | |
| 21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09-4 | 과 | 439.0 | 109-7 | 117 | 청주시 우암동 377-8 | 박노성 | | | |
| 21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1-3 | 전 | 3,504.0 | 111-21 | 12 | 청원 내수읍 마산리1-21 내수연립 가동 202호 | 유근태 | | | |
| 21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2-1 | 전 | 11,203 | 112-10 | 49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 | |
| 21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2-1 | 전 | 11,203 | 112-8 | 49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근저당 | 내수농업협동조합 |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46-5 |
| 21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2-1 | 전 | 11,203 | 112-9 | 1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2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3 | 답 | 3,601 | 113-2 | 1,96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2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5-1 | 전 | 747 | 115-6 | 47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2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5-2 | 전 | 704 | 115-7 | 8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2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5-3 | 임 | 5,680 | 115-8 | 1,50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2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5-3 | 임 | 5,680 | 115-9 | 14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2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6-1 | 전 | 764 | 116-14 | 20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 | |
| 22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6-3 | 임 | 379 | 116-15 | 34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 | |
| 22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6-7 | 임 | 4,298 | 116-17 | 1,6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2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6-7 | 임 | 4,298 | 116-18 | 2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 | |
| 22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2 | 구 | 73 | 117-12 | 73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농업기반공사 | | | |
| 23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4 | 구 | 149 | 117-14 | 149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23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5 | 전 | 757 | 117-15 | 757 |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460 | 경주김씨부사공파용일종중(김연권) | | | |
| 23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6 | 구 | 63 | 117-16 | 63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23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7 | 전 | 51 | 117-17 | 51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23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8 | 구 | 56 | 117-18 | 56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23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9 | 임 | 858 | 117-19 | 858 |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460 | 경주김씨부사공파용일종중(김연권) | | | |
| 23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2 | 전 | 359 | 117-2 | 359 |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 류창순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3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1 | 전 | 1,398 | 117-25 | 1,34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16-2 | 강규식 | | | |
| 23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4 | 전 | 383 | 117-26 | 183 |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460 | 경주김씨부사공파용일종중 (김연권) | | | |
| 23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7 | 임 | 1,231 | 117-27 | 189 |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460 | 경주김씨부사공파용일종중 (김연권) | | | |
| 24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3 | 전 | 645 | 117-3 | 645 |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460 | 경주김씨부사공파용일종중 (김연권) | | | |
| 24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7-5 | 전 | 241 | 117-5 | 241 |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460 | 경주김씨부사공파용일종중 (김연권) | | | |
| 24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8-6 | 전 | 2,678 | 118-12 | 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24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9-4 | 임 | 128 | 119-10 | 3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24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9-6 | 답 | 328 | 119-11 | 202 | 청주시 흥덕 가경 755 신라빌라 1-306 | 강계영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4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9-8 | 구 | 62 | 119-8 | 62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농업기반공사 | | | |
| 24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19-9 | 임 | 67 | 119-9 | 67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 농업기반공사 | | | |
| 24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2-7 | 구 | 155 | 122-13 | 35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24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3-1 | 구 | 80 | 123-1 | 80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 청원농지개량조합 | | | |
| 24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6-2 | 전 | 2,916.0 | 126-5 | 1,50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02 | 고성이씨풍정파종중 | | | |
| 25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6-3 | 전 | 1,468.0 | 126-6 | 808×6/21 | 서울 도봉구 수유동 172-148 | 이창호 | | | |
| 25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6-3 | 전 | 1,468.0 | 126-6 | 808×2/2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72-148 | 김언연 | | | |
| 25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6-3 | 전 | 1,468.0 | 126-6 | 808×4/21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65 | 이원호 | | | |
| 25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6-3 | 전 | 1,468.0 | 126-6 | 808×2/2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02 | 이선호 | | | |
| 25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6-3 | 전 | 1,468.0 | 126-6 | 808×1/21 |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308 | 이영호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5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6-3 | 전 | 1,468.0 | 126-6 | 808×2/21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65 | 이순자 | | | |
| 25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7-1 | 전 | 1,931.0 | 127-5 | 27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02 | 고성이씨 풍정파종중 | | | |
| 25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7-2 | 전 | 2,291.0 | 127-6 | 20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02 | 고성이씨 풍정파종중 | | | |
| 25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8-3 | 전 | 9,190.0 | 128-10 | 59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25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28-3 | 전 | 9,190.0 | 128-11 | 2,13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25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33 | 목 | 4,274 | 133-3 | 1,483 | 청원군 북이면 추학리 444 | 라병운 | | | |
| 25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34-3 | 답 | 251.0 | 134-7 | 140 |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33 | 이규환 | | | |
| 25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37 | 전 | 1,253.0 | 137 | 1,253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040-1(송달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26-14) | 황주현 | | | |
| 25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37-3 | 임 | 691.0 | 137-7 | 54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02 | 고성이씨 풍정파종중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5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37-5 | 임 | 13,680.0 | 137-8 | 3,92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02 | 고성이씨선우공파종중 | | | |
| 26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177-1 | 전 | 797 | 177-3 | 1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176 | 장남수 | 근저당 | 장임숙 | 대구 달서구 본리동 260-1 우방@3동 302 |
| 26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71-2 | 답 | 896 | 271-4 | 36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6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74-1 | 답 | 2,705 | 274-7 | 121×1/2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신동아@ 10-1005 | 김종대 |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
| 26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74-1 | 답 | 2,705 | 274-7 | 121×1/2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2 벽산@ 105-602 | 남숙혁 |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
| 26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75-1 | 임 | 1,037 | 275-7 | 55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6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78-1 | 답 | 1,144 | 278-3 | 78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6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1-1 | 답 | 369 | 281-1 | 36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6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1-3 | 답 | 500 | 281-3 | 50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6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2-1 | 답 | 2,608 | 282-4 | 2,09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6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2-2 | 답 | 1,990 | 282-6 | 34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6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2-3 | 답 | 740 | 282-7 | 3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3-2 | 답 | 671 | 283-3 | 347 |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삼호아파트 101-203호 | 최성락 | | | |
| 27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4 | 답 | 1,983 | 284-1 | 93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85 | 답 | 2,231.0 | 285-1 | 14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290 | 전 | 1,712.0 | 290-1 | 1,023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67-11 | 박종혁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7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2 | 답 | 1,384.2 | 312-5 | 291.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3 | 답 | 2,034.6 | 313-1 | 1,537.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4 | 답 | 2,171.6 | 314-1 | 1,730.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5 | 답 | 2,241.7 | 315-1 | 1,701.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6 | 답 | 1,914.4 | 316 | 1,914.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7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7 | 답 | 1,695.5 | 317 | 1,695.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8 | 답 | 1,846.6 | 318 | 1,84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8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19 | 답 | 1,629.1 | 319 | 1,629.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0 | 답 | 1,605.8 | 320 | 1,605.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1 | 답 | 1,851.5 | 321 | 1,851.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2 | 답 | 1,089.1 | 322 | 1,089.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3 | 답 | 1,066 | 323 | 1,0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4 | 답 | 2,513.2 | 324 | 2,513.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5 | 답 | 2,494.9 | 325 | 2,494.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8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5-1 | 답 | 3,189 | 325-1 | 3,18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8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7 | 답 | 2,463.9 | 327-1 | 48.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33-4 | 김태훈 | | | |
| 29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8 | 답 | 2,788.7 | 328-1 | 1,02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33-4 | 김태훈 | | | |
| 29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29 | 답 | 2,873.6 | 329-1 | 1,732.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9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0 | 답 | 3,029.6 | 330-1 | 1,843.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9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1 | 답 | 1,542 | 331-1 | 87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9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2 | 답 | 1,505.4 | 332-1 | 759.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95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3 | 답 | 2,726.9 | 333-1 | 911.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296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4 | 답 | 2,393.1 | 334-1 | 399.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97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5 | 답 | 2,862.3 | 335 | 2,862.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98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6 | 답 | 3,336.7 | 336-1 | 1,36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299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7 | 답 | 2,030.9 | 337-1 | 418.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00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338 | 답 | 2,025.7 | 338-1 | 2.6 | 내수읍 풍정리 74 | 장희순 | | | |
| 301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산4-5 | 임 | 255 | 산4-5 | 25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02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산5 | 임 | 298 | 산5 | 298 |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204 | 김호경 | | | |
| 303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 산 15-12 | 임 | 496.0 | 산15-35 | 24 |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02 | 고성이씨 풍정파종중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04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28-5 | 답 | 85.0 | 28-5 | 8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05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28-4 | 도 | 277.0 | 28-16 | 149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217 | 류상순 | | | |
| 306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29-2 | 도 | 60.0 | 29-2 | 6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389 | 안수연 | | | |
| 307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60-1 | 도 | 188.0 | 60-1 | 188×1/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07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60-1 | 도 | 188.0 | 60-1 | 188×1/5 | 서울 중랑구 면목동 89-58 | 유정숙 | | | |
| 307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60-1 | 도 | 188.0 | 60-1 | 188×1/5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1-1 산호@101-1907 | 유은주 | | | |
| 307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60-1 | 도 | 188.0 | 60-1 | 188×1/5 | 의정부시 민락동 735-3 송산주공@ 301-502 | 유선의 | | | |
| 307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60-1 | 도 | 188.0 | 60-1 | 188×1/5 | 서울 동작구 상도동 359-18 | 유영규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 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 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 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 201 | 이연순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 -302 | 이은상 | | | |
| 30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2-1 | 전 | 59.0 | 32-1 | 59× 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0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183 | 묘 | 1,911.0 | 183-1 | 4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31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198-1 | 전 | 2,053.0 | 198-3 | 2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264-3 | 양승무 | | | |
| 31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01-2 | 전 | 2,813.0 | 201-3 | 1,482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80-4 | 김근석 | 근저당권/지상권 | 내덕신용협동조합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414 |
| 31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02-1 | 전 | 24.0 | 202-1 | 24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 농업기반공사 | | | |
| 31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30-2 | 제 | 212.0 | 230-5 | 30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49 반포아파트 51-203 | 민주식 | | | |
| 31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52-1 | 전 | 3.0 | 252-1 | 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266 | 국 (국토해양부)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 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1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2 | 임 | 75.0 | 289-2 | 75×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 201 | 이연순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1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89-13 | 임 | 3,038.0 | 289-19 | 5× 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17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1 | 전 | 387.0 | 291 | 387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 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 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 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 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1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1 | 전 | 287.0 | 292-1 | 287×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1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3 | 전 | 42.0 | 292-3 | 42×18650 /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150 /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150 /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75 /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2-4 | 전 | 294.0 | 292-4 | 294×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 201 | 이연순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21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3 | 임 | 125.0 | 296-3 | 125×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22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6-1 | 임 | 3,693.0 | 296-6 | 949×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23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2 | 전 | 171.0 | 297-2 | 171×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24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297-1 | 전 | 5,250.0 | 297-8 | 3245×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25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65-2 | 답 | 66.0 | 365-7 | 20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64 | 최석조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26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365-3 | 제 | 589.0 | 365-8 | 99 |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 박용래 | | | |
| 327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498 | 답 | 2,955.9 | 498-1 | 2,624.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28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504 | 답 | 870.8 | 504-1 | 7 | 서울 서초 반포동 1149 반포아파트 51-203 | 민주식 | | | |
| 32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 508 | 답 | 3,214.0 | 508-1 | 877.9 |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191 | 유경순 | | | |
| 330 |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 19-1 | 전 | 680.0 | 19-31 | 82 |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64-18 | 김무음 | | | |
| 331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45-1 | 전 | 2,612 | 345-3 | 5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32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49-3 | 임 | 4,998 | 349-4 | 82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 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 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 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3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2 | 전 | 353.0 | 351-2 | 353× 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 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시범@ 6-42 | 정용옥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8/266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56 | 정영아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2/4002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인순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2/4002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58-7 2층 | 이준상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2/400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08-12 대원연립 301 | 이현순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 150/533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6-42 | 정용의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 75/20010 | 전남 목포시 광동3가 2-6 | 왕은순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 50/20010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2 무학(아) 12-510 | 이지선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2/4002 | 서울 양천구 목동 715-4 삼보연립201 | 이연순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2/4002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7 롯데빌리지 비-302 | 이은상 | | | |
| 334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6 | 임 | 424.0 | 351-6 | 424× 18650/2001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35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4 | 전 | 879.0 | 351-21 | 15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36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1-14 | 임 | 26.0 | 351-22 | 1 | 청원군 북이면 서당 267 | 박대규 | | | |
| 337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 353-1 | 과 | 1,650.0 | 353-5 | 68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38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7 | 전 | 23 | 253-7 | 23×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하영 | | | |
| 339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1-8 | 임 | 92.0 | 131-8 | 92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247 | 전영운 | | | |
| 340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1-3 | 전 | 366.0 | 131-18 | 7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247(1/) | 전창렬 | 근저당권 | 내수농협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150-7 |
| 341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1-6 | 임 | 1,712.0 | 131-19 | 883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247 | 전영운 | | | |
| 342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3-2 | 임 | 154.0 | 133-2 | 154×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43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3-3 | 임 | 9,216.0 | 133-10 | 3068×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44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3-3 | 임 | 9,216.0 | 133-11 | 53×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45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3-4 | 임 | 371.0 | 133-12 | 72×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46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3-4 | 임 | 371.0 | 133-13 | 55×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47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3-6 | 임 | 859.0 | 133-14 | 119×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48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4-4 | 전 | 928.0 | 134-9 | 94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247 | 전영운 | | | |
| 349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4-4 | 전 | 928.0 | 134-10 | 144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247 | 전영운 | | | |
| 350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4-7 | 전 | 3,060.0 | 134-12 | 1764×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51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4-7 | 전 | 3,060.0 | 134-13 | 104×1/3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52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6-6 | 전 | 7,252.0 | 136-14 | 4694×1/3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279 | 박노균 | | | |
| 353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6-7 | 전 | 480.0 | 136-17 | 157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54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39 | 답 | 2,740.0 | 139-1 | 210×1/4 | 충북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13 (27-1) 개신주공1단지(아) 102-710 | 서정한 | | | |
| 355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41 | 답 | 2,980.0 | 141-1 | 747×1/2 |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295 | 김범구 | 가압류 | 최승복 | 청주시 금천동 180-38 |
| 355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141 | 답 | 2,980.0 | 141-1 | 747×1/2 | 충주시 교현동 303-24 | 김홍덕 | | | |
| 356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10-4 | 임 | 1,680.0 | 210-6 | 1,37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57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16-1 | 전 | 431.0 | 216-1 | 431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1/) | 서훈석 | 근저당권 | 축협중앙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충북도지회) |
| 358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18-2 | 임 | 331.0 | 218-8 | 17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59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2 | 전 | 2,588.0 | 252-11 | 426×1/2 | 충북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4-5(1/) | 장석인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60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7 | 전 | 23 | 253-7 | 23×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주영 | | | |
| 360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7 | 전 | 23 | 253-7 | 23×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노영 | | | |
| 361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9 | 답 | 10 | 253-9 | 10×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하영 | | | |
| 361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9 | 답 | 10 | 253-9 | 10×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주영 | | | |
| 361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9 | 답 | 10 | 253-9 | 10×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노영 | | | |
| 362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11 | 전 | 7 | 253-11 | 7×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하영 | | | |
| 362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11 | 전 | 7 | 253-11 | 7×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주영 | | | |
| 362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11 | 전 | 7 | 253-11 | 7×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노영 | | | |
| 363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12 | 전 | 69 | 253-12 | 69×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하영 | | | |
| 363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12 | 전 | 69 | 253-12 | 69×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주영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63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53-12 | 전 | 69 | 253-12 | 69×1/3 |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41-4 | 장노영 | | | |
| 364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73-13 | 전 | 2,662.0 | 273-19 | 1,035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신안리 3-5 | 의성김씨세옥파종중 대표 김규동 | | | |
| 365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76-2 | 구 | 595.0 | 276-2 | 595 | 충북 청원군 북일면 신안리 3-5 | 의성김씨세옥파종중 대표 김규동 | | | |
| 366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76-13 | 임 | 383.0 | 276-13 | 383 | 충북 청원군 북일면 신안리 3-5 | 의성김씨세옥파종중 대표 김규동 | | | |
| 367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76-14 | 임 | 601.0 | 276-18 | 226 | 충북 청원군 북일면 신안리 3-5 | 의성김씨세옥파종중 대표 김규동 | | | |
| 368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83-1 | 전 | 22,470.0 | 283-19 | 319 | 충북 청원군 북일면 신안리 3-5 | 의성김씨세옥파종중 대표 김규동 | | | |
| 369 |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 283-1 | 전 | 22,470.0 | 283-20 | 63 | 충북 청원군 북일면 신안리 3-5 | 의성김씨세옥파종중 대표 김규동 | | | |
| 370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 43-2 | 임 | 1,851.0 | 43-5 | 1,15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 (국토해양부) | | |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71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 100-1 | 전 | 2,161.0 | 100-8 | 1,04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72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 101-6 | 임 | 80 | 101-6 | 80×1/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 국(국토해양부) | | | |
| 372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 101-6 | 임 | 80 | 101-6 | 80×1/5 | 청원군 북일면 현암리 36 | 김화년 | | | |
| 372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 101-6 | 임 | 80 | 101-6 | 80×1/5 | 청원군 북일면 현암리 36 | 김승년 | | | |
| 372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 101-6 | 임 | 80 | 101-6 | 80×1/5 | 서울 성동구 자양동 220-79 | 김왕년 | | | |
| 372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 101-6 | 임 | 80 | 101-6 | 80×1/5 |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 아파트 206-304 | 김창연 | 가압류<br>가압류<br>근저당권 | ㈜서울은행(채권회수임인 성업공사)<br>기술신용보증기금(강남지역관리센터)<br>김광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채권관리부)<br>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br>청주시 수곡동 71-3 수곡아파트바동301호 |

| 일련번호 | 소 재 지 | 분 할 전 | | | 분 할 후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
| |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 번 | 면 적(㎡) | 주 소 | 성명또는명칭 | 권리명 | 성 명 | 주 소 |
| 373 |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 282-17 | 철 | 1,913.0 | 282-27 | 176×12200/16400 | 천안시 동면 화덕리 493 | 밀양박씨국당공파선자오자종중 대표자 박장환 | | | |
| 373 |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 282-17 | 철 | 1,913.0 | 282-27 | 176×4200/16400 | - | 국(철도청) | | | |
| 374 |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 282-2 | 전 | 356.0 | 282-29 | 149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235 | 김원형 | 근저당권<br>근저당권 | 청주축협<br>㈜선진한마을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br>경기 이천시 사음동 544-23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 구 분 | 종 류 | 노 선 명 | 구 간 | 총연장 |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 사업시행기간 |
|---|---|---|---|---|---|---|
| 현구역 | 일반국도 | 국도17호선 (여수~용인) | 시점 :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117-20임<br>종점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 | 9.4㎞ |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구간의 장양교차로 위치변경 등에 따른 토지편입 및 환매로 인한 편입면적 조정 | 2004.10. 1.~ 2013.12.31. |
| 변경구역 | | | 시점 :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117-20임<br>종점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 | 9.4㎞ | | 2004.10. 1.~ 2013.12.31. |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장양교차로 위치변경 등으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 :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추가용지

소재지 :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 일련번호 | 지번 |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소유권이 외의권리 |
|---|---|---|---|---|---|---|---|---|---|---|
| | 분할 전 | 분할 후 | | 당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 | 73-2 | 73-2 | 답 | 1,307 | 1,307 | 원유승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21 | | | |
| 2 | 73-1 | 73-5 | 답 | 1,554 | 988 | 원유승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21 | | | |
| 3 | 74 | 74-2 | 답 | 2,283 | 298 | 유도현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04 | | | |
| 4 | 75-1 | 75-5 | 전 | 3,360 | 1,243 | 오원석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424-11 | 진천신용협동조합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48-3 | 근저당권, 지상권 |
| 5 | 84 | 84-1 | 답 | 4,552 | 339 | 조재근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5-4 | | | |
| 6 | 85 | 85-2 | 답 | 1,413 | 773 | 조재근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5-4 | | | |

| 일련번호 | 지번 |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소유권이 외의권리 |
|---|---|---|---|---|---|---|---|---|---|---|
| | 분할 전 | 분할 후 | | 당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7 | 86 | 86 | 답 | 497 | 497 | 장혜숙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중동리슈빌엔클래스 513 | | | |
| 8 | 87 | 87-1 | 전 | 3,689 | 3,122 | 장혜숙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중동리슈빌엔클래스 513 | | | |
| 9 | 88 | 88-1 | 전 | 1,256 | 87×1/2 | 신동술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5-1 우방아파트 3-203 | | | |
| | | | | | 87×1/2 | 신동구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46 | | | |
| 10 | 89-1 | 89-1 | 전 | 397 | 397 | 윤종철 |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2-1103 | 칠원윤씨대언공파종친회 |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14 | 청주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7카합896) |
| 11 | 89-2 | 89-2 | 전 | 397 | 397 | 윤종철 |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2-1103 | 칠원윤씨대언공파종친회 |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14 | 청주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7카합896) |
| 12 | 89-3 | 89-6 | 임 | 4,648 | 1,301 | 윤종철 |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2-1103 | 칠원윤씨대언공파종친회 |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14 | 청주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7카합896) |
| 13 | 89-5 | 89-7 | 전 | 609 | 149 | 윤종철 |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2-1103 | | | |
| 14 | 4-7 | 4-17 | 전 | 893 | 56 | 신동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1-27 | | | |
| 15 | 112-1 | 112-4 | 답 | 1,312 | 194 | 방낙준 |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213-1 | | | |

| 일련번호 | 지번 |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소유권이 외의권리 |
|---|---|---|---|---|---|---|---|---|---|---|
| | 분할 전 | 분할 후 | | 당 초 | 편 입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16 | 243-1 | 243-3 | 답 | 459 | 23 | 충청북도 | | | | |
| 17 | 244 | 244-2 | 답 | 1,462 | 93 | 장혜숙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중동리슈빌엔클래스 513 | | | |
| 18 | 245 | 245-4 | 답 | 1,006 | 17 | 조윤근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5-4 | | | |
| 19 | 246 | 246-5 | 답 | 682 | 1 | 최동열 | 충북 충주시 연수동 421-7 유원하나아파트 6-106 | | | |
| 20 | 산22-1 | 산22-18 | 임 | 21,326 | 201 | 거창신씨참판공란자수자손문중 | 인천 북구 부평동 179 대표자 : 신완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9-18) | | | |
| 21 | 산22-1 | 산22-19 | 임 | 21,326 | 472 | 거창신씨참판공란자수자손문중 | 인천 북구 부평동 179 대표자 : 신완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9-18) | | | |
| 22 | 산22-4 | 산22-20 | 임 | 11,870 | 448×1/5 | 신동남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90 | | | |
| | | | | | 448×1/5 | 신동예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512 대승산내들아파트 101-303 | | | |
| | | | | | 448×1/5 | 신동복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2-8 | | | |
| | | | | | 448×1/5 | 신동길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9-6 | | | |
| | | | | | 448×1/5 | 신동선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5-11 | | | |
| 23 | 산22-4 | 산22-21 | 임 | 11,870 | 435×1/5 | 신동남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90 | | | |

| 일련번호 | 지번 |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소유권이 외의권리 |
|---|---|---|---|---|---|---|---|---|---|---|
| | 분할 전 | 분할 후 | | 당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 | | | 435×1/5 | 신동예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512 대승산내들아파트 101-303 | | | |
| | | | | | 435×1/5 | 신동복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2-8 | | | |
| | | | | | 435×1/5 | 신동길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9-6 | | | |
| | | | | | 435×1/5 | 신동선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5-11 | | | |
| 24 | 산22-5 | 산22-24 | 임 | 12,274 | 792 | 장성갑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46 | | | |
| 25 | 산22-11 | 산22-23 | 임 | 748 | 182 | 장성갑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46 | | | |

◈환매용지

소재지 :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 일련번호 | 당초 도로편입 내역 | | | 변경 도로편입 내역 | | | | 소유자 | 비고 |
|---|---|---|---|---|---|---|---|---|---|
| | 지번 | 지목 | 지적(㎡) | 도로편입 | | 미편입 | | | |
| | | | | 지번 | 지적(㎡) | 지번 | 지적(㎡) | | |
| 1 | 76-1 | 전 | 525 | 76-2 | 420 | 76-1 | 105 | 국(건설교통부) | |
| 2 | 78 | 전 | 1,131 | 78-1 | 1,008 | 78 | 123 | 국(건설교통부) | |
| 3 | 80-1 | 전 | 1,186 | 80-2 | 278 | 80-1 | 908 | 국(건설교통부) | |
| 4 | 81-1 | 전 | 1,682 | 81-2 | 1,597 | 81-1 | 85 | 국(건설교통부) | |
| 5 | 75-2 | 답 | 1,754 | - | - | 75-2 | 1,754 | 국(건설교통부) | |

| 일련번호 | 당초 도로편입 내역 | | | 변경 도로편입 내역 | | | | 소 유 자 | 비 고 |
|---|---|---|---|---|---|---|---|---|---|
| | 지 번 | 지목 | 지적(㎡) | 도 로 편 입 | | 미 편 입 | | | |
| | | | | 지 번 | 지적(㎡) | 지 번 | 지적(㎡) | | |
| 6 | 74-1 | 답 | 705 | - | - | 74-1 | 705 | 국(건설교통부) | |
| 7 | 73-3 | 답 | 304 | - | - | 73-3 | 304 | 국(건설교통부) | |
| 8 | 11-4 | 전 | 145 | 11-4 | 116 | 11-7 | 29 | 국(건설교통부) | |
| 9 | 71-2 | 전 | 416 | 71-2 | 203 | 71-4 | 213 | 국(건설교통부) | |
| 10 | 75-3 | 전 | 334 | 75-3 | 196 | 75-7 | 138 | 국(건설교통부) | |
| 11 | 72 | 답 | 942 | 72 | 471 | 72-1 | 471 | 국(건설교통부) | |
| 12 | 산26-5 | 임 | 937 | 산26-5 | 679 | 산26-6 | 258 | 국(건설교통부) | |
| 13 | 77-1 | 임 | 1,295 | 77-2 | 152 | 77-1 | 885 | 국(건설교통부) | |
| | | | | 77-3 | 258 | | | | |
| 14 | 산22-7 | 임 | 6,403 | 산22-23 | 1,887 | 산22-7 | 4,516 | 국(건설교통부) | |
| 15 | 산25-6 | 임 | 9,589 | 산25-8 | 5,126 | 산25-6 | 4,463 | 국(건설교통부) | |
| 16 | 산25-4 | 임 | 899 | 산25-4 | 321 | 산25-9 | 499 | 국(건설교통부) | |
| | | | | 산25-10 | 79 | |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의 종류 | 일 반 국 도 | 노 선 명 | |
|---|---|---|---|
| 접도구역 지정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br>○위 치<br>-시 점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117-20임<br>-종 점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 | | |
| 접도구역 지정목적 |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및 교차로구간 등<br>○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br>○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 |
|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br>○위 치<br>-시 점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352-5도<br>-종 점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631천 | | |
| 접도구역 해제사유 |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br>단, 신설도로의 완료로 인한 개 · 폐지공고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효함. | | |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3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 구 분 | 위 치 | 설치시기 | 설치면적 |
|---|---|---|---|
| 종합대기측정소<br>(산성강하물측정망)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주민지원센터(옥상) | 2008. 7. | 50.0㎡ |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0-169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촌공사
   -주 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번지
   -성 명 : 당진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개 요
   ○펌프 Q=0.074㎥/sec
   ○강관압입(Ø600㎜, L=38m)
   ○양수장본체(B=5.6×4.5m, H=6.4m)
   ○송수관로 개거(B=0.5×0.5m, L=1070㎜)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322-1천, 322-2천
   -허가량 : 2,67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6월 5 일~2018년 5 월 30일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촌공사

-주 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번지

-성 명 : 당진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개 요

○펌프 20Hp×200㎜×1대)

○흡입관 Ø250㎜, L=30m(압입굴착 22.4m)

○토출관 Ø250㎜, L=708.35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352-192 등 3필지

-허가량 : 6,912㎥/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6월 5일~2018년 5월 30일

##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 구 분 | 표지명 | 위 치 (WGS-84) | 등질 | 광달거리(M) | | | 등고 (m) | 도색·구조 및 높 이 | 변 경 년월일 | 비 고 |
|---|---|---|---|---|---|---|---|---|---|---|
| | | | | 지리 | 광학 | 명목 | | | | |
| 변경전 | 묵호항동 방파제등대 | N 37° 32′ 21″ E 129° 07′ 13″ | FlR 4s | 13 | 9 | 7 | 18 | 홍4각탑형 콘크리트조 11m | '08. 6. 20 | 광력증강 ML-300mm 75W⇒250W |
| 변경후 | | | | 13 | 10 | 8 | | | | |
| 변경전 | 조도등대 | N 38° 11′ 43″ E 128° 36′ 56″ | FlW 6s | 17 | 10 | 7 | 36 | 백원형 콘크리트조 11m | '08. 6. 20 | 광력증강 250mm ⇒ML-300 (75W) |
| 변경후 | | | | 17 | 17 | 12 | | | | |

##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 구분 | 규 격 번 호 | 규 격 명 | 비 고 |
|---|---|---|---|
| 개정 | KSDISO4955 | 내열강 및 합금 | 규격안 |
| 개정 | KSR9221 | 철도 차량용 차륜 | 규격안 |

2. 개정 사유

정부규격 통일화 방안 및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내열강 및 합금의 강종 추가-철도차량용 차륜의 제조방법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5호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접투자증권을 판매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등을 정비하고, 同 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정부조직의 개편 등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투자증권 판매교육 대상자를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및 취득권유자”로 명확히 규정함.

나.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료하게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독립성을 강화.

다. 온라인보수교육강화를 위하여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함.

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 전화 02-2156-9895, 팩스 02-2156-98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9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2008. 2. 29.)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적극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등의 회계연도내 수입금 수납처리 조항에 대한 예외 인정 사유 추가

(1)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나, 사실상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처리되고 있는 “정부계정 상호간 국고금대체금”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선사용자금 반환금”을 회계연도 수납처리 조항의 예외 인정 사유에 추가.

(2) “정부계정 상호간 국고금대체” 및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선사용자금 반환”의 처리는 근거규정 없이 출납정리기간(다음회계연도 1월 15일)에 처리되고 있음.

(3) 국고금관리업무를 관련 규정 등에 부합되게 처리

나.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

(1)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야 함.

(2) 현행규정상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가능한 범위는 한국은행, 금고은행, 국고대리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3)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국세의 국고수납이 가능.

다. 국고금 운용체계 개선하여 수익성 제고

(1)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보관하고 있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자금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을 제고

(2) 일부 중앙관서는 자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 · 예측 없이 세부사업별 자금요구(10일 단위)를 단순 취합하여 과다하게 자금배정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3) 국고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운용 수익 증대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국고과

○전 화 : 02-2150-5112/5113

○팩 스 : 02-503-9280

○이메일 : a5233@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0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2008. 2. 29.)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국고과

○전 화 : 02-2150-5112/5113

○팩 스 : 02-503-9280

○이메일 : a5233@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2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를 장관이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 · 도교육감이 실시하도록 이양하여 시 · 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국립유치원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장관이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장관은 시 · 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시 · 도교육감은 관할교육청과 유치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과 단위학교의 책무성 및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립유치원 장학지도를 장관이 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

○유치원 평가를 장관이 하도록 한 것을 장관은 시 · 도교육청을, 교육감은 관할교육청과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전 화 : 02-2100-6554~6557(FAX : 02-2100-6558)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5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자문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나. 분야별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분야별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에 간사를 1인씩 둘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인재정책총괄과, 전화 02-2100-6220, 팩스 02-2100-6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 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인 경우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총괄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20~4, 팩스 : 02-2100-6225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8호

「대학설립 ·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의 핵심 재정 지원과제의 경우 기존 국내 대학에서 육성되고 있지 못한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과제에 선정되는 대학이 동 분야에서 해외학자 유치를 통해 신규 전공 및 학과 개설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학생정원 증원을 특별히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정원 증원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 일부 특례 인정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의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 대학설립 · 운영규정 상의 대학원 정원 증원의 4대 요건(교원 · 교지 · 교사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율 100% 충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나. 일부 특례인정의 범위는 교과부장관에게 위임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에 속하는 학생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와 학생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술연구진흥과장, 전화 (02)2100-6870~4, 팩스 (02)2100-6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07호, 110-760)

## ⊙여성부공고제2008-10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여 성 부 장 관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실시 및 부실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126호, 2008.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 내용과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 : 정책총괄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국 정책총괄과(전화 : 02-2075-4605, FAX : 02-2075-4786, 전자우편 : ynamaba@mog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 : //www.moge.go.kr) '여성정책-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3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내역을 구체화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조성원가 공시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

나.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조성원가 구성항목의 내역을 상세하게 규정

다.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인원의 인건비로 하고, 기타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3개 항목으로 한정하는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법령 ·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03, 팩스 : 02-503-3285

## ⊙문화재청공고제2008-12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등 5필지 646㎡에 대하여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로 추가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추가지정 예고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3-3번지 일원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장)

○추가지정 예고대상 : 5필지 646㎡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사적지정 면적 : 45필지 22,391㎡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추가지정 예고 부지는 원래 제주목관아 영역 내이며, 그 가운데 주차장 부지는 제주의 다섯 과수원 가운데 하나로 제주목 관아 내에 있던 별과원(別果園)지역이었음.

○제주목관아의 효율적인 복원 ·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적으로 추가지정 예고하는 것임.

3. 추가지정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2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제주목관아”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지적별 면적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번면적 (㎡) | 신청면적 (㎡) | 소 유 자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계 | | 5필지 | | 646 | 646 | | |
| 1 | 제주시 삼도2동 | 45-1 | 대 | 112 | 11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 제주특별자치도 |
| 2 | 〃 | 45-2 | 대 | 96 | 96 | 〃 | 제주특별자치도 |
| 3 | 〃 | 47 | 대 | 89 | 89 | 〃 | 제주특별자치도 |
| 4 | 〃 | 48-2 | 대 | 321 | 3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청로 28 | 제주시 |
| 5 | 〃 | 54-1 | 대 | 28 | 28 | 〃 | 제주시 |

## ⊙해양경찰청공고제2008-4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해양경찰청장

| 업 체 명 | 품 명 | 형 식 | 형식승인번호 |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 비 고 |
|---|---|---|---|---|---|
| (주)성광산업 | 유흡착재 | 매트형 SKNM-0801 | 제흡-172호 (2008. 6. 20.) | 제OA-0825호 (2008. 5. 22.) | 자 체 생산품 |
| (주)성광산업 | 유흡착재 | 롤 형 SKNR-0802 | 제흡-173호 (2008. 6. 20.) | 제OA-0826호 (2008. 5. 22.) | 자 체 생산품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3호(2004. 3. 4.)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4년 3월 4일

2. 등록번호 : 제2008-35호

3. 전문분야 : 토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제,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6. 시험실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시험 과 측량 대표자 이세원

##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8호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44호

나. 대행자명 : (주)주한건설기술단

다. 대 표 자 : 왕희종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4-12 도명빌딩 4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서산환경

바. 등록일자 : 2008년 6월 23일

##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5. 20.)한 “수산업경영인 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산업경영인 사무소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구룡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촌정보사랑방(컴퓨터실)설치로 수산업 정보교류 활성화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9번지

○사업비 : 25,000천원

○공사내용

-경량철골조 증축(64.8㎡) 1식(1층 : 기존 99.84㎡, 2층 : 증축 64.8㎡)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서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72조제2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무선국

| 시설자명 | 시설자번호 | 허 가 번 호 | 호출명칭 | 주 소 |
|---|---|---|---|---|
| 이형호 | 9100010340 | 42-2003-70-0000103 | 711형제호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
| 민대기 | 8400004578 | 42-2005-70-0000097 | 707동광호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 임종태 | 9200002837 | 42-2003-50-0000119 | 700삼선스타호 | 전북 군산시 해망동 |
| 이규선 | 9000001510 | 42-2005-70-0000051 | 700구현호 | 전북 군산시 문화동 |
| 김형국 | 8300009094 | 42-2005-70-0000114 | 710천일호 | 전북 군산시 해망동 |

5. 행정처분일 : 2008년 6월 10일자

6. 문의기관 : 전주전파관리소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둔산리 855-3)

○전 화 : 063-263-3105(FAX : 063-263-3107)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소유한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검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운용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전파법 제72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동 시설을 철거하고 교부받은 허가증은 즉시 폐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전파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 ⊙대전광역시고시제2008-98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SK에너지 주식회사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SK에너지 주식회사 연구원 기숙사 신축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연구원 복지시설 확충

나. 개 요 : 연구원들의 복지시설인 기숙사를 신축하여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적인 연구활동 지원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40-3

나. 사업면적 : 576,799.3㎡

| 계 | 조 성 지 | 원 형 지 | 비 고 |
|---|---|---|---|
| 576,799.30㎡ | 410,945.30㎡ | 165,854.00㎡ | |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변경)

• 기 정 :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호

• 변 경 : SK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헌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변경없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변경없음)

나.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7년 8월 22일~2008년 6월 30일

• 변 경 : 2007년 8월 22일~2008년 8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 번호 | 지 번 | 지목 | 토지면적(㎡) | | 소 유 자 | 비 고 |
|---|---|---|---|---|---|---|
| | | | 조 성 지 | 원 형 지 | | |
| 1 | 원촌동 140-1 | 대지 | 397,645.3 | - | SK에너지(주)외 2 | |
| 2 | 원촌동 140-3 | 임야 | 13,300 | 6,900.2 | SK에너지(주)외 2 | 금회사업 |
| 3 | 원촌동 140-4 | 임야 | - | 2,499.3 | SK에너지(주)외 2 | |
| 4 | 원촌동 140-5 | 임야 | - | 9,556.4 | SK에너지(주)외 2 | |
| 5 | 원촌동 140-6 | 임야 | - | 15,169.2 | SK에너지(주)외 2 | |
| 6 | 원촌동 140-7 | 임야 | - | 23,468.8 | SK에너지(주)외 2 | |
| 7 | 원촌동 140-8 | 임야 | - | 2,056.7 | SK에너지(주)외 2 | |
| 8 | 원촌동 140-9 | 임야 | - | 85,882.1 | SK에너지(주)외 2 | |
| 9 | 원촌동 140-11 | 임야 | - | 20,321.3 | SK에너지(주)외 2 | |
| 합 계 | | | 410,945.3 | 165,854 | |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해당없음

8.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팀(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8-4호

학교(상현중)용지조성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 제2001-42호(2001. 5. 23.)로 학교용지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6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상현중(구, 청파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26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 생략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승인시 : 서울 강남 역삼동 679-4 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이방주

서울 중구 신당5동 101-7 동원빌딩 7층 (주)일레븐건설 대표 엄석호

-사업준공시 : 서울 강남 삼성동 160호 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이방주

천안시 신부동 467-5 삼성생명 빌딩 10층 (주)일레븐건설 대표 송창의

-변경사유 : 소재지 이전 및 대표 변동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상현중(구, 청파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65-1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내용 : 학교용지조성

(2) 학교시설사업면적

-사업승인시 : 12,768㎡

-사업준공시 : 12,775.5㎡

-변경사유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 ⊙경상북도영덕교육청공고제2008-12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1. 재산의 표시

가. (구) 축산초등학교 성호분교장

| 구분 | 소 재 지 | 지 번 | 지목(구조) | 면 적(㎡) | 비 고 |
|---|---|---|---|---|---|
| 토지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 191-1 | 답 | 240.00 | |
| | | 192 | 학교용지 | 6,013.00 | |
| 계 | | | | 6,253.00 | |
| 건물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 192 | 교사/철.콘.스 | 777.60 | |
| | | | 창고/시.벽.슬 | 26.40 | |
| | | | 화장실/시.벽.스 | 27.00 | |
| | | | 숙직실/시.벽.스 | 24.60 | |
| 계 | | | | 855.60 | |
| 공작물 및 수목일체 | | | | | |

2. 매각사유

학교가 폐교되어 부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현재 복교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어 동 폐교를 매각하여 열악한 지역교육 활성화에 재투자하여 도움을 주고자 함.

3. 공고목적

상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여론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4. 매각계획 공고기간

2008년 6월 23일(월)~2008년 7월 22일(화)까지 30일간

5. 매각시기

2008년 8월 1일 이후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에 평가수수료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

7. 매각방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토지, 건물, 기타재산 등)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할 수도 있음.

8. 기타사항

가. 매각계획 공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는 변동 가능함.

나.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여부,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재산의 현 상태 대로 매각함.

다. 본 매각 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에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보낼 곳)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310-1번지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 054-730-8061~5)

2008년 6 월 26일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교육장

# 인 사

⊙2008년 6월 22일자

경상남도

지방부이사관 임 채 호(林 采 虎)

부이사관에 임함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 기 타

##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분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건번호 | 압제번호 | 피 의 자 (피고인) | 환부인 | 압 수 물 건 | | |
|---|---|---|---|---|---|---|
| | | | | 증제번호 | 물 건 명 | 수량 |
| 2008-6269 | 2008-185 | 이종원 | 성명불상 | 1 | 흰색 말통(20리터) | 1 |
| | | | 〃 | 2 | 호스(170cm) | 1 |
| 2008-21834 | 2008-645 | 김호진 외4 | 성명불상 | 1 | 대림씨티 오토바이 (KMYCT100A1C944190, 공매대금 : 270,000원) | 1 |
| 2008-25487 | 2008-769 | 류 솔 | 성명불상 | 1 | 오토바이(대림50cc메세지, 엔진번호 : E1101466, 공매대금 : 25,000원) | 1 |
| 2008-26084 | 2008-778 | 정혜원 외1 | 성명불상 | 3 | 안전모 | 1 |
| 2008-26420 | 2008-779 | 강주형 | 성명불상 | 6 | 휴대폰(LG, LG-KP4600) | 1 |
| 2008-26847 | 2008-795 | 이상락 외2 | 성명불상 | 3 | 50cc오토바이(차대번호 : 1019422, 공매대금 : 15,000원) | 1 |
| 2008-27266 | 2008-860 | 유서준 외1 | 성명불상 | 1 | 한은 일만원권지폐 | 14 |
| 〃 | 〃 | 〃 | 〃 | 2 | 미화 2달러 | 1 |
| 2008-29093 | 2008-861 | 고형준 | 성명불상 | 1 | 자전거(품명 : 스마트, 공매대금 : 2,000원) | 1 |
| 2008-29094 | 2008-862 | 원종우 | 성명불상 | 1 | 자전거(품명 : 알톤클래식, 공매대금 : 2,000원) | 1 |
| 2008-27236 | 2008-916 | 김유진 외1 | 성명불상 | 1 | 두건(별무늬) | 1 |
| | | | 〃 | 2 | 두건(고양이무늬) | 1 |

| 사건번호 | 압제번호 | 피 의 자 (피고인) | 환부인 | 압 수 물 건 | | |
|---|---|---|---|---|---|---|
| | | | | 증제번호 | 물 건 명 | 수량 |
| | | | 〃 | 3 | 구슬목걸이(검정색) | 1 |
| | | | 〃 | 5 | 여성용 반팔티셔츠 | 1 |
| | | | 〃 | 6 | 플라워 틴트 루즈(이니스프리) | 1 |
| 2008-31098 | 2008-924 | 구상훈 | 성명불상 | 1 | 오토바이(차대번호 : KMYCT100H1C113087, 공매대금 : 20,000원) | 1 |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6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 고 인 | 죄 명 | 환부인 | 압 수 물 건 | | |
|---|---|---|---|---|---|---|---|
| | | | | | 번호 | 물 건 명 | 수 량 |
| 2004-1491 | 2004-48 | 최태민, 김석주, 박 혁, 김원식, 안창식, 신성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등 | | 67 | 옥도장(이건구) | 1 개 |
| | | | | | 68 | 옥도장(남궁월선) | 1 개 |
| | | | | | 69 | 장식함속에 넣어진 아시안게임기념메달 | 2 개 |
| | | | | | 70 | 관광상품권 | 2 장 |
| | | | | | 71 | 금강제화 상품권 (5만원권) | 2 장 |
| | | | | | 72 | 에스콰이어 상품권 (10만원권) | 1 장 |
| | | | | | 73 | 엘칸도 상품권 (10만원권) | 1 장 |
| | | | | | 74 | 금강제화 상품권 (7만원권) | 1 장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죄명 | 환부인 | 압수물건 | | |
|---|---|---|---|---|---|---|---|
| | | | | | 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 | 75 |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 1 장 |
| | | | | | 76 | 갤럭시 여자손목시계 | 1 개 |
| | | | | | 77 | 분홍색 보석이 박힌 여자반지 | 1 개 |
| | | | | | 78 | 링 귀걸이 | 1 쌍 |
| | | | | | 79 | 청색 보석이 박힌 여자반지 | 1 개 |
| | | | | | 80 | 검정색 보석이 박힌 여자반지 | 1 개 |
| | | | | | 81 | 링 반지 | 1 개 |
| | | | | | 82 | 초록색 보석이 박힌 반지 | 1 개 |
| | | | | | 83 | 자수정목걸이 | 1 개 |
| | | | | | 84 | 체인형 귀걸이 | 1 쌍 |
| | | | | | 85 | 태극문양 여자반지 | 1 개 |
| | | | | | 86 | 큐빅이 박힌 여자반지 | 1 개 |
| | | | | | 87 | 동전형 은색메달 | 1 개 |
| | | | | | 88 | 링 반지 | 2 개 |
| | | | | | 89 | 체인형 금목걸이 | 1 개 |
| | | | | | 90 | 십자가 목걸이 | 1 개 |
| | | | | | 91 | 목걸이 | 1 개 |
| | | | | | 92 | 체인형 목걸이 | 1 개 |
| | | | | | 93 | 링 귀걸이 | 1 쌍 |
| | | | | | 94 | 줄 먹걸이 | 1 개 |
| | | | | | 95 | 목걸이 | 1 개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죄명 | 환부인 | 압수물건 | | |
|---|---|---|---|---|---|---|---|
| | | | | | 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 | 96 | 발찌 | 1 개 |
| | | | | | 97 | 십자가 메달 | 1 개 |
| | | | | | 98 | 큐빅 메달 | 1 개 |
| | | | | | 99 | 구슬형 귀걸이 | 1 쌍 |
| | | | | | 100 | 링 귀걸이 | 1 쌍 |
| | | | | | 101 | 목걸이 | 1 개 |
| | | | | | 102 | 목걸이 | 1 개 |
| | | | | | 103 | 링 반지 | 1 개 |
| | | | | | 104 | 태극문양 반지 | 1 개 |
| | | | | | 105 | 사파이어 반지 | 1 개 |
| | | | | | 106 | 구슬형 목걸이 | 1 개 |
| | | | | | 107 | 고리형 메달 | 1 개 |
| | | | | | 108 | 십자가 목걸이 | 1 개 |
| | | | | | 109 | 목주형 반지 | 1 개 |
| | | | | | 110 | 구슬추모양 귀걸이 | 1 쌍 |
| | | | | | 111 | 큐빅 귀걸이 | 1 쌍 |
| | | | | | 112 | 팔찌 | 1 개 |
| | | | | | 113 | 자수정 여자반지 | 1 개 |
| | | | | | 114 | 링 반지 | 1 개 |
| | | | | | 115 | 여자 반지 | 1 개 |
| | | | | | 116 | 목걸이 | 1 개 |
| | | | | | 117 | 체인목걸이 | 1 개 |
| | | | | | 118 | 하트모양 귀걸이 | 1 쌍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 고 인 | 죄 명 | 환부인 | 압 수 물 건 | | |
|---|---|---|---|---|---|---|---|
| | | | | | 번호 | 물 건 명 | 수 량 |
| | | | | | 119 | 귀걸이 | 1 쌍 |
| | | | | | 120 | 진주귀걸이 | 1 쌍 |
| | | | | | 121 | 목걸이 | 1 개 |
| | | | | | 122 | 귀걸이 | 1 쌍 |
| | | | | | 123 | 쿠빅십자가메달 | 1 개 |
| | | | | | 124 | 체인 목걸이 | 1 개 |
| | | | | | 125 | 목걸이 | 1 개 |
| | | | | | 126 | 남자 반지 | 1 개 |
| | | | | | 137 | 멀티 코드 | 1 점 |
| | | | | | 138 | 망원렌즈(4*38) | 1 개 |
| | | | | | 139 | 망원렌즈(6*40) | 1 개 |
| | | | | | 140 | 전자안마기(은색) | 1 개 |
| | | | | | 141 | 양주(헤네쉬) | 1 병 |
| | | | | | 142 | 중국술(흰색) | 1 병 |
| | | | | | 143 | 보드카(흰색) | 1 병 |
| | | | | | 144 | 원두커피 분쇄기 | 1 점 |
| | | | | | 145 | 우표수집책 | 6 권 |
| | | | | | 146 | 화폐수집책(빈것) | 1 권 |
| | | | | | 147 | 화폐수집책(주화) | 1 권 |
| | | | | | 1 | 화폐수집책(지폐) | 1 권 |
| | | | | | 149 | 키토올리고 | 1 박스 |
| | | | | | 150 | 키토양말(3개용) | 1 박스 |
| | | | | | 151 | 파울로구찌 손수건(3개용) | 1 박스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죄명 | 환부인 | 압수물건 | | |
|---|---|---|---|---|---|---|---|
| | | | | | 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 | 152 | 드봉화장품(2개용) | 1 박스 |
| | | | | | 153 | 인삼녹용엑기스캡슐 | 1 박스 |
| | | | | | 154 | 모자 | 5 개 |
| | | | | | 155 | 트라이양말세트 | 1 박스 |
| | | | | | 156 | 한국화폐가격도록 | 1 권 |
| | | | | | 157 | 캠코더케이스(JVL) | 1 점 |
| | | | | | 158 | 후레쉬 | 3 개 |
| | | | | | 159 | 카메라삼각대 | 1 점 |
| | | | | | 160 | 향수(프랑스) | 1 세트 |
| | | | | | 161 | 전자수첩(블랙홈) | 1 점 |
| | | | | | 162 | 열쇠고리(흰색) | 1 개 |
| | | | | | 163 | 즉석카메라(조이켐) | 1 점 |
| | | | | | 164 | 화상카메라(HP) | 1 점 |
| | | | | | 165 | 휴대폰(카라) | 1 점 |
| | | | | | 166 | 소형카세트(아이와, 2000) | 1 점 |
| | | | | | 167 | 소형 카세트(아이와, 706) | 1 점 |
| | | | | | 168 | CD재생기(파나소닉) | 1 점 |
| | | | | | 169 | CD재생기(아이와) | 1 점 |
| | | | | | 170 | 휴대용오락기(스팟라이트) | 1 점 |
| | | | | | 171 | 카메라(신팩스) | 1 대 |
| | | | | | 172 | LCD모니터(삼보) | 1 점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죄명 | 환부인 | 압수물건 | | |
|---|---|---|---|---|---|---|---|
| | | | | | 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 | 173 | 컴팩자판기 | 1 점 |
| | | | | | 174 | 다리미(하이센스) | 1 점 |
| | | | | | 175 | 금부적(금색) | 1 개 |
| | | | | | 176 | 골프시계 | 1 점 |
| | | | | | 177 | 남자용 손목시계 (인디글로) | 1 점 |
| | | | | | 178 | 남자용 손목시계 (아시아나) | 1 점 |
| | | | | | 179 | 남자용 손목시계 (오딘) | 1 점 |
| | | | | | 180 | 남자용 손목시계 (올리앤스) | 1 점 |
| | | | | | 181 | 남자용 손목시계 (조르지오) | 1 점 |
| | | | | | 182 | 남자용 손목시계 (해밀턴) | 1 점 |
| | | | | | 183 | 남자용 손목시계 (모건) | 1 점 |
| | | | | | 184 | 남자용 손목시계 (인터클루) | 1 점 |
| | | | | | 185 | 여자용 손목시계 (로렉스) | 1 점 |
| | | | | | 186 | 남자용 손목시계 (할리우드폴로) | 1 점 |
| | | | | | 187 | 남자용 손목시계 (파울로구찌) | 1 점 |
| | | | | | 188 | 남자용 손목시계 (카시오) | 1 점 |
| | | | | | 189 | 남자용 손목시계 (게스) | 1 점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죄명 | 환부인 | 압수물건 | | |
|---|---|---|---|---|---|---|---|
| | | | | | 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 | 190 | 남자용 손목시계 (현대산업개발) | 1 점 |
| | | | | | 191 | 남자용 손목시계 (마일드 세븐) | 1 점 |
| | | | | | 192 | 남자용 손목시계 (갤럭시) | 1 점 |
| | | | | | 193 | 남자용 손목시계 (갤럭시) | 1 점 |
| | | | | | 194 | 남자용 손목시계 (크리스찬모드) | 1 점 |
| | | | | | 195 | 남자용 목걸이 (금색) | 1 점 |
| | | | | | 196 | 진주 목걸이 | 1 점 |
| | | | | | 197 | 진주 목걸이 알 | 1 통 |
| | | | | | 198 | 남자용 반지 | 1 개 |
| | | | | | 199 | 나비표본액자 | 1 점 |
| | | | | | 200 | 라이터(가스) | 5 점 |
| | | | | | 201 | 남자용 선글라스 | 1 점 |
| | | | | | 202 | 기념 뺏지 | 9 점 |
| | | | | | 203 | 기념품(탈세트) | 1 점 |
| | | | | | 204 | 화장품세트(도브) | 1 점 |
| | | | | | 205 | 남자용 지갑 | 7 점 |
| | | | | | 206 | 남자용 손가방 | 4 개 |
| | | | | | 207 | 세무 남자용 잠바 (안트유) | 1 점 |
| | | | | | 208 | 흰색 오리털 잠바 (EST) | 1 점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 고 인 | 죄 명 | 환부인 | 압 수 물 건 | | |
|---|---|---|---|---|---|---|---|
| | | | | | 번호 | 물 건 명 | 수 량 |
| | | | | | 209 | 갈색 가죽 잠바 (레더패션) | 1 점 |
| | | | | | 210 | 검정 무스탕 잠바 (인디안) | 1 점 |
| | | | | | 211 | 목각 인형(밤색) | 1 점 |
| | | | | | 214 | 에메랄드 원석 | 1 점 |
| | | | | | 216 | 진주(양식) | 10 점 |
| | | | | | 217 | 루비원석 써브용 | 1 통 |
| | | | | | 218 | 에메랄드원석 써브 | 1 통 |
| | | | | | 219 | 까미오 | 2 점 |
| | | | | | 220 | 아크아 마린외 | 12 점 |
| | | | | | 221 | 터키석 | 1 점 |
| | | | | | 222 | 사새야(D.PZONE 포함) | 1 통 |
| | | | | | 223 | 스타 및 잡석 | 26 점 |
| | | | | | 224 | 사파이어 | 1 통 |
| | | | | | 225 | 루비합성 & 토파즈 | 1 통 |
| | | | | | 226 | 호주비취 | 8 점 |
| | | | | | 227 | 까미오 | 4 점 |
| | | | | | 228 | 진주 | 4 점 |
| | | | | | 229 | 길슨오팔(합성) | 1 통 |
| | | | | | 230 | 칼라큐빅의 잡석 | 1 통 |
| | | | | | 232 | 루비원석 | 8 점 |
| | | | | | 233 | 사파이어 (D.PZONE) | 6 점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죄명 | 환부인 | 압수물건 | | |
|---|---|---|---|---|---|---|---|
| | | | | | 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 | 234 | 목걸이시계(코리브리) | 1 개 |
| | | | | | 240 | 브릿지(모조품) | 1 점 |
| | | | | | 241 | 나비모양 메달 | 1 점 |
| | | | | | 242 | 브릿지(모조품) | 1 점 |
| | | | | | 243 | 지르코늄(큐빅류) | 1 점 |
| | | | | | 244 | 진주 알 | 4,920개 |
| | | | | | 252 | 큐빅 목걸이 | 1 점 |
| | | | | | 253 | 비취 브롯지 | 1 점 |
| | | | | | 254 | 진주알(양식) | 3 점 |
| | | | | | 255 | 큐빅 메달 | 1 점 |
| | | | | | 256 | 다이아 귀걸이 | 1 세트 |
| | | | | | 257 | 잡석류 큐빅 포함 | 1 봉지 |
| | | | | | 258 | 남자시계 | 1 점 |
| | | | | | 259 | 남자 시계 | 1 점 |
| | | | | | 261 | 남자 시계 | 1 점 |
| | | | | | 263 | 남자 시계 | 1 점 |
| | | | | | 264 | 남자시계(카파) | 1 점 |
| | | | | | 266 | 게스 여 금장시계 | 1 점 |
| | | | | | 267 | 루트 여자 시계 | 1 점 |
| | | | | | 268 | 레스 여자 시계 | 1 점 |
| | | | | | 269 | 갤럭시 여자 시계 | 1 점 |
| | | | | | 270 | 여자 가죽 시계 | 1 점 |
| | | | | | 302 | 잡석 외 | 1 봉지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 고 인 | 죄 명 | 환부인 | 압 수 물 건 | | |
|---|---|---|---|---|---|---|---|
| | | | | | 번호 | 물 건 명 | 수 량 |
| | | | | | 303 | 진주 알 | 3 점 |
| | | | | | 304 | 합성석 | 1 점 |
| | | | | | 305 | 큐빅 | 1 통 |
| | | | | | 306 | 합성어닉스 외 | 1 통 |
| | | | | | 307 | 산호 B급 | 13 점 |
| | | | | | 308 | 중국비취 외 합성 | 1 통 |
| | | | | | 311 | PIYATT상표의 남녀 시계 | 1 쌍 |
| | | | | | 322 |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장 흉장 | 1 점 |
| | | | | | 323 | 대통령 기장 | 1 점 |
| | | | | | 324 | 소형보석 감정돋보기 | 1 점 |
| | | | | | 325 | 후지디지털카메라 | 1 점 |
| | | | | | 326 | MD플레이어(샤프) | 1 점 |
| | | | | | 327 | 세코무선마이크 | 1 점 |
| | | | | | 329 | 전자계산기 (COUNT-UPSS800) | 1 점 |
| | | | | | 350 | 루이비통 여성장지갑(적색) | 1 점 |
| | | | | | 351 | 크리스찬돌체 장지갑(갈색) | 1 점 |
| | | | | | 357 | 소형 드라이버 세트 | 1 세트 |
| | | | | | 359 | 영상케이블작업 세트 | 1 세트 |
| | | | | | 360 | 금패물분류 비닐봉투 | 1 봉 |

| 사건번호 | 압수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죄명 | 환부인 | 압수물건 | | |
|---|---|---|---|---|---|---|---|
| | | | | | 번호 | 물건명 | 수량 |
| | | | | | 361 | 와이셔츠핀 악세사리 외 15종 | 16 개 |
| | | | | | 362 | 현미경(슈퍼-900) | 1 개 |
| | | | | | 363 | 실톱 | 1 개 |
| | | | | | 364 | 전기인두 | 1 개 |
| | | | | | 365 | 귀금속 빈 박스 | 6 개 |
| | | | | | 379 | 케이블등 공구가방(갈색) | 1 개 |
| | | | | | 380 | 소형 차단스 | 1 개 |
| | | | | | 381 | 니콘카메라 가방(검정) | 1 개 |
| | | | | | 382 | 랑스필드 골프가방 | 1 개 |
| | | | | | 385 | 휠라클래식 스포츠가방 | 1 개 |
| | | | | | 386 | 클라이드 서류가방(검정) | 1 개 |
| | | | | | 388 | 휠라 스포츠가방(검정) | 1 개 |
| | | | | | 389 | 울시 골프가방(검정) | 1 개 |
| | | | | | 390 | 바비론스 가방(검정) | 1 점 |
| | | | | | 391 | 휠라 인라인스케이트 가방 | 1 점 |
| | | | | | 393 | 소형 철재 금고 | 1 점 |
| | | | | | 394 | 액자(경애화락) | 1 점 |
| | | | | | 395 | 액자(여인상 그림) | 1 점 |
| | | | | | 396 | 컴퓨터본체(ME-20) | 1 점 |
| | | | | | 397 | 골프채 | 1 세트 |